

법무부령

검찰사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기 관 명 (부 서 명)	법무부 (검찰과)
연 월 일	2020. . .

법제처 심사 전

1. 개정이유

「형사소송법」(법률 제16924호, 2020. 2. 4. 공포, 2021. 1. 1. 시행 예정)이 개정되고, 이를 반영한 일반적인 수사준칙인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 제정(대통령령 제31089호, 2020. 10. 7. 공포, 2021. 1. 1. 시행)됨에 따라 검찰에 제출되는 사건·기록의 수리·접수 및 결정·처리절차 등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는 한편,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를 폐지함에 따라 신설된 보완수사요구, 재수사요청, 시정조치요구 제도의 절차를 규정하여 검찰에서 이루어지는 형사사건 등 처리절차를 전면적으로 개편하고 정비하려는 것임

2. 주요내용

가. 사건·기록의 수리·접수 및 결정·처리 절차 개편

1) 기존 사건의 수리절차 외에 사법경찰관의 불송치·수사중지 결정 송부 기록의 접수 절차를 신설(안 제2조의2)

2) 수리된 사건은 ‘결정’으로 처리하고, 접수된 기록의 경우 검토 후 기록반환 또는 재수사요청·시정조치요구로 ‘처리’하도록 규정(안 제5조, 제57조의2)

3) 사건·기록은 분리하여 수리·접수, 원본과 등본 및 각 등본은 별개의 관계 서류로 취급, 분리 수사하는 경우 외의 관련 사건은 1건으로 수리·접수(안 제2조의3)

4) 결정·처리함에 있어 사건·기록 단위로 결정·처리하되 관련 사건의 경우 병합하여 결정·처리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57조의3)

5) 관계 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편철되지 않은 경우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요청 또는 수리·접수 거부하도록 하는 수리·접수 담당자의 형식적 심사 근거 규정 마련(안 제3조의3)

나.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처리절차 규정 신설

1)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수사 경합 시 수사대상 범죄사실의 동일성 또는 영장 청구·신청의 선후 등을 판단하기 위해 사법경찰관이 사건 열람을 요구한 경우 처리절차 및 열람 범위 규정(안 제8조)

2)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경합 사건의 송치요구하는 경우의 처리절차 규정(안 제8조의2)

3) 중복수사 방지를 위해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요구 관련 협의 요청할 수 있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 경합 사건을 이송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8조의3)

다. 특별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등 규정

1) 특별사법경찰관이 내사단계에서 수사의 개시에 이르지 아니하는 영장집행 등을 하여 해당 사건목록과 요지를 검찰에 제출하는 경우의 접수 및 처리절차 규정(안 제9조의5)

2) 특별사법경찰관이 아닌 사법경찰관에 대한 수사지휘 제도가 폐지됨에 따라 특별사법경찰관이 검사에게 수사지휘 건의를 한 경우 유형별(사건·수사기일연장·출입국규제) 접수 및 처리절차 별도로 규정(안 9조의7)

라. 보완수사요구를 그 대상 및 형식에 따라 결정·추완·공판·영장 4가지 유형으로 나누고, 유형별로 요구절차를 규정(안 제9조의10)

마. 불송치 · 수사중지 결정 접수 기록 처리절차 신설

1) 접수된 불송치 결정 기록을 검토한 후 기록을 반환하거나 재수사 요청으로 처리할 때의 절차, 재수사결과에 대해서 송치요구하는 경우 절차, 기록과 함께 접수된 압수물에 대해서 처분 지휘 절차 규정(안 제83조 내지 제83조의4)

2) 접수된 수사중지 결정 기록을 검토한 후 기록을 반환하거나 시정조치 요구로 처리할 때의 절차, 구제신청이 있는 경우 시정사건으로 수리 및 처리하는 절차 규정(안 제84조 내지 제84조의3)

바. 조사사건(舊. 수사사건)의 개편, 시정사건의 신설

1) 검사의 수사지휘 제도가 폐지되고 수사준칙에 수사의 개시 사유(필요적 입건사유)가 규정됨에 따라 ‘수사사건’의 용어를 ‘조사사건’으로 변경하고, 규정된 수사의 개시 사유를 조사사건 수리 사유에서 제외하는 등 개편(안 제142조)

2)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법령위반 등 사실을 인식한 경우나 시정 조치를 요구하는 구제신청 등이 접수된 경우 시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하도록 규정(안 제143조 내지 제143조의5)

3) 신설된 시정조치요구 제도와 관련하여 등본송부요구, 시정조치 요구, 송치요구 등 단계별로 처리절차 규정(안 제143조의3)

사.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보완수사요구와 관련하여 징계 또는 직무 배제요구를 하는 경우, 시정조치요구와 관련하여 징계요구를 하는 경우, 검찰청법에 따라 교체임용요구를 하는 경우 유형별 요구절차 규정(안 제186조 내지 제188조)

아. 검·경의 협의 및 조정절차 신설·개편

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한미행정협정 사건 등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 제시·교환 요청이 있는 경우 처리절차 규정(안 제9조의4)

2) 검사의 수사지휘 폐지에 따라 소재불명인 피의자 또는 참고인 발견시 통보절차 및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 요청하는 경우의 절차를 별도로 규정(안 제9조의12)

3) 체포·구속 적부심사, 구속의 집행정지로 석방된 자, 공소보류자에 대한 시찰조회를 사법경찰관에게 요구가 아닌 협력 요청의 방식으로 하도록 개편(안 제36조 제8항, 제48조 제4항, 제80조)

자. 인권보호강화 규정 신설

1) 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 등의 의견 제시를 요청할 수 있는 근거 규정 마련(안 제39조)

2) 피해자의 신청에 따라 재판결과 등 형사절차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신변보호조치를 취할 수 있는 근거 규정, 공익신고자에 대한 보복 범죄 및 불이익조치를 예방하기 위한 신변안전조치 근거 규정 등 신설(안 제192조, 제193조)

차. 기타 신설 규정

1) 고위공직자범죄 등을 인지하여 수사처에 통보하는 경우, 수사처장의 이첩 요청에 따라 사건을 이첩하는 경우 등의 처리절차 규정 신설(안 제189조 내지 제191조)

2)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및 이행 절차, 범죄인 인도절차 등 규정 신설(안 제194조 내지 제198조)

3) 검찰사건사무규칙의 규정 절차에 필요한 별표(인장 등) 및 서식에 대해서 대검 예규로 정할 수 있도록 규정(안 제200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생략

나. 예산조치 : 별도조치 필요 없음

다. 합의 : 행정안전부 등과 합의되었음

라. 기타 : 1) 입법예고(2020. 11. 17. ~ 12. 28.) 결과, 특기할 사항 없음

2) 행정규제 : 규제개혁위원회와 협의 결과, 이견 없음

- 규제 신설·폐지 등, 없음

검찰사건사무규칙 전부개정령안

검찰사건사무규칙 전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검찰사건사무규칙

제1편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칙은 「검찰청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수사·결정, 기록의 접수·처리 및 공판수행등에 관한 사항을 정함으로써 사건사무의 적정한 운영을 기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1조의2(인권보호 및 적법절차의 준수)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각급 검찰청의 사건의 수리·수사·결정, 기록의 접수·처리 및 공판수행 등에 있어 인권을 보호하고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을 준수한다.

제2편 지방검찰청 및 지청에서의 절차

제1장 사건의 수리

제2조(사건의 수리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건으로 수리한다.

1. 검사가 범죄를 인지한 경우
2. 검사가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 다만, 제141조제3 항의

규정에 의하여 진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를 제외한다.

2의2. 검사가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고소·고발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고소·고발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공수처법’이라 한다),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수사준칙’이라 한다) 등 관련 법령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경찰관, 특별사법경찰관 등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이하 “사법경찰관등”이라 한다)으로부터 사건의 송치(공수처법 제26조제1항에 의한 관계서류 및 증거물의 송부를 포함한다)나 이송(공수처법 제24조제3항 및 제27조에 의한 이첩을 포함한다)을 받은 경우

4. 다른 검찰청의 검사 또는 군검찰부 군검사로부터 사건의 송치를 받은 경우

5.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건 송치를 받은 경우

가. 「소년법」 제7조, 제38조제1항제1호 및 제49조제2항에 따른 사건 송치

나.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제37조제2항 및 제46조에 따른 사건 송치

다.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7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제37조제2

항 및 제46조에 따른 사건 송치

라.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41조제1호와 같은 법 제44조에서 준용하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7조제2항 및 제37조제2항에 따른 사건 송치

6.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5조제2항 및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경찰서장으로부터 사건의 송치 또는 사건기록의 송부를 받은 경우

7. 불기소사건·기소중지사건·참고인중지사건 또는 공소보류사건을 재기(再起)한 경우

7의2. 검사가 제82조에 따라 보완수사요구 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 준칙 제60조제3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다시 반환받은 경우(불송치 또는 수사중지를 이유로 다시 관계서류와 증거물이 송부된 경우를 제외한다.)

8. 공소를 취소한 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329조의 규정에 의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할 경우

9. 법원 또는 군사법원의 사건이송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0. 재심을 청구한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435조제1항에 따른 법원의 재심개시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1. 재정신청한 사건에 대하여 고등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

62조제2항제2호의 결정에 따른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경우

12. 상급법원에서의 병합·이송·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13. 관할위반 판결이 선고된 사건에 대하여 다시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14.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 제1항 제1호, 제37조에 따라 법무부장관으로부터 외국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필요한 조치를 하라는 명령(이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이라 한다)을 받고 공조이행 절차를 개시한 경우

15. 공수처법 제28조제2항에 의하여 형의 집행을 위해 고위공직자범죄 수사처장(이하 ‘수사처장’으로 한다)으로부터 사건과 기록 일체를 인계받은 경우

제2조의2(불송치·수사중지 기록의 접수 사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록으로 접수한다.

1.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2조제1항에 의하여 불송치 결정에 따른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받은 경우

2.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의하여 수사중지 사건기록을 송부받은 경우

제2조의3(사건과 불송치·수사중지 기록의 단위) ① 수리 대상 사건과 접수 대상 기록은 제2조 및 제2조의2 각 호의 사유별로 구분하여 수리 또는 접수하고, 동일한 관계 서류와 증거물로 동시에 수리 또는 접수

할 수 없다. 다만, 원본과 등본, 각 등본은 동일한 관계 서류로 보지 아니한다.

②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1건으로 수리한다. 다만, 분리수사를 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피의자의 수가 불명인 사건은 1인으로 수리하고, 그 수가 2인 이상으로 판명된 때에는 추가 수리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은 기록을 접수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⑤ 수리 대상 사건과 접수 대상 기록에 대하여 수사준칙 제51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송치·불송치·수사중지 결정이 혼재되고 관계 서류 및 증거물을 분리할 수 없는 경우에는 제1항을 적용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와 증거물 원본에 송치결정서, 불송치결정서, 수사중지결정서 및 각 결정서별 압수물총목록과 기록목록이 각 결정서별 별책으로 편철되어 있는지 점검한다.

제2조의4(영장 신청서 및 관련 기록의 접수)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아래 영장에 대한 신청이 있는 경우 영장 신청서와 관련 기록(이하 ‘영장 신청서등’이라 한다)을 함께 접수하되 영장 신청서별로 구분한다.

1. 체포·구속영장
2. 압수·수색·검증영장
3. 「통신비밀보호법」에 규정된 허가서
4.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규정된 임시조치

5. 기타 사법경찰관이 다른 법률에 의하여 신청하고 검사가 법원에 청구하는 강제처분에 대한 허가서

제3조(수리 또는 접수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에 따라 수리하는 사건에 대하여는 사건기록표지의 상단중앙부에 사건 접수인을 찍어 수리한다. 다만, 사건 접수인은 필요한 경우 사건기록표지에 미리 인쇄하여 사용하거나 해당 사건만을 표시할 수 있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제3호·제5호 또는 제6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송치관서가 제시하는 사건송치부등에 수리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며,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호서식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사건을 송치한 검찰청 또는 군검찰부에 송부하며,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하여야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여부가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 송치관서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2조의2에 따라 기록을 접수한 때에는 불송치(수사중지) 기록 접수서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기록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재하며, 압수물이 있는 때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2조의4에 따라 영장 신청서등을 접수하는 때에는 영장 신청서등 기록 표지에 접수인을 날인하고 송부관서가 제시하는 접수기록부 등에 접수일시와 접수자의 직급 및 성명 등을 기재한다.

제3조의2(전자적으로 처리하는 사건의 수리 또는 접수에 관한 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약식절차 등에서의 전자문서 이용 등에 관한 법률」(이하 "약식전자문서법"이라 한다) 제3조에서 약식전자문서법의 적용 대상으로 정한 사건(이하 "전자적 처리사건"이라 한다)에 대해서는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에 따른 형사사법정보시스템(이하 "시스템"이라 한다)에 따라 전자적으로 부여되는 사건번호로 사건을 수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시스템으로 전송받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약식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 전자적 처리사건에 관한 정보를 확인한 후 수리한다.

③ 제2조의2제1호에 따라 접수되는 기록은 전자적 처리사건과 같은 방식으로 접수하지 아니한다.

제3조의3(수리 또는 접수 전 점검과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 제3호, 제2조제7호의2, 제2조의2, 제2조의4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 또는 영장 신청서 등을 접수하는 때에는 관계 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편철되었는지 여부 및 사법경찰관등이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였는지 여부를 점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른 점검 결과 관계 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편철되지 아니하거나, 사법경찰관등이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건 또는 기록에 대하여는 사법경찰관에게 그 보완을 요구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거나 수리 또는 접수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제2호 및 제2호의2에 따라 사건을 수리하는 때에는 「검사의 수사개시 범위에 관한 규정」에 따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인지 여부를 점검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에 따른 점검 결과 검사가 수사를 개시할 수 있는 범죄에 해당하지 아니한 혐의가 포함된 사실을 발견할 때에는 고소인·고발인·자수자에게 관련 절차를 안내하고 검사의 지휘를 받아 사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수리하지 아니할 수 있다.

제4조(수리한 사건 또는 접수한 기록과 영장의 전산입력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별표 0에서 수리입력항목으로 정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하고, 제2조제2호에 따라 사건을 수리한 때에는 직수고소·고발사건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하여 사건정보를 전송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치관서, 송치번호, 송치의견, 피의자 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여 수리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조의2에 따라 기록을 접수하거나 제2조의4에 따라 영장 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입력항목으로 정한 사항을 시스템에 입력해야 한다. 다만, 시스템을 통하여 기록정보를 전송 받은 경우에는 해당 전자문서를 조회하여 송부관서, 송부번호, 피의자인적사항, 죄명 등을 확인하는 것으로 전산입력을 갈음할 수 있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범죄인지서, 고소장, 고발장, 자수서, 고소·고발·자수인진술조서,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소송기록송부서 또는 불기소사건재기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등에 사건번호를 기재하고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한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표시한다.
- ④ 사건번호는 제2조에 따른 수리사건의 전산입력진행번호로서 사건마다 일련번호를 붙이되,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형제 ○호"로 표시한다. 다만, 제3조의2에 따른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해서는 사건마다 연도별로 접수연도와 접수번호를 "○년 전형제 ○호"로 표시하여 일련번호를 붙인다.
- ⑤ 제2조의2에 따라 기록을 접수한 때에는 접수 사유에 따라 같은 조 제1호는 "○년 불제 ○호", 같은 조 제2호는 "○년 중제 ○호"로 각각 접수번호를 표시하고, 제2조의4에 따라 영장 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각 신청서별로 연도와 접수순서를 표시하는 진행번호를 붙인다.
- ⑥ 제1항에 따라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 이상의 장소에 분산·보관한다.

제5조(수리와 접수에 관한 지휘·감독) ① 수리·접수 절차가 종료된 사건 또는 기록·영장신청서등의 처리에 있어서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검찰청의 장(지방검찰청 지청의 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명을 받아야 한다.

② 검사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3조의3제2항에도 불구하고 관계 서류 등이 법령에 따라 작성·편철되지 아니하거나 사법경찰관등이 법령에 따라 필요한 행위를 하지 아니한 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 또는 영장 신청서 등을 접수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수리 또는 접수를 취소하게 할 수 있다.

제5조의2 (담당사건의 파악등) ① 검사는 수사 및 처리를 담당하는 사건 및 기록을 항시 파악하여야 한다.

② 검사의 전보등으로 수리한 사건 및 접수한 기록, 영장 신청서 등을 인계인수하는 경우에는 검사기록인계인수서에 따른다.

제6조(피의자 색인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매월초 또는 매년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제3조 및 제4조의 규정에 의하여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피의자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으로 작성·비치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년초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의자색인부가 작성된 때에는 전년도 월별피의자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제2장 사건의 수사

제1절 총칙

제7조(불구속 및 임의수사의 원칙) ①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형사소송법」 제198조 및 제199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수사는 불구속상태에서 함을 원칙으로 하고, 강제수사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률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하여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 안에서 보충적으로 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을 준수하고 인권을 옹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제39조에 따른 피의자 면담 또는 조사 등 적절한 조치를 한다.

제7조의2(강제수사에 관한 원칙과 기준) ① 검사와 검찰청 직원이 강제수사를 함에 있어서는 대상자의 권익침해 정도가 보다 경미한 절차와 방법을 선택한다.

② 검사와 검찰청 직원은 강제수사 과정에서 피의자와 그 밖의 피해자·참고인 등(이하 ‘사건관계인’이라 한다) 및 가족 등의 인격과 명예가 침해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사생활의 비밀, 주거의 평온 등이 최대한 보장되도록 한다.

③ 검사가 강제수사를 위한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등 관련 법령에 규정된 바에 따라 죄명 및 범죄사실 요지와 함께 죄를 범하였다고 의심할 만한 상당한 이유, 강제수사를 필요로 하는 사유 및 관련 소명자료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제시한다.

제7조의3(영장전담검사의 지정)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영장의 처리를 위한 전담검사를 지정할 수 있다.

제8조(수사의 경합에 따른 열람절차)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경우 열람이 필요한 사건기록을 특정한 후 별지 제3호서식의 사건기록 열람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수사준칙 제48조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의 열람을 요청하는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지체없이 해당 사건의 수사를 담당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이때 검사는 요청 서류를 검토하여 열람 허용 여부 및 범위를 신속하게 결정한다.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에게 열람을 허용할 수 있는 사건기록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다만, 예외적으로 그 외 사건기록의 열람을 허용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달리 정할 수 있다.

1. 범죄인지서
2. 영장청구서
3. 고소장, 고발장

④ 검사는 별지 제4호서식의 열람허가서에 열람을 허용하는 사건기록의 범위를 기재하여 제2항의 사건기록 중 열람을 허용한 사건기록 등본과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열람하게 하고, 관리대장에 열람 일시, 열람 사법경찰관의 성명 등을 기재한다.

제8조의2(수사의 경합에 따른 송치요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송치를 요구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를 작성하고,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이때 검사는 송치요구서 부분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수사 중인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다른 1부는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및 송치요구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송치요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제1항의 송치요구에 따라 사건을 송치한 때에는 송치요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8조의3(수사중복의 방지)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제1항에 따라 송치요구를 할 때에는 동일한 범죄사실의 범위·수사의 진행 경과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송치요구 여부 및 그 범위를 결정함에 있어 해당 사건을 수사 중인 사법경찰관에게 협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제2항 단서에 따라 범죄사실을 계속 수사할 수 있게 된 경우에 사안의 경중·수사의 진행 경과 등을 고려하여 수사준칙 제18조제2항제1호에 따른 이송 여부를 검토한다.

제9조(대표변호인의 지정등)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2조의2제5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변호인지정서등에 따른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변호인지정등 통보서를 피의자와 모든 변호인에게 송부한다.

③ 삭제 <2012. 3. 15.>

④ 검사가 대표변호인을 지정, 지정의 철회 또는 변경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대표변호인지정서등 또는 별지 제7호서식의 대표변호인지정등 통보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분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이를 작성일자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9조의2(변호인의 피의자신문 등 참여)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그 변호인·법정대리인·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에 대한 신문에 변호인을 참여하게 해야 한다.

② 제1항의 신청은 서면 또는 구술로 할 수 있다.

③ 피의자나 피의자신문에 참여하려는 변호인은 변호인의 피의자신문 참여 전에 검사에게 변호인선임에 관한 서면을 제출해야 한다.

④ 검사는 제1항에 따른 변호인 참여 신청이 있는 경우에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의 참여 없이 피의자를 신문할 수 있다.

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변호인의 참여를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

2. 변호인이 상당한 시간 내에 출석하지 않거나 출석할 수 없는 경우

⑤ 검사는 변호인의 참여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하여 신문 방해,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중이라도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할 수 있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와 변호인에게 변호인 참여를 제한하는 처분에 대해 「형사소송법」 제417조에 따른 준항고를 제기할 수 있다는 사실을 고지해야 한다.

1. 검사의 승인 없이 부당하게 신문에 개입하거나 모욕적인 언동 등을 행하는 경우

2. 피의자를 대신하여 답변하거나 특정한 답변 또는 진술 번복을 유도하는 경우

3. 「형사소송법」 제243조의2제3항 단서에 반하여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

4. 신문 내용을 촬영·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5. 증거의 인멸·은닉·조작, 조작된 증거의 사용, 공범 도주 원조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6. 피해자나 해당 사건의 수사·재판에 필요한 사실을 알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또는 그 친족의 생명·신체나 재산에 대한 침해의 위험이 구체적으로 드러난 경우

- ⑥ 검사는 제5항에 따라 피의자신문 중에 변호인의 참여를 제한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른 변호인을 참여시킬 기회를 주어야 한다.
- ⑦ 검사는 피의자의 옆에 신문에 참여하는 변호인의 좌석을 마련해야 한다. 다만, 조사인원, 조사공간, 피의자의 의사 등으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 변호인의 동의를 받아 변호인의 조력에 장애가 되지 않는 범위에서 변호인의 좌석 위치를 조정할 수 있다.
- ⑧ 검사는 조서 등을 작성하지 않고 단순히 피의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을 청취한다는 등의 사유로 변호인의 참여·조력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 ⑨ 검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후 조서를 열람하고 의견을 진술할 수 있도록 한다. 이 경우 변호인은 별도의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할 수 있으며, 검사는 해당 서면은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 ⑩ 검사는 피의자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중에 의견진술을 요청한 경우 변호인이 부당하게 신문·조사를 지연시키거나 신문·조사에 개입하는 등 신문·조사를 방해한다고 볼 만한 사정 등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요청을 승인한다. 다만, 변호인은 부당한 신문방법에 대해서는 검사의 승인 없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 ⑪ 검사는 제9항, 제10항의 규정에 따른 의견진술 또는 이의제기가 있는 경우 해당 내용을 조서에 적어야 한다.
- ⑫ 검사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에 대한 조사 시 변호

인의 참여에 관하여는 제1항부터 제11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조의3(변호인의 변론) 검사는 피의자·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
·참고인의 변호인이 변론을 요청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일정, 시간, 방식 등을 협의하여 변론할 기회를 보장해야 한다.

제9조의4(중요사건 협력 절차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한미행정협정사건 발생 통보를 받거나 그 외 중요사건에 관한 의견 제시·교환을 요청하는 서면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요청에 대하여 의견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8호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사건처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분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2항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④ 검사가 수사준칙 제7조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중요사건에 대한 의견 제시·교환을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9호 서식의 의견요청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분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4항의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제4항의 검사의 요청에

따라 의견을 제시하는 서면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⑦ 검사는 제6항의 서면에 대하여 의견제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호서식의 사법경찰관의 의견 제시에 대한 사건처리 의견서를 작성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의견서 부분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7항의 의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중요사건 협력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9조의5(사건 목록과 요지의 접수 및 처리) ① 특별사법경찰관리가

「특별사법관리에 대한 검사의 수사지휘 및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이하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이라 한다.) 제18조의2제1항에 따라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제출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상단중앙부에 목록과 요지 접수인을 찍어 접수한다.

② 검사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검토한 후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에 검토필 고무인을 찍고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③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때에는 사건의 목록과 요지의 표지 및 해당 사건의 목록과 요지 옆에 제출 지시 사건 고무인을 각각 찍는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사건의 목록과 요지를 인계받으면 해당 기관별로 편철하여 보존하여야 한다.

제9조의6(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 ①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제18조의2제2항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하는

때에는 별지 제11호서식의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서에 의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에 해당 기관의 사건번호 등을 기재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사건관계인의 이의제기에 따라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때에는 이의제기는 진정사건으로 수리하여 처리한다.

③ 검사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의 제출을 지시한 때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에게 사건관계인을 조사하는 등의 필요한 조치와 입건 여부를 지휘할 수 있다.

제9조의7(수사지휘 등) ①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7호서식의 수사지휘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2호서식의 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②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8호서식의 수사기일 연장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3호서식의 수사기일연장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③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9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14호서식의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④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129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서 또는 같은 규정 별지 제128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 보고서를 접수하여 사건을 재기하고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호서식의 재기수사지휘서로 지휘한다. 다만, 재기수사지휘 전에 피의자의 신병에 대하여 미리 수사지휘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제9조의8(출입국 규제 관련 검사의 의견제시)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범범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을 요청받은 때에는 별지 제17호서식의 범범자 출입국 규제 검토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제9조의9(수사기밀의 유지등)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형사소송법」 제198조제2항에 따라 수사과정에서 취득한 비밀을 엄수하여 수사에 방해되는 일이 없도록 하여야 한다.

제9조의10(보완수사요구의 대상과 절차)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보완수사요구(결정) :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준칙 제52조제1항제5호, 제60조제1항본문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2. 보완수사요구(추완) : 송치사건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준칙 제60조제1항단서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3. 보완수사요구(공판) : 공소제기 후 송치사건의 공소유지에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준칙 제59조제2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4. 보완수사요구(영장) :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는데 필요한 사항에 관하여 수사준칙 제59조제3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사건을 송치받거나 영장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신속하게 보완수사요구 여부를 검토한다. 다만, 사안이 복잡하거나 장기간 검토하여야 할 특별한 사정이 있을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③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서에 보완수사요구가 필요한 이유, 보완수사가 필요한 사항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고, 제1항제2호, 제3호 및 제4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때에는 이행기한을 정할 수 있다.

제9조의11(검사와 검찰청 직원의 회피) 검사 및 검찰청 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소속 검찰청의 장의 허가를 받아 그 수사 및 공소유지 업무를 회피해야 한다.

1. 본인이 피해자인 때
2. 피의자나 피해자의 친족 또는 그에 준하는 관계이거나 그와 같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때
3. 피의자나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나 후견감독인이거나 그와 같은 관계가 있었던 사람인 때

4. 기타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 받을 염려가 있는 객관적·구체적 사유가 있는 때

제9조의12(소재발견통보와 소재수사요청) ① 검사가 소재불명인 피의자나 참고인을 발견한 때에는 별지 제18호서식, 별지 제18호의2서식의 소재발견 통보서를 수배관서에 송부한다.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 또는 같은 법 제245조의7제2항에 따라 송치된 사건의 피의자나 참고인의 소재 확인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피의자나 참고인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소재수사요청서에 따른다.

제2절 수사의 단서

제10조(고소·고발·자수) ① 검사가 구술로 직접 고소·고발 또는 자수를 받은 경우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고소·고발·자수인진술조서를 작성한다.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8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6조제3항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0조의4제3항에 따라 고소할 수 있는 사람을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호서식의 고소인지정서를 작성하여 그 등본을 고소인으로 지정된 사람에게 교부한다. 이 경우 신청인외의 사람을 고소인으로 지정한 때에는 그 내용을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 제10조의2(검사와 부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통보가 있는 때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한다.
- ② 검시는 검사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사법경찰관으로 하여금 「형사소송법」 제222조 및 수사준칙 제17에 따라 검시 또는 검증을 하도록 할 수 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검시 또는 검증을 마친 경우 검사는 관련 절차를 종결하도록 한다.
-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변사사건 발생 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르고, 사법경찰관으로부터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2호의2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서에 따른다.
-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사건 처리 의견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3호서식의 변사사건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서로 의견을 제시한다.
- ⑤ 검사가 검시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본을 변사사건 발생통보 기록에 첨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이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검시조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해당 검시조서 또는 그 사본을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10조의3(교정시설 내 변사사건 처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3조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자 또는 변사의 의심있는 사체를 발견하였다는 보고가 있는 때에는 검시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즉시 검사에게 이를 보고한다.

② 검시는 검사가 직접 행함을 원칙으로 하고, 필요한 경우 전항의 특별사법경찰관에게 검시를 명할 수 있으며, 검사는 지체 없이 사체에 대한 처리를 지휘한다. 이 경우 검사가 전항의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5호 서식의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하고,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 보고 및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5호의2서식의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③ 검사가 변사사건 처리결과 및 지휘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6호의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④ 검사가 검시를 마친 때에는 별지 제24호서식의 검시조서를 작성한다.

제11조(필요적 입건사유) 검사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에 착수한 때에는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보고 해당 사건을 즉시 입건해야 한다.

1. 피혐의자의 수사기관 출석조사
2. 피의자신문조서의 작성
3. 긴급체포
4. 체포·구속영장의 청구
5.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에 대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부검을 위한 검증영장은 제외한다)의 청구

제3절 임의수사

제12조(피의자등의 출석요구)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19조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사실의 요지 등 출석요구의 취지를 구체적으로 적은 별지 제27호서식, 별지 제27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7호의3서식의 출석요구서에 따른다. 다만,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등 다음 각 호와 같은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전화, 문자메시지,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출석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요구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1. 신속한 출석요구가 필요한 경우
2. 피의자가 출석요구서 발송을 원하지 않는다는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한 경우
3. 피의자가 자수 등 목적으로 스스로 출석조사를 요청하는 경우
4. 출석요구서 발송이 피의자의 명예 또는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하지

나 생업에 지장을 줄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

5. 피의자의 소재나 주소지 등이 확인되지 않아 출석요구서 발송이 불가능한 경우

6. 기타 이에 준하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② 제1항의 경우 본문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출석요구서의 사본을, 단서에 따른 방법으로 출석요구를 했을 때에는 그 취지를 적은 수사보고서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③ 검사는 제1항에 따라 피의자에게 출석요구를 하려는 경우 피의자와 조사의 일시·장소에 관하여 협의해야 하고,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 변호인과의 협의해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변호인과 협의하지 않을 수 있다.

1.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변호인과의 협의를 명시적으로 원하지 않는 경우

2. 변호인과 상당시간 동안 연락이 되지 않는 등 변호인과의 협의를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경우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은 피의자 외의 사람에 대한 출석요구의 경우에도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28호서식, 별지 제28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28호의3서식의 참고인출석요구서에 따른다.

제12조의2(피의자 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형사소송법」 제244조의5에 따라 피의자와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의자의 직계 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하 "신뢰관계인"이라 한다)을 말한다.

② 피의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9호서식의 동석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동석신청서를 작성할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인과 피의자와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2항에 따른 신청이 없더라도 동석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피의자와의 신뢰관계 유무를 확인한 후 직권으로 신뢰관계인을 동석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이러한 취지를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기재한다.

④ 검사는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는 동석을 거부할 수 있다.

⑤ 피의자신문에 동석하는 신뢰관계인은 피의자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주는 행위 외의 불필요한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되고, 검사는 수사기밀 누설이나 신문 방해 등을 통하여 수사에 부

당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인정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거나 신뢰관계인이 부당하게 수사의 진행을 방해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신문 도중에 동석을 중지시킬 수 있다.

제12조의3(피해자 또는 참고인 신뢰관계인의 동석) ① 「형사소송법」

제221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163조의2 및 「인권보호수사규칙」 제52조에 따라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 동석할 수 있는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은 피해자 및 참고인의 직계친족, 형제자매, 배우자, 가족, 동거인, 보호시설 또는 교육시설의 보호 또는 교육담당자 등 피해자 및 참고인의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을 말한다.

② 피해자, 참고인 또는 법정대리인이 제1항에 기재된 사람에 대한 동석신청을 한 때에는 검사는 신청인으로부터 별지 제29호의2서식의 동석신청서 및 동석대상자와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수 있는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동석신청서 작성에 시간적 여유가 없는 경우 등에는 이를 작성하게 하지 아니하고, 수사보고서나 조서에 그 취지를 기재하는 것으로 갈음할 수 있으며, 조사의 긴급성 또는 동석의 필요성 등이 현저한 경우에는 예외적으로 동석 조사 이후에 신뢰관계자와 피해자 또는 참고인과의 관계를 소명할 자료를 제출받아 기록에 편철할 수 있다.

③ 피해자 또는 참고인의 신뢰관계인의 동석에 대하여는 제12조의2제3항부터 제5항까지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피의자"는 "피해자

또는 참고인"으로, "신문"은 "조사"로 각각 본다.

제13조(조서와 진술서) ①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피의자 이외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진술조서에 따른다. 이 경우 피의자 이외의 사람이 피혐의자인 경우에는 제13조의6을 준용한다.

③ 검사는 피의자 또는 피의자 외의 사람의 진술을 들음에 있어 진술인이 서면 진술을 원하는 경우, 진술 사항이 복잡하고 진술인이 서면 진술에 동의하는 경우 등 서면 진술을 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 등을 작성하거나 해당 사건에 관한 자료를 접수한 때에는 작성 또는 접수 순서에 따라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이를 기록목록에 기재하며, 사건기록에는 매 장마다 장수를 기재한다. 다만, 범죄사실과 직접 관련이 없거나 중복하여 작성 또는 접수된 자료는 별도의 사건기록에 분리하여 편철할 수 있다.

제13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의 조서 등) ①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 별지 제30호의2서식의 피의자신문조서를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 ② 검사가 피의자 외의 사람으로부터 진술을 듣고 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1호서식, 별지 제31호의2서식의 진술조서를 시스템에서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 ③ 제1항 및 제2항의 문서작성자는 전자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하고, 진술자에게 전자서명을 하도록 한다.
- ④ 전자문서로 작성한 조서의 간인은 면수를 표시하는 방법으로 한다.
- ⑤ 검사, 검찰수사서기관, 검찰사무관, 검찰주사 또는 검찰주사보, 검찰서기(이하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이라 한다)는 진술인에게 제13조 제3항의 진술서를 작성하도록 한 경우 즉시 그 진술서를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약식전자문서법에 따른 전자화문서를 말한다. 이하 같다)로 작성한다.
- ⑥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피의자나 사건관계인으로부터 해당 사건에 관한 종이문서나 그 밖에 전자적 형태로 작성되지 아니한 문서(이하 "전자화대상문서"라 한다)를 접수한 경우 즉시 스캐너를 이용하여 전자화문서로 작성한다.
- ⑦ 제5항 및 제6항의 문서작성자는 전자화문서에 행정전자서명을 한다.
- 제13조의3(전자화대상문서의 보관·폐기 등) ①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13조의2제5항 및 제6항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전자화문서로 변환하는 즉시 전자화대상문서에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이 전자적 처리사건 송치 후 전자

화대상문서를 추가로 보내 온 경우에는 추송서 등 관련 문서에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③ 재산형(財産刑) 등 집행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전자화대상문서를 받은 경우에는 그 전자화대상문서에 고무인을 찍어 사건번호 등을 기재한 후 보존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한다.

④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전자화대상문서를 인계받은 경우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 후 전자적 처리사건기록 보존시까지 연도별 사건번호순으로 정리하여 보관한다. 이 경우 동일한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는 합철하여 보관한다.

⑤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이 약식전자문서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해당 사건의 전자화대상문서를 검사에게 인계하고, 그 사실을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기록한다.

⑥ 보존사무담당직원은 전자적 처리사건의 기록을 폐기할 때에는 해당 전자화문서를 폐기하고,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에 그 사실을 기록한다.

⑦ 제6항에 따라 전자화문서를 폐기하는 경우에는 「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3조에 따라 해당 기관 기록물관리 전문요원의 심사 및 기록물평가심의회 심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13조의4(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지 않게 된 사건) ① 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3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전자적 처리사건으로 처리하

는 것이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그 때까지 해당 사건과 관련하여 작성된 전자문서와 전자화문서를 출력한 종이문서를 일반사건 전환 표지와 함께 기록에 편철하여 종으로 된 사건기록을 만든 후 필요한 절차를 진행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번호를 "○년 형제 ○호"로 된 새로운 사건번호로 표시한다.

② 검사 및 검찰사무관등은 제1항에 따라 약식전자문서법의 절차를 따르지 않게 된 경우 그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작성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 제2항의 수사보고서에는 그 때까지 제출된 전자화대상문서를 첨부한다.

제13조의5(조사 및 결정 전 의견청취) ①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기에 앞서 조사 대상자에게 조사의 경위 및 이유를 설명하고 유리한 자료를 제출할 기회를 주거나, 조사 대상자로부터 피의사실에 대한 의견 및 조사 요구 사항 등 조사에 참고할 사항을 들을 수 있다.

② 수사준칙 제25조에 따라 검사는 조사과정 또는 조사를 종결하기 전에 피의자, 사건관계인 또는 그 변호인에게 사실관계 등의 확인을 위한 자료 또는 의견을 제출할 의사가 있는지 확인하며, 제출받은 자료 또는 의견은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③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제1항, 제2항에 따라 전문수사자문위원의 자문(의견 또는 설명을 포함한다)을 들은 경우에는 그 취지

를 기재한 조서나 수사보고서를 수사기록에 편철하고, 설명 또는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받은 경우에는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45조의2제3항에 의하여 의견을 진술하거나 의견을 기재한 서면을 제출한 때에도 같다.

④ 제3항의 규정은 검사의 수사 또는 결정과 관련하여 국민의 의견을 직접 반영할 필요가 있거나 검찰청 내·외부의 자문이 필요하여 의견·자문·권고 등을 청취하는(서면으로 제출받는 것을 포함한다) 절차를 거친 경우에도 준용한다.

제13조의6(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확인) 검사는 피의자신문조서 작성에 갈음하여 진술서를 작성하는 경우 등 피의자신문조서를 작성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의 고지 및 그에 대한 피의자의 답변에 관하여 별지 제33호서식의 확인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한다.

제13조의7(수사과정의 기록) ①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여 조서를 작성하는 때에는 별지 제34호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수사과정을 기록하고, 이를 조서의 끝부분에 편철하여 조서와 함께 간인함으로써 조서의 일부로 하거나, 별도의 서면으로 기록에 편철한다.

② 전항의 수사과정을 기록하는 경우 조사장소의 도착시각, 조사의 시작 및 종료 시각 등을 기재하고, 조사장소의 도착시각과 조사 시작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구체적인 이유 등을 기재하며,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 그 이유와 중단 및 재개 시

각 등을 구체적으로 기재하는 등 조사과정의 진행 경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기재한다.

③ 검사는 피의자 또는 사건관계인을 조사하고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경우, 별지 제34호의2서식의 수사 과정 확인서에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 조사장소를 떠난 시각, 조서를 작성하지 않은 이유, 조사 외에 실시한 활동, 변호인의 입회 여부를 기재하고 이를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제13조의8(영상녹화)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21조제1항 또는 제244조의2제1항에 따라 피의자 또는 피의자 아닌 사람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해당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하며, 조사 도중 영상녹화의 필요성이 발생한 경우에는 그 시점에서 진행 중인 조사를 종료하고, 그 다음 조사의 시작부터 종료 시까지의 전 과정을 영상녹화한다.

② 검사는 조사를 마친 후 조서 정리에 장시간을 요하는 때에는 조서 정리과정을 영상녹화하지 아니하고, 조서를 열람하는 때부터 영상녹화를 재개할 수 있다.

③ 검사는 피의자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피의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지한다.

1. 조사자 및 참여자의 성명과 직책
2. 영상녹화 사실 및 장소, 시작 및 종료 시각
3.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른 진술거부권 등

4. 조사를 중단하거나 재개하는 경우 중단 이유와 중단 시각, 중단 후 재개하는 시각

④ 검사는 피의자가 아닌 사람에 대한 조사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경우 별지 제35호서식의 영상녹화동의서로 영상녹화에 대한 동의 여부를 확인하고, 제3항 제1호, 제2호 및 제4호의 사항을 고지한다.

⑤ 검사는 영상녹화를 함에 있어 조사실 전체가 확인가능하고 피조사자의 얼굴과 음성이 식별 가능하도록 한다.

제13조의9(영상녹화물의 제작 등) ① 검사는 영상녹화를 실시한 경우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된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영상녹화물(CD, DVD 등) 1개를 제작하고, 피조사자의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받아 피조사자 또는 변호인의 면전에서 봉인하여 수사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는 영상녹화물을 제작한 후 영상녹화용 컴퓨터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전송하여 보관할 수 있다.

③ 검사는 제1항의 영상녹화물이 손상 또는 분실 등으로 인하여 사용될 수 없는 경우에는 데이터베이스 서버에 저장되어 있는 영상녹화파일을 이용하여 다시 영상녹화물을 제작할 수 있다.

제13조의10(피의자 및 신문 참여 변호인 등의 기록)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피의자 및 신문에 참여한 변호인이 신문 내용을 손으로 써서 기록하는 것을 제한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검사는 피의자 또는 변호인이 기록할 수 있도록 적절한 조치를 해야 한다.

1. 신문 내용을 촬영·녹음하거나 전자기기를 이용하여 기록하는 경우
2. 수사 지연, 신문 방해 또는 수사기밀 누설 등 수사에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는 경우
3. 신문을 종료한 후 피의자신문조서의 내용을 옮겨 쓰는 경우
4. 다른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 등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② 검사의 피혐의자·피내사자·피해자·참고인 조사 시 피혐의자 등과 조사에 참여한 변호인이 하는 기록에 관하여는 제1항을 준용한다.

제14조(감정의 위촉)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을 위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6호서식의 감정위촉서에 따른다.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의 규정에 의하여 감정에 필요한 처분허가장을 받아 위촉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5조(수사관계사항의 조회)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무소 기타 공사단체에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7호서식의 수사사항조회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건을 인지하는 때에는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사자료표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하며, 범죄통계원표(발생사건표, 검거사건표, 피의자표)를 작성한다.

③ 검사가 고소·고발을 받은 사건을 직접 수사하는 때에도 제2항과 같다. 다만, 고소·고발사건 중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피의자가 「지문을채취할형사피의자의범위에관한규칙」 제2조제2항제

1호·제2호 또는 제4호의 1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피의자에 대한 지문채취 및 지문대조조회를 하지 아니한다.

1. 혐의없음
2. 공소권없음
3. 죄가안됨
4. 각하
5. 참고인중지

④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제2항에 따라 피의자의 지문을 채취하여 별지 제38호서식의 수사자료표송부서에 따라 지문대조조회를 해야 한다.

1. 고소·고발사건 중 불기소결정에 대한 재기수사명령·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을 받은 사건이나 사법경찰관이 지문을 채취하지 않고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목의 제기 또는 결정을 하는 때

가. 공소의 제기

나. 기소유예,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3장에 따른 보호사건(이하 "성매매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제7호에 따른 아동보호사건(이하 "아동보호사건"이라 한다) 송치의 결정

2. 제2조제4호에 따른 송치를 받은 사건이나 같은 조 제11호에 따라

재정결정서를 송부받은 사건에 대하여 이 항 제1호 각 목의 제기 또는 결정을 하는 때

제16조(임의 제출등) ① 「형사소송법」 제218조에 따라 유류한 물건 또는 임의로 제출하는 물건을 검사가 압수한 때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압수조서를 작성한다. 다만, 피의자신문조서 또는 진술조서에 압수의 취지를 기재함으로써 압수조서의 작성에 갈음할 수 있다.

② 「형사소송법」 제21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29조에 따른 압수목록의 교부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압수목록교부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압수한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41호서식의 압수물총목록을 작성하여 압수조서와 함께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 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④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압수물인 유가증권에 관하여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⑤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의2서식의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⑥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의3서식의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⑦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의4서식의 압수물 폐기처분 지휘 요청(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⑧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압수물 환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2호의5서식의 압수물 환부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⑨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압수물 가환부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42호6서식의 압수물 가환부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제17조(실황조사) 검사가 범죄의 현장 기타 장소에서 실황조사를 한 후 실황조서를 작성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3호서식에 따른다.

제18조(수사의 촉탁) ① 검사가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수사촉탁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기록을 이송할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별지 제44호서식의 수사촉탁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할 경우에는 전신·전화·모사전송·전자우편 기타의 방법에 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사촉탁을 받은 검사는 별지 제45호서식의 공조사건회답서에 따라 회답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수사촉탁을 한 경우와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촉탁을 받은 경우에는 공조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19조(증거보전의 청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보전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증거보전의 신청을 받아 증거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6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110호서식의 증거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증거보전의 청구가 있을 때에는 증거보전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거보전 신청을 검토하여 증거보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46호의3서식의 증거보전신청 기각서로 증거보전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증거보전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 지휘를 할 수 있다.

제4절 체포

제20조(체포와 범죄사실등의 고지) 검사 및 직무상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이 피의자를 체포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 및 수사준칙 제32조에 따라 피의자에게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며, 진술거부권을 알려준 후 피의자로부터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를 받아 기록에 편철한다. 다만, 피의자가 별지 제47호서식의 권리 고지 확인서에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하는 경우에는 피의자를 체포한 검

사 또는 검찰청 직원이 확인서 말미에 그 사유를 기재하고 기명날인 또는 서명한다.

제21조(체포영장의 청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체포영장의 신청을 받아 체포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8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23호서식의 체포영장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체포영장을 검토하여 체포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48호의3서식의 체포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체포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체포영장을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체포영장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며,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이 신청한 체포영장이 판사에 의하여 기각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 따라 처리한다.

1.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인 경우 기한을 정하여 제9조의10제1항제4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이때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에 따른다.

2.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체포영장인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수사를 보완한 후 체포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체포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⑤ 판사로부터 체포영장이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에 따른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영장 또는 기각된 체포영장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⑥ 검사가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요구를 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 후 체포여부를 재지휘 받도록 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재수사지휘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이 기한내에 체포영장을 재신청하지 아니하거나 체포여부를 재지휘 받지 아니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22조(체포영장의 재청구)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4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동항에 규정한 재체포의

이유 또는 동법 제214조의3에 규정한 재체포의 사유를 기재한다.

제23조(체포영장의 집행지휘)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1조제1항 본문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0호서식의 체포영장집행지휘서에 따르거나 체포영장 상단에 서명 또는 날인의 방법으로 지휘할 수 있다.

제24조(체포영장의 집행촉탁)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3조제1항에 따라 영장에 의한 체포의 집행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에게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1호서식의 체포영장집행촉탁서에 따른다.

②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검사는 체포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영장 반환서에 체포영장 및 체포영장집행지휘서와 사법경찰관등이 작성한 체포영장집행불능보고서를 첨부하여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한 검사에게 이를 반환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의 집행을 촉탁하거나 체포의 집행을 촉탁받은 경우에는 체포영장집행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25조(체포영장의 반환) ① 검사는 체포영장의 유효기간 내에 영장의 집행에 착수하지 못했거나 그 밖의 사유로 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불필요하게 되었을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체포영장을 집행하고 있는 사람이나 체포영장의 집행을 촉탁받은 사람에게 통지하여 체

포영장을 반환하도록 한다.

② 검사가 체포영장의 유효기간이 경과하도록 집행에 착수하지 못할 경우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5조 제1항에 따라 별지 제52호서식의 영장 반환서에 따르고, 체포영장을 법원에 반환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영장반환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영장 반환서에 따른다.

제26조(체포의 통지) ① 검사가 피의자를 체포한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87조에 따라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변호인에게, 변호인이 없는 경우에는 동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중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체포한 때로부터 늦어도 24시간내에 별지 제53호서식에 따라 사건명, 체포의 일시·장소, 범죄사실의 요지, 체포의 이유와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통지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30조제2항에 규정된 사람이 없어 체포의 통지를 하지 못하는 때에는 그 취지를 기재한 수사보고서를 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는 긴급을 요하는 경우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체포의 통지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제1항에 따라 다시 서면으로 체포의 통지를 한다.

제26조의2(체포·구속 적부심사의 통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규정된 사람 중에서 피의자가 지정한 사람에게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음을 알리는 경우에 제26조를 준용한다.

제27조(피의자접견등금지의 결정)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와 같은 법 제34조에 규정된 사람 외의 사람과의 접견 등을 금지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54호서식의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등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55호서식의 접견등금지지휘서를 받아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검사는 제1항의 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피의자접견등의 금지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접견등금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④ 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접견등금지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⑤ 제1항의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은 공소제기와 동시에 그 효력을 상실한다.

제28조(체포 피의자의 석방 및 체포의 취소)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 및 수사준칙 제36조제1항에 따라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않고 석방하는 때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석방서에 따르고, 석방서 부분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며, 다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3조에 따라 피의자의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체포영장의 상단에 체포 취소사유와 일시를 기재한다.

제28조의2(특별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건의에 대한 지휘) ①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47호서식의 피의자 석방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피의자 석방지휘(승인)서로 지휘한다.

②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체포취소의 신청을 받아 체포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제28조제3항을 준용한다.

제28조의3(사법경찰관의 피의자 석방통보에 대한 조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36조제2항제1호에 따른 통보서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체포영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29조(피의자의 석방통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4조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된 피의자의 석방을 법원에 통지할 때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피의자석방통지서에 따른다.

제30조(긴급체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를 한 경우에는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즉시 별지 제60호서식의 긴급체포서를 작성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분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터 긴급체포승인요청을 받은 경우에 긴급체포승인요청을 검토하여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이를 승인하고, 긴급체포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긴급체포의 승인을 하지 아니한다. 이 경우 별지 제61호서식의 긴급체포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에 따른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27호서식의 긴급체포 승인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61호의2서식의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한 지휘서로 지휘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체포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체포승인요청 또는 긴급체포승인건의를 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승인결정부 또는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여 지체 없이 검사에게 긴급체포승인요청서 또는 긴급체포승인건의서를 제출하며, 검사가 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긴급체포승인요청 또는 건의를 승인하거나 승인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긴급체포승인결정부 또는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31조(긴급체포시의 유의사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체포를 할 때에는 피의자의 연령·경력·범죄성향이나 범죄의 경중·태양 기타 여러사정을 고려하여 인권의 침해가 없도록 신중을 기한다.

제31조의2(긴급체포 후 석방의 통지)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

의3에 따라 피의자를 긴급체포한 후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2항에 따라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청구하지 아니하고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석방서를 작성하고, 석방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를 작성한 후 긴급체포서 사본을 첨부하여 법원에 통지한다. 이 경우 검사는 석방서 및 석방통지서 부분 2부를 각각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 기록에 편철하며, 다른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석방서 및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원부의 석방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6항에 따라 석방보고를 받은 후 같은 조 제4항에 따라 법원에 석방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2호의2서식의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그 부분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3항에 따라 석방통지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긴급체포승인결정부 또는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의 석방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32조(현행범인체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체포한 경우에는 별지 제63호서식의 현행범인체포서를 작성하고, 그 부분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3조의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을 인도받

은 경우에는 별지 제64호서식의 현행범인인수서를 작성하고, 그 부분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 규정에 의하여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송부한 경우에는 현행범인체포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④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수사준칙 제28조제2항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제56조제2항에 따른 현행범인 석방 통보 또는 보고 취지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경우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33조(준용규정) 제20조·제26조 및 제28조의 규정은 긴급체포 및 현행범인체포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이 경우 "체포"는 각각 "긴급체포·현행범인 체포 또는 현행범인 인수"로, "체포영장"은 "긴급체포서·현행범인 체포서 또는 현행범인 인수서"로, 제20조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같은 법 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경우를 포함한다)"로, 제26조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 또는 같은 법 제213조의2"로 각각 본다.

제34조(체포·구속장소감찰)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8조의2의 규정에 의하여 체포·구속장소를 감찰하는 경우에는 불법체포·구속의 유무와 수사사무의 적정여부등을 조사하고, 필요하다고 인정될 때에는 사법경찰관리를 지도하거나 사법경찰관등에게 시정을 명하고, 체포·구속장소감찰보고서에 따라 소속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조사후 적법한 절차에 의하지 아니하고 체포·구속된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65호서식의 피의자석방명령서에 의하여 체포·구속된 사람의 석방을 명하거나 별지 제66호서식에 의한 사건송치명령서에 의하여 사건을 송치할 것을 명하고,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등본을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체포·구속장소감찰보고서에 첨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2항에 의한 피의자석방명령서 또는 사건송치명령서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피의자석방명령·사건송치명령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35조(체포·구속영장등본의 교부)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1항에 규정된 사람은 체포·구속영장등본의 교부를 청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하여 검사의 지휘에 따라 체포·구속영장의 등본을 청구인에게 교부한다.

제36조(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청구에 따른 심문기일통지나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 송부요청이 있는 때에는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수사관계서류등송부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의 의견과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

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관계서류등을 제출받아 송부하는 경우에도 제1항 및 제2항과 같다.

④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 각 호의 사유가 있거나 같은 조 제6항에 따른 석방조건을 부가할 필요가 있는 경우 및 같은 조 제11항에 따른 수사상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수사관계서류등송부서의 의견란에 그 뜻을 기재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체포 또는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이를 제출한다. 이 경우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5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인 경우에는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 및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⑦ 법원의 구속적부심사결정에 따라 적부심보증금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증금이 납입되거나 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석방허가결정으로 석방된 피의자가 정당한 이

유없이 출석하지 아니하는 등 특별한 사정이 있거나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6항에 따라 조건을 부가하여 석방허가결정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한다.

⑨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이 「형사소송법」 제214조의2제4항에 따라 피의자의 석방을 명하는 것이거나 이 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관서 및 보관표를 받은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69호서식의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체포와 구속의 적부심사결정등본은 검사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교부하여 사건기록에 편철하도록 한다.

⑩ 제9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하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59호서식의 피의자석방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제37조(적부심보증금의 몰수) ① 「형사소송법」 제214조의4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적부심보증금몰수청구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적부심보증금몰수청구서에 의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적부심보증금몰수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

에 검사의 몰수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있어서 적부심보증보험금몰수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71호서식의 적부심보증보험금지금 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송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 주식회사로부터 적부심보증보험금을 송부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38조(적부심보증금의 환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 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적부심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하였음에도 30일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기록표와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한다.

제5절 구속

제39조(구속영장청구 전 피의자조사등) 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의 청구여부를 판단하는 경우에는 구속의 사유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때에는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거나 사법경찰관등의 의견제시를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체포 등의 사유로 출석이 곤란하거나, 피의자의 요청이 있는 때에는 화상, 전화 등의 방법을 활용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제1항에 따라 피의자를 면담 또는 조사하는 경우에 변호인의 참여 등에 관하여는 제9조의2를 준용한다.

제40조(구속영장의 청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서식의 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의2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제1항 본문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31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르고,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34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한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

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규정된 방법으로 기각한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등이 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74호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2. 사법경찰관등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74호의2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④ 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70조제2항에 규정된 필요적 고려사항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이를 기재한다.

제41조(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후 구속영장의 청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1항 또는 동법 제213조의2에 의하여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의3서식 또는 별지 제72호의4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0조의4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3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33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의하고, 「형사소송법」 제213조의2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0조의2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구속영장의 신청을 받아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4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32호서식의 구속영장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구속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긴급체포서, 현행범인체포서 또는 현행범인인수서를 제출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제40조제4항을 준용한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구속영장 신청을 검토하여 구속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구속영장 신청을 기각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규정된 방법으로 기각한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구속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등이 긴급체포한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

우: 별지 제74호의3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2. 사법경찰관등이 현행범인체포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74호의4서식의 구속영장신청 기각서로 기각한다.

제42조(구속영장의 재청구)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구속영장을 재청구하는 경우에는 동항·동법 제208조제1항 또는 제214조의3에 규정한 재구속의 사유를 기재한다.

제43조(구속영장청구와 피의자심문)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의 규정에 의한 피의자심문에 따른 심문기일과 장소의 통지를 접수한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서면·전화 또는 모사전송 기타 신속한 방법으로 심문기일과 장소를 통지하고, 구속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지체없이 검사에게 통지서를 제출한다.

② 검사는 별지 제75호서식의 의견서에 구속이 필요한 사유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5항에 따른 수사상의 비밀보호를 위한 조치가 필요한 때에는 그 뜻을 기재하여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2항의 규정에 따라 작성한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확인을 받아야 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영장청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법원에 제출하고 법원으로부터 접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하며, 법원이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법원으로부터 반환일자 확인을 받아야 한다.

⑤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녹음·영상녹화를 신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76호서식의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서에 제6항에 따른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한다.

⑥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구속 전 피의자심문의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6호의2서식의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서에 따른다. 다만, 제5항 단서에 따라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서에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의 사본 청구의 취지를 함께 기재하여 이미 청구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44조(구속기간의 연장)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5조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구속기간의 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7호서식의 구속기간연장신청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구속기간연장신청을 한 때에는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기간의 연장결정이 있는 때에는 지체없이 구속기간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그 내용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78호서식의 구속

기간연장통지서에 따라 통지한다.

제45조(접견금지 결정등의 청구) ① 검사가 피고인과 「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된 사람외의 사람과의 접견등을 금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9호서식의 피고인접견등금지결정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접견등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청구에 의한 판사의 접견등금지결정이 있는 때에는 접견등금지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검사로부터 별지 제55호서식의 접견등금지지휘서를 받아 피고인접견등금지결정서등본을 첨부하여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의 청구에 의하여 내린 판사의 접견등금지결정을 취소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80호서식의 피고인접견등금지취소청구서를 법원에 송부한다.

⑤ 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은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접견등금지취소결정이 있는 경우의 사무처리에 관하여는 이를 준용한다.

제46조(감정유치장청구등)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3제1항에 따라 감정유치처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서식의 감정유치장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감정유치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1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61호서식의 감정유치장 청구서에 의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감정유치장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유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82호서식의 감정유치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유치장 신청을 기각한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유치장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감정유치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감정유치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감정유치장이 발부된 때에는 감정유치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3호서식의 감정유치장집행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경찰서장에게 송부한다.

⑥ 검사가 감정유치처분의 해제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4호서식의 감정유치 해제청구서에 의한다.

⑦ 검사가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수감중인 피의자를 병원 기타 상당한 장소에 유치할 경우에는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85호서식의 출감지휘서에 따라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하고, 피의자를 인도받은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86호서식의 호송지휘서에 따라 유치할 장소에 호송할 것과 유치할 장소를 관할하는 경찰서장에게는 별지 제87호서식의 감호지휘서에 따라 유치기간중 감호할 것을 지휘한다. 다만, 「치료감호 등에 관한 법률」상의 치료감호시설에 유치할 경우에는 감호지휘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⑧ 검사가 감정유치기간의 만료 또는 감정유치처분의 해제결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경우에는 경찰서장에게 호송지휘서에 의하여 호송할 것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는 별지 제88호서식의 수감지휘서에 의하여 수감할 것을 지휘한다.

⑨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재수감한 때에는 검사는 별지 제89호서식의 수감통지서에 의하여 이를 법원에 통지한다.

⑩ 검사는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피의자를 병원등에 감정유치하거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재수감할 때에는 별지 제90호서식 및 별지 제91호서식의 입·퇴원의뢰서에 의하여 피의자에 대한 입·퇴원의뢰를 한다.

제47조(검증현장등으로의 호송) 검사는 수사를 위하여 구속중인 피의자 또는 피고인을 검증등에 참여하게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2호서식의 피의자·피고인 호송지휘서를 따르고, 피의자 또는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지정된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한다.

제48조(구속의 집행정지)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9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용되는 동법 제101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중인 피의자에 대하여 구속집행정지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구속집행정지결정서에 따른다.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구속집행정지신청을 받아 구속집행정지를 결정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다만, 타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구속집행정지자기록을 작성한 후 별지 제69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결정이 병원등으로 주거지를 제한하는 것인 때에는 별지 제93호서식의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인도지휘서, 별지 제92호서식의 피의자·피고인 호송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 또는 경찰서의 장과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④ 제3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아래와 같이 시찰조회를 요구하거나 그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서면을 송부할 수 있다.

1.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의 장에게 별지 제94호서식의 시찰조회서
2.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경찰서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별지 제68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

⑤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102조 제2항 본문에 따라 구속집행정지결정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구속(형) 집행정지취소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집행정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별지 제88호서식의 수감지휘서 또는 별지 제95호서식의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교도소 또는 피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49조(피의자의 석방) ① 검사가 구속중인 피의자를 석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의한다. 다만, 수용지휘를 하지 아니한 피의자에 대하여는 구속영장 상단에 석방사유·일시등을 기재하고 날인하여 석방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구속 피의자 석방 건의서 또는 승인 요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8호서식의 피의자석방지휘(승인)서에 따라 지휘 또는 승인한다. 다만, 타법령에 다른 규정이 있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50조(준용규정) 구속의 경우에는 제20조·제21조제3항부터 제6항까지 및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제29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제20조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의5"는 "「형사소송법」 제209조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200조의5"로, 제23조부터 제28조까지 중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은 "「형사소송법」 제209조"로, "체포"는 "구속

"으로, "체포영장"은 "구속영장"으로 각각 본다.

제6절 압수·수색·검증

제51조(압수·수색등 영장의 청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5조 제1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6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서(사전)에 따르되,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에 따르고,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8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몰수·추징 집행)에 따르되,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99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몰수·추징 집행(금융계좌추적용)]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지휘준칙 별지 제49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에 따르되,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금융계좌추적을 위한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받아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의2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지휘준칙 별지 제49호의2

서식의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금융계좌추적용)에 따른다.

③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 및 같은 법 제217조제2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의 영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의3서식의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압수·수색 또는 검증영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0호의4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50호서식의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서(사후)에 따른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검토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하고, 이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규정된 방법으로 기각한다.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할 수 있고,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영장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압수·수색 또는 검증 여부를 재지휘받도록 하거나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재신청하도록 할 수 있다.

1. 사법경찰관등이 사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0호의5서식의 기각서로 기각한다.

2. 사법경찰관등이 금융계좌추적용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0호의6서식의 기각서(금융계좌추적용)로 기각한다.

3. 사법경찰관등이 사후 압수·수색·검증 영장을 신청한 경우: 별지 제100호의7서식의 기각서(사후)로 기각한다.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을 청구하거나 제4항에 따라 압수·수색 또는 검증 영장의 신청을 기각 또는 보완수사요구를 한 경우에는 압수·수색 영장등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⑥ 제2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압수·수색 및 검증의 영장의 청구 등과 그 집행 지휘 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52조(압수조서의 작성 등) 「형사소송법」 제215조·제216조,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압수에 대해서는 제16조를 준용한다.

제53조(압수·수색증명서의 교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28조의 규정에 의하여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다는 뜻의 증명서를 교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1호서식의 증명서에 따른다.

제53조의2(전자정보의 압수·수색) 검사가 수사준칙 제42조제2항에 따라 전자정보를 삭제 또는 폐기하거나 반환할 때에는 별지 제102호서식의 삭제·폐기·반환확인서를 작성한다.

제53조의3(금융정보등의 압수·수색) 검사는 금융거래정보를 대상으로 하는 압수·수색을 하는 경우에는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제4조의2제2항에서 정한 사유가 있는지 검토하여 금융회사 등에 대한 금융거래정보 등 제공사실의 통보유예 요청 여부를 결정한다. 제54조(검증조서의 작성) 검사가 검증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103호서식의 검증조서를 작성한다.

제7절 기타의 강제수사

제55조(감정처분의 허가청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4에 따라 감정처분의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4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감정처분허가장의 신청을 받아 감정처분허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5호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62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 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검토하여 감정처분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06호서식의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서로 감정처분허가장 신청을 기각한다.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감정처분허가장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사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감정처분허가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⑤ 검사는 감정처분허가장을 발부받은 경우에는 감정위촉서와 함께

감정을 위촉받을 사람에게 이를 교부한다. 제21조제5항,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감정처분의 허가청구 및 그 집행 지휘등에 이를 준용한다.

제56조(증인신문의 청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에 따라 증인신문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증인신문청구서에 의한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증인신문의 신청을 받아 증인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8호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110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증인신문 신청을 검토하여 증인신문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109호서식의 증인신문신청 기각서로 증인신문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특별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증인신문을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청구가 있는 때에는 증인신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56조의2(임시조치의 청구) ① 검사가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에 따라 직권으로 임시조치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0호서식, 별지 제110호의2서식의 임시조치청구서에 따르고, 「가정폭력범

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제1항, 제2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4조 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의 신청에 따라 임시조치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서식, 별지 제111호의2서식의 임시조치청구서에 따르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3제1항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5조제1항의 신청에 따른 임시조치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1호의3서식, 별지 제111호의4서식의 임시조치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의 임시조치 신청을 검토하여 임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임시조치의 신청을 기각하고, 이 경우 별지 제112호서식, 별지 제112호의2서식의 임시조치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청구를 한 때에는 임시조치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④ 검사는 임시조치의 결정을 집행한 때에는 집행일시 및 집행방법을 기재한 서면을 기록에 편철한다.

⑤ 제21조 제4항, 제5항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체포영장의 청구 및 집행에 관한 규정은 임시조치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⑥ 임시조치 결정에 대하여 항고가 제기되어 법원으로부터 수사기록 등본의 제출을 요구받은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담당검사의 지시에 따라 항고심 재판에 필요한 범위내의 수사기록등본을 법원에 제출

하고, 사법경찰관리가 수사중인 때에는 위 등본을 사법경찰관리로부터 송부받아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임시조치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3장 사건의 처리등

제1절 총칙

제57조(사건의 결정) 검사가 사건의 수사를 종결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결정을 한다.

1. 공소제기
2. 불기소
 - 가. 기소유예
 - 나. 혐의없음
 - 1) 범죄인정안됨
 - 2) 증거불충분
 - 다. 죄가안됨
 - 라. 공소권없음
 - 마. 각하
3. 기소중지
4. 참고인중지
5. 보완수사요구
6. 공소보류

7. 이송(검사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및 제25조제2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하는 경우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8. 소년보호사건 송치

9. 가정보호사건 송치

10.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11. 아동보호사건 송치

제57조의2(불송치·수사중지 기록등의 처리) ① 검사가 불송치 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기록반환

2. 재수사요청

② 검사가 수사중지 기록의 검토를 마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기록반환

2. 시정조치요구

제57조의3(결정과 처리의 단위등) ① 검사는 사건 단위로 결정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11조의 관련사건은 병합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② 검사는 1건으로 수리한 사건 중 피의자가 수인이거나 피의사실이 수개인 경우에 분리결정할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중 일부에 대하여 결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검사가 불송치·수사중지 기록등을 처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8조(승인등 절차) 검사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결정 또는 처리등을 하고자 할 때에는 미리 소속 검찰청의 장으로부터 승인을 받아야 한다.

1. 중요한 사건에 관한 결정 또는 중요한 기록에 관한 처리
2. 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소장 변경등과 상소 여부
3. 중요한 사건에 관한 공소의 취소 또는 상소의 취하

제59조(결정결과등의 전산입력)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을 결정한 때에는 결정입력항목으로 정한 사항을, 기록을 처리한 때에는 처리입력항목으로 정한 사항을 각각 시스템에 입력한다.

② 제4조제6항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준용한다.

제60조(결정결과등의 통지)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1항 및 수사준칙 제53조제1항에 따라 고소인·고발인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 별지 제113호서식에 의한 고소·고발사건결정결과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수사처장에게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수사처송치사건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고소·고발사건결과통지부 또는 수사처송치사건결정결과통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8조제2항 및 수사준칙 제53조 제1항에 따라 피의자(인지사건의 피의자를 포함한다), 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

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통지하는 경우에는 사건번호, 피의자, 죄명, 결정 결과 등을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다만, 피의자·피해자가 서면에 따른 통지를 요구하거나 그 밖의 여건 등을 고려할 때 서면에 따른 통지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5호서식의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에 따른다.

③ 제2항에 따라 피의사건 결정결과를 통지한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의사건결정결과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④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1항 및 수사준칙 제63조제3항에 따라 피의자와 고소인·고발인·피해자 또는 그 법정대리인(피해자가 사망한 경우에는 그 배우자·직계친족·형제자매를 포함한다.)에게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6호서식의 재수사요청 사실 통지서에 따른다.

⑤ 검사가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 「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또는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수사의 개시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7호서식의 공무원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또는 별지 제117호의2서식의 공무원등 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에 따르고, 수사의 종료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18호서식의 공무원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18호의2서식의 공무원등 고소·고발사

건 결정결과통보서에 따른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별지 제119호서식의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에 따라 송치관서의 장 또는 사건을 송치한 사법경찰관등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해야 한다. 이 경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1호에 따라 송치받은 고소·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안됨·각하 또는 참고인증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결정결과와 함께 별지 제119호서식 중 제11항 비고란에 피의자에 대한 수사자료표를 폐기하도록 하는 내용을 부기하여 통보해야 한다.

1. 검사가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7의2호에 따른 송치 또는 이송등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증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때

2. 검사가 제2조제3호 및 같은 조 제7의2호에 따른 송치 또는 이송등을 받은 사건에 관하여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

3. 검사가 제2조제4호에 따른 송치를 받은 사건에 관하여 이 항 제1호의 결정을 하거나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

⑦ 검사가 제2조제1호 또는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수사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 기소중지, 참고인증지, 공소보류,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한 때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때에는 사건사무담

당직원은 지체없이 송치사건처리결과통지서 및 결정결과통보서 송부 표에 의하여 경찰청장에게 그 결정결과를 통보한다.

⑧ 대검찰청에서 전산망을 통하여 경찰청장등 송치관서의 최상급기관의 장에게 검사의 결정이나 재판확정결과등에 관한 자료를 전송할 경우에는 제6항 또는 제7항의 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다만, 기소의견으로 송치받은 고소·고발사건에 대하여 혐의없음·공소권없음·죄가 안됨·각하 또는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한 경우에는 예외로 한다.

⑨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에 관하여 재기신청이 있으나 피의자의 계속적인 소재불명, 참고인 소재불명 그 밖의 사유로 재기할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부재기결정서에 따라 부재기결정을 하고, 별지 제120호서식, 별지 제120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20호의3 서식에 따라 신청인에게 결정내용과 이유를 통지한다.

⑩ 특별사법경찰관으로부터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 또는 참고인등 소재발견 보고가 된 사건에 관하여 재기 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수사지휘를 하지 아니하고 검사가 직접 수사하거나 재기불요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21호서식의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서 또는 별지 제122호서식의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서를 작성한 후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분 1부를 기록에 편철한다.

⑪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재판이 확정된 유죄판결에 대하여 사면·복권이 실시된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경찰청장에게 사면

- 복권 사실을 통보한다.

제60조의2(사건관계인에 대한 통지와 전자이미지서명) 사건의 수사·처리 등을 위하여 사건관계인에게 서면으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문서 작성자의 서명 또는 기명날인을 전자이미지서명으로 갈음할 수 있다.

제2절 공소제기

제61조(공소장)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3호서식의 공소장에 의한다. 이 경우 검사가 압수물건에 대한 처분을 하는 때에는 압수물건처분서를 작성하여 기록에 편철하고, 그 부분을 압수담당자에게 인계한다.

② 제1항의 경우에 피의자가 구속된 때에는 구속영장, 구속기간이 연장된 경우에는 구속기간연장결정서, 체포된 경우에는 체포영장, 긴급체포 또는 현행범인체포인 경우에는 긴급체포서·현행범체포서·현행범인인수서,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선임서를 첨부한다.

제62조(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한 때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다만,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를 전산처리방식으로 일괄출력하여 법원의 확인을 받는 경우에는 공소장 및 기록송부부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63조(기소통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가 제기된 때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124호서식의 재감인 기소통지부에

의하여 그 뜻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통지한다.

제64조(구속영장청구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공소제기등 검사의 결정이 있는 때에는 구속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65조(약식명령의 청구) ① 검사가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공소장에 의하며, 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다만, 일건 수명의 피의자중 일부피의자에 대하여 공판을 청구하고, 일부피의자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때에는 약식명령공소장에 사건기록을 편철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② 제61조제1항 후단 및 제62조의 규정은 제1항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③ 검사는 구속중인 피의자에 관하여 제1항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69호서식의 석방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를 석방한다.

제65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약식명령의 청구)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5호서식의 공소장을 전자문서로 작성하여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로 된 사건기록과 함께 법원에 전송한다.

제66조(즉결사건기록의 송부) 검사가 「즉결심판에 관한 절차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기록과 증거물을 관할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6호서식의 즉결사건기록송부서에 의한다. 이 경우

제62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67조(정식재판의 청구)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53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약식명령에 대하여 정식재판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7호서식의 정식재판청구서에 의한다.

제67조의2(전자적 처리사건 출력문서의 송부) ① 검사는 약식전자문서법 제10조에 따라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게 된 전자적 처리사건의 전자문서 및 전자화문서를 법원으로부터 송부받은 경우에는 이를 종이문서로 출력하여 법원에 제출한다. 이 경우 공소장(피고인 수에 해당하는 공소장 부분을 포함한다) 등 소송에 관한 서류는 송부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법원에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경우에 전자적 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법원의 확인을 받아야 한다.

제68조(공소취소)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공소를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8호서식의 공소취소장에 따른다.

제3절 불기소

제69조(불기소결정) ① 검사가 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부수처분과 압수물처분을 기재하고, 불기소 결정서에 피의사실의 요지와 수사의 결과 및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이유를 기재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양식을 사용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의 작성에 있어서는 피의자는 1, 2, 3의 순으로, 죄명은 가·나·다의 순으로 표시하되, 법정 형이 중한 순으로 표시한다.

③ 불기소결정의 주문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기소유예 : 피의사실이 인정되나 「형법」 제51조 각호의 사항을 참작하여 소추를 필요로 하지 아니하는 경우

2. 혐의없음

가. 혐의없음(범죄인정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거나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나. 혐의없음(증거불충분) : 피의사실을 인정할 만한 충분한 증거가 없는 경우

3. 죄가안됨 : 피의사실이 범죄구성요건에 해당하나 법률상 범죄의 성립을 조각하는 사유가 있어 범죄를 구성하지 아니하는 경우

4. 공소권없음 : 확정판결이 있는 경우, 통고처분이 이행된 경우, 「소년법」·「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에 따른 보호처분이 확정된 경우(보호처분이 취소되어 검찰에 송치된 경우를 제외한다), 사면이 있는 경우, 공소의 시효가 완성된 경우, 범죄후 법령의 개폐로 형이 폐지된 경우, 법률의 규정에 의하여 형이 면제된 경우, 피의자에 관하여 재판권이 없는 경우, 동일사건에 관하여 이미 공소가 제기된 경우(공소를 취소한 경우를 포함한다. 다

만, 다른 중요한 증거를 발견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친고죄 및 공무원의 고발이 있어야 논하는 죄의 경우에 고소 또는 고발이 없거나 그 고소 또는 고발이 무효 또는 취소된 때, 반의사불벌죄의 경우 처벌을 희망하지 아니하는 의사표시가 있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철회된 경우, 피의자가 사망하거나 피의자인 법인이 존속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

5. 각하

가.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하여 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한 경우

나. 고소·고발이 「형사소송법」 제224조, 제232조제2항 또는 제235조에 위반한 경우

다. 동일사건에 관하여 검사의 불기소결정이 있는 경우(다만, 새로이 중요한 증거가 발견된 경우에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해자가 그 사유를 소명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라. 「형사소송법」 제223조, 제225조부터 제22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고소권자가 아닌 자가 고소한 경우

마. 고소·고발장 제출 후 고소인 또는 고발인이 출석요구나 자료제출 등 혐의 확인을 위한 수사기관의 요청에 불응하거나 소재불명되는 등 고소·고발사실에 대하여 수사를 개시·진행할 자료가 없는 경우

바. 고발이 진위 여부가 불분명한 언론 보도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

의 게시물, 익명의 제보, 고발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는 제3자로부터의 전문(傳聞)이나 풍문 또는 고발인의 추측만을 근거로 한 경우 등으로서 수사를 개시할만한 구체적인 사유나 정황이 충분하지 아니한 경우

사. 고소·고발 사건(진정 또는 신고를 단서로 수사개시된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사안의 경중 및 경위, 피해회복 및 처벌의사 여부, 고소인·고발인·피해자와 피고소인·피고발인·피의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 여부 등을 고려하여 수사 또는 소추에 관한 공공의 이익이 없거나 극히 적어 수사를 개시·진행할 필요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제69조의2(전자적 처리사건에 대한 불기소결정) 검사가 전자적 처리사건을 불기소결정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결정서를 각각 전자문서로 작성한다. 다만, 간단하거나 정형적인 사건의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를 전자문서로 작성할 수 있다.

제70조(혐의없음 결정과 무고판단) 검사가 고소 또는 고발사건에 관하여 혐의없음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무고혐의의 유·무에 관하여 판단한다. 다만, 「형사소송법」 제234조제2항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고발인이 직무상 고발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71조(기소유예결정시의 부수절차) ① 검사가 기소유예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피의자에게 엄중히 주의를 주고 재범하지 아니할 것을 다짐

하는 서약서를 받아야 한다. 다만, 경미한 사건의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제1항의 경우에 검사는 재범방지 등을 위하여 감호자·연고자 또는 범죄예방자원봉사위원회에 신병인도조치를 하거나 한국법무보호복지공단 등 보호단체에 보호를 알선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소년인 피의자에 관하여 선도조건부기소유예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선도보호에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검사는 피의자가 제2항 및 제3항의 조치를 정당한 이유없이 불응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제기한다. 다만, 제3항의 경우에는 소년보호사건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제72조(불기소결정등의 이유통지와 사실증명)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9조에 따라 고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29호서식, 별지 제129조의2서식 또는 별지 제129호의3서식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고, 공수처법 제17조제4항에 의한 수사처장의 요청에 따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이하 ‘수사처’라 한다.)가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불기소이유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0호서식의 수사처송치사건불기소이유통보서에 따른다.

② 고소인, 고발인 또는 피의자가 불기소결정에 관한 사실증명을 청구한 때에는 검사는 지체없이 별지 제131호서식, 별지 제131호의2서식 또는 별지 제131호의3서식의 사건결정결과증명서를 교부한다.

제4절 기소중지·참고인중지

제73조(기소중지의 결정) 검사가 피의자의 소재불명 또는 제74조에 규정된 사유외의 사유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기소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4조(참고인중지의 결정) 검사가 참고인·고소인·고발인 또는 같은 사건 피의자의 소재불명으로 수사를 종결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해소될 때까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따라 참고인중지의 결정을 할 수 있다.

제75조(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시의 유의사항) ① 검사가 기소중지결정 또는 참고인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에 공소시효 만료일을 명백히 기재한다. 다만, 수인의 피의자중 일부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고 일부에 대하여 기소중지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되는 피의자의 기소일자를 기재한다.

②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고발 및 인지사건등에 대하여 피의자의 소재불명을 사유로 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지명수배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각급 검찰청·지청의 사건과장 또는 사무과장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

다)에게 송부한다.

③ 검사는 기소중지결정사건 및 참고인중지결정사건에 관하여 수시로 그 중지사유의 해소여부를 검토하여 수사를 완결하도록 유의하고,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지명수배자에 대한 지명수배해제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즉시 지명수배해제요구서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책임자에게 송부하여 지명수배사유가 해소되었음을 알려야 한다.

④ 기소중지사건의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기소중지자명부에 의하여 매 분기 1회이상 기소중지자에 대한 소재수사를 한다. 다만, 기소중지자가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⑤ 제4항의 경우 소재수사사무담당직원은 소재수사 일자와 소재수사 결과(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포함한다)를 기소중지자명부에 기재한다.

제76조(기소중지자 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직접 수리한 사건에 대하여 기소중지결정을 하거나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르게 기소중지결정을 한 때에는 기소중지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77조(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등) ① 검사는 송치관서의 의견과 달리 참고인중지결정을 하거나 검찰에서 직접 수사한 고소·고발 및 인지

사건등에 관하여 참고인중지결정을 할 경우에는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를 작성한다. 이 경우 참고인중지결정의 이유를 알 수 있도록 불기소 결정서 사본을 첨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성된 참고인등 소재수사지휘부를 편철하여 관리하고 매 분기 1회이상 참고인등에 대한 소재수사를 행한다. 다만, 참고인등이 국외출국상태에 있거나 주민등록이 말소되어 있는 경우(가족의 주민등록이 등재되어 있는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소재수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다른 사건으로 지명수배중에 있는 경우에는 기록보관 검찰청에 참고인소재불명사실통보서를 송부하고 소재수사를 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소재수사 일자와 소재수사 결과(수사준칙 제55조에 따라 피의자의 주소지 또는 거소지 등을 관할하는 경찰관서의 사법경찰관에게 소재수사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요청일자와 회신일자 및 회신내용을 포함한다)를 참고인소재수사지휘부에 기재한다.

④ 검사는 특별사법경찰관이 참고인중지 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관하여 송치관서의 의견과 다른 결정을 하는 경우 별지 제132호서식의 참고인중지의견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서 3부를 작성하여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2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그중 1부는 보관하고, 다른 1부는 즉시 특별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한다.

제5절 공소보류

제78조(공소보류의 결정) 검사가 「국가보안법」 제2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제기를 보류하는 경우에는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에 따라 공소보류의 결정을 한다.

제79조(공소보류자명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소보류결정이 있는 때에는 공소보류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80조(공소보류자 시찰조회) 검사가 공소보류자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공소보류자의 현황 및 현거주지 거주여부등 동태를 조회에 대한 협력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3호서식의 공소보류자시찰조회요청서에 의한다.

제6절 타관송치, 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성매매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의 송치 및 사법경찰관등 이송·이첩

제81조(송치결정)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 규정에 의하여 관할검찰청 검사 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 또는 「소년법」 제49조제1항,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1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1항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관할법원으로서의 송치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관할검찰청의 검사 또는 관할 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사건의 송치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를 첨부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고, 관할법원으로서의 송치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4호서식의 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성매매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 송치서를 첨부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송치결정에 의하여 사건기록을 송부한 후 1월이 경과하여도 사건을 송치받았다는 통지가 없고 또한 사건의 수리 여부가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도 확인되지 아니하는 때에는 지체없이 그 사유를 확인한다.

④ 사건의 관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는 보완수사요구 등 추가수사가 필요한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추가수사가 완료되면 관할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검사에게 다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할 것을 조건(이하 ‘반송 조건’이라 한다.)으로 사건의 관할 법원에 대응하지 아니한 검찰청 검사에게 제1항에 따른 사건의 송치결정을 할 수 있다. 이 경우 사건의 송치결정을 하는 검찰청 검사는 별지 제2호서식의 사건송치서 및 송치결정서에 반송 조건으로 사건의 송치결정을 한다는 취지를 기재한다.

제81조의2(사법경찰관등 이송·이첩 결정)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18조 또는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제25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이송하거나 이첩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사건이송·이첩결정서에 따른

다.

② 검사가 제1항의 이송 또는 이첩결정을 할 때에는 별지 제135호서식의 사건이송·이첩서를 첨부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해당 기관에 송부한다.

제81조의3(피의자에 대한 이감 또는 이송 지휘) ① 검사는 피의자가 구속되어 있는 사건을 제81조제1항 전단에 따라 관할검찰청의 검사 또는 관할군검찰부 군검사에게 송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의하여 피의자가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교도소의 장에게 이감할 것을 지휘한다.

② 검사는 구속 중에 있는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에게 제8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또는 아동보호사건 송치의 결정을 하는 경우에는 해당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를 구금하고 있는 시설의 장에게 별지 제137호서식의 이송지휘서에 따라 관할법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한다.

제81조의4(국제형사사법공조사건 이행결과 등 송부) ①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법」 제21조제1항,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외국으로 이송하기 위하여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결정을 하는 때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에 따른다. 이 경우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에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 부분과 사건기록 사본을 편철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검사가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이행한 결과를 법무부장관에게 송부하는 때에는 별지 제138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부서를 첨부하여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와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제7절 공소제기 여부 결정을 위한 보완수사요구

제82조(보완수사요구 결정) ① 검사가 제9조의10제1항제1호, 제57조제5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때에는 보완수사요구 결정서 및 별지 제13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결정)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결정)는 사건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분은 보완수사요구 결정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결정) 부분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결정) 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3항본문에 따른 보완수사 이행 결과를 기재한 서면을 접수한 때에는 송부받은 기록과 함께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82조의2(사건기록의 송부 없는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9조의10제1항제2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40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추완)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보완수사요구서(추완)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분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분(추완)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3항단서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8절 불송치 기록의 처리

- 제83조(기록반환)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불송치 기록을 검토하는 때에는 사법경찰관이 송치하지 아니한 것이 위법 또는 부당한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제2호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반환하는 때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이하 ‘이의신청’)의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관

계 서류와 증거물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전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조의3제5항에 따라 접수한 기록에 대하여는 별책으로 편철된 불송치결정서 및 압수물총목록, 기록목록 등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는 것으로 형사소송법 제245조의5 제2호,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제5항에 따른 관계 서류와 증거물 반환에 갈음한다.

제83조의2(재수사요청)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45조의8제1항에 따라 재수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141호서식의 재수사요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재수사요청서는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분은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재수사요청서 부분 등을 송부받은 경우에 재수사요청 기록 송부(목록)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검사가 불송치 기록이 송부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에 재수사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141호서식의 재수사요청서에 수사준칙 제63조제1항 단서 각호의 이유를 기재한다.

④ 제83조제4항은 재수사요청에 따른 관계 서류 및 증거물 반환에 준용한다.

제83조의3(송치요구)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관련

불송치 사건에 대한 사법경찰관의 불송치 결정서, 재수사요청서 및 불송치기록 검토결과서의 사본을 첨부하여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의 재수사결과를 검토하는 때에는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수사준칙 제64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해당 기록 원본 또는 등본(재수사결과 추가된 서류 및 증거물을 포함한다)의 송부를 요청할 수 있다.

③ 검사가 수사준칙 제64조제2항 단서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송치요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를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분은 재수사요청기록 검토결과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치요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④ 검사는 전항의 송치요구를 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재수사요청기록 송치요구 검토결과서를 재수사요청서 사본 및 재수사결과통보서와 함께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제83조의4(불송치 기록 관련 압수물처분지휘) ① 불송치 기록과 동시에 관련 압수물에 대한 처분지휘요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검사는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재수사요청과 함께 반환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면서 압수물처분지휘를 할 수 있다. 수사준칙 제64조제1항제2호에 따른 재수사결과통보서와 압수물처분지휘요청을 동시에 접수하는 경우에도 같다. 다만, 기록반환 전에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형사소송

법」 제245조의7에 따른 이의신청의 접수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관련사건을 송치하는 때에 압수물을 함께 송치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② 검사가 불송치 송부 기록에 대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재수사요청을 하는 때에는 함께 접수된 압수물처분지휘요청에 대하여 재수사결과와 함께 재지휘요청하도록 지휘할 수 있다.

제9절 수사중지기록의 처리

제84조(기록반환) ①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부받은 수사중지 기록을 검토하는 때에는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른 사유가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수사준칙 제51조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기록을 반환하는 때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51조제5항에 따른 소재발견 및 수사재개 사실을 통보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기록을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하여야 한다. 이 경우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83조제4항은 수사중지 기록의 관계 서류 반환에 준용한다.

제84조의2(수사중지기록의 처리등) ① 검사는 수사준칙 제51조제4항 및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3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때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 및 별지 제211호서식의 시정조치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요구서를 기록에 편철하여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시정조치요구를 하는 경우 제143조에 따라 시정사건으로 수리하고, 제143조의3제4항부터 제11항, 제143조의4, 제143조의5의 규정에 따른다. 다만, 검사는 수사준칙 제45조제3항 및 제143조의3제4항에도 불구하고 수사중지 기록을 송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정조치요구를 하여야 한다.

제84조의3(구제신청의 처리) ① 검사가 제84조에 따라 수사중지 기록을 반환하기 전에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의한 구제신청을 접수하고 시정조치요구 여부를 검토하는 때에는 수사중지 기록은 사법경찰관에게 반환한다. 이 경우 검사가 수사중지 기록을 처리하는 때에는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에 따르고,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수사중지기록 검토결과서를 송부받은 경우에 수사중지기록 관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제1항의 구제신청에 따른 시정사건의 수리 및 처리 등에 관하여는 제2편제11장의 규정에 따른다.

제10절 구속취소시등의 절차

제85조(구속취소시의 석방지휘서등)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9조·제65조제3항·제81조의3의 규정에 의한 검사의 석방지휘·이감지휘 또는 이송지휘가 있는 때에는 검사로부터 석방지휘서·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받아 지휘서송부부,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간이) 및 사건송치결정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이감지휘서 또는 이송지휘서를 지체없이 해당기관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4장 재정신청절차

제86조(재정신청 사건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260조 및 수사준칙 제66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 또는 공수처법 제30조의 규정에 의한 재정신청(이하 ‘수사처장의 재정신청’이라 한다)이 있는 때에는 재정신청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87조(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의 처리)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본문에 따라 항고기각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별지 제142호 서식의 재정신청사건 송부서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단서 각 호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또는 수사처장의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43호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 또는 수사처장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20일 이내(수사처장의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4일 이내)에 별지 제142호서식의 재정신청 사건송부서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이 경우 수사처장의 재정신청에 대하여는 별지 제114호서식의 수사처송치사건결정결과통보서를 함께 첨부한다.

③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단서 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고 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이하 "수사관계서류등"이라 한다)이 고등검찰청에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관계서류등을 송부받아 제2항에 따른 처리를 한다.

④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수사처장의 재정신청이 있고, 동시에 항고가 있거나 수사관계 서류등이 고등검찰청에 있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수사관계서류등을 등본한 후 제2항에 따른 처리를 한다.

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동일한 사건에 관한 「형사소송법」

제260조에 따른 재정신청과 수사처장의 재정신청을 함께 처리할 수 있는 경우에는 이를 병합할 수 있다. 이 경우 병합된 재정신청의 처리는 제2항 및 제4항에 따른다.

⑥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전항의 재정신청 중 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인 재정신청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는 수사관계서류등을 첨부하지 아니하고 제2항에 따른 처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동일한 사건이 고등법원에서 심리 중에 있어 수사관계서류등을 첨부하지 아니한다는 취지를 별지 제142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송부서 비고란에 부기한다.

제87조의2(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재정신청)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6조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이를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 소속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44호서식의 재정신청 접수 통보서에 의하여 사법경찰관에게 통보한다.

②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수사준칙 제66조제2항에 따라 송치된 재정신청 대상 사건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43호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에게 통지한다.

2.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재정신청 대상 사건은 제57조제2호 또는 제3호에 따라 결정하고, 20일 이내에 별지 제142호

서식의 재정신청사건송부서에 재정신청서·의견서·수사관계서류 및 증거물을 첨부하여 관할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제1호에 따른 기각결정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하고, 이때 검사는 제2항제2호에 따라 결정한 사건을 재기하여 수사준칙 제66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이송한다.

④ 제2항제2호는 검사가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항 단서 제3호에 따라 재정신청이 접수된 경우에 준용한다.

제88조(고등검찰청의 장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87조제1항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별지 제14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 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및 수사관계서류 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으로 송부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제87조제2항제2호 및 제87조의2제2항제2호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재정신청이 이유 있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것인지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2. 제1호에 따라 직접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 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고, 불기소결정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송부하며, 별지 제143호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수사처장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통지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 등으로 불기소결정청의 관할

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 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81조에 따른다.

3. 제1호에 따라 직접 경정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공소제기를 명하는 결정을 하고, 별지 제146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송치서에 사건기록과 결정서의 등본을 첨부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며,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즉시 공소를 제기하고, 별지 제143호서식의 재정신청통지서로 관할 고등법원과 재정신청인(수사처장을 포함한다)에게 이를 통지한다.

4. 신청이 이유 없는 것으로 인정하는 때에는 별지 제145호서식의 재정신청사건 기록송부서에 불기소결정결과 송달보고서, 의견서, 수사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관할 고등법원에 송부한다.

③ 제87조제4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은 고등검찰청의 장이 재정신청을 처리하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5장 항고·재항고

제89조(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사건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청법」 제10조의 규정에 의한 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처리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소정의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때에는 항고·재항고 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제4조제4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90조(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의 송부등) ①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불기소결정(기소중지·참고인중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장에서 같다)에 대하여 항고가 있는 때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수사에 의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될 경우에는 불기소사건 재기서에 의하여 재기수사하고 그 결과를 별지 제147호서식의 항고·재항고 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보고한다. 이 경우, 재기수사한 사건을 다시 불기소결정하려 할 때에는 미리 별지 제148호서식의 항고사건 불기소결정 승인 요청서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받는다.

2.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별지 제149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장, 불기소결정 결과 송달보고서, 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다만, 사건기록을 송부할 수 없는 사유가 있는 때에는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송부서의 비고란에 그 사유를 기재한다.

② 고등검찰청의 장은 재항고가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재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수사를 통하여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 공

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별지 제150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사건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그 결과를 항고·재항고사건 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검찰총장에게 보고한다.

2. 재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수리한 날로부터 20일 이내에 검찰총장에게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송부서에 항고기각처분결과 송달보고서, 재항고장, 재항고에 대한 의견서 및 사건기록등을 첨부하여 송부한다.

제91조(항고·재항고 사건의 처리) ① 고등검찰청의 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항고사건을 처리한다.

1. 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수사를 통하여 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직접 경정하게 할 것인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2. 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직접 경정을 하는 경우에는 소속검사로 하여금 사건을 재기하여 공소를 제기하게 하거나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게 할 수 있다.

3.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불기소결정청에 공소장 등 공소제기에 필요한 서류와 사건기록을 송부한다. 다만, 피의자의 주거이전등으로 불기소결정청의 관할권이 없게 되거나 다른 사건과 병합처리할 필요가 있는 경우에는 제81조의 규정에 의한다.

4.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주문 또는 이유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제69조부터 제7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처리하고 관련서류 및 사건기록을 불기소결정청에 송부한다.

5. 제1호에 따라 직접 경정을 하지 아니하고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항고사건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6. 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항고사건결정서에 따라 결정으로 항고를 기각한다.

7.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정신청의 대상인 경우에는 그 기각결정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50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8. 제6호에 따라 항고를 기각한 사건이 재항고의 대상인 때에는 재항고기간이 도과된 후 지체 없이 별지 제150호서식의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검찰총장은 다음의 구분에 따라 재항고사건을 처리한다. 다만, 소정의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때에는 항소사건부, 상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1. 재항고가 이유있는 것으로 인정되거나 재수사를 통하여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 공소제기명령 또는 주문변경명령등의 결정을 한 때에는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2. 재항고가 이유없는 것으로 인정될 경우에는 결정으로 재항고를 기각하고 불기소결정 항고·재항고 기록반환서에 결정서의 등본과 사건기록을 첨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을 거쳐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한다.

③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이 새로운 증거가 발견되었음을 소명한 경우를 제외한다)에는 항고(재항고) 각하 결정서로 각하한다. 이 경우 기록 등의 송부에 관하여는 제1항제7호, 제8호 및 제2항제2호의 규정을 각각 준용한다.

1. 항고권자 아닌 사람이 항고하거나 재항고권자 아닌 사람이 재항고한 경우

2. 고소·고발, 항고 또는 재항고가 취소된 때. 다만, 제92조제1항의 경우를 제외한다.

3. 재기수사명령후 불기소승인건의를 받아 처리한 사건에 대하여 재기수사명령의 결정을 한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에게 다시 항고 또는 재항고한 경우

3의2. 항고에 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재기수사한 후 고

등검찰청의 승인을 받아 불기소결정한 사건에 대하여 다시 항고한 경우

4. 제69조제3항제5호에 규정된 사유가 있는 때

④ 고등검찰청의 장 또는 검찰총장은 항고 또는 재항고를 기각 또는 각하한 때에는 7일 이내에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에게 별지 제151호서식의 항고·재항고사건처분통지서에 따라 그 결과를 통지한다.

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은 제1항제5호 또는 제2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의하여 항고 또는 재항고사건을 재기하여 처리한 때에는 항고·재항고사건처리결과보고서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그 처리결과를 보고한다.

제92조(항고·재항고사건 처리시의 유의사항) ① 항고·재항고사건을 수리하거나 기록을 송부받은 검찰청의 장은 항고·재항고가 취소된 경우에도 재기수사, 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등의 명령을 하여야 할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제90조 및 제91조의 예에 의하여 처리한다. 다만, 항고사건을 수리한 지방검찰청이나 지청 또는 재항고사건을 수리한 고등검찰청이 기록을 상급청으로 송부하지 아니하고 보유하고 있는 동안 항고·재항고의 취소장을 접수한 경우에는 항고·재항고가 이유 없다고 인정되는 때에는 항고·재항고 기록을 상급청에 송부하는 대신 항고·재항고 사건을 항고·재항고취소로 종결한다.

② 재기수사 등의 명령이 있는 사건에 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을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별지

제152호서식의 재기수사명령사건 불기소결정·이송 승인요청서에 따라 그 명령청의 장의 승인을 얻고, 항고사건의 경우 이를 이송받은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서 다시 불기소결정을 하거나 이송하고자 하는 때에는 관할 고등검찰청의 장의 승인을 얻으며, 재이송을 승인한 고등검찰청의 장은 이송받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을 관할하는 고등검찰청에 별지 제153호서식의 재기수사등명령사건 이송통보서에 따라 그 사실을 통보한다. 다만,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의 무고혐의에 대한 판단이 다시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재기수사명령을 한 사건에 관하여 항고인 또는 재항고인을 무고죄로 인정한 경우 피(재)항고인의 불기소결정에 대하여는 승인을 얻지 아니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기소중지·참고인중지결정을 한 사건을 재기한 경우에는 제2항 및 제91조제5항에 따라 처리한다.

④ 진정서에 의하여 입건하였다가 불기소결정한 사건의 경우 그 진정서나 진정인 진술조서의 기재내용에 피의자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있는 때에는 진정인을 적법한 고소인으로 보아 항고·재항고권을 인정한다.

⑤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이 직접 불기소결정을 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로 하여금 항고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게 하거나, 재기수사·공소제기 또는 주문변경 명령된 사건을 처리하게 하여서는 아니된다.

⑥ 고등검찰청의 장은 항고사건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60조제2

항단서제2호 또는 제3호의 사유에 따른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54호서식의 항고사건기록송부서에 수사관계서류등을 첨부하여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하고, 항고사건에 대하여는 수사관계서류의 등본을 작성하여 제91조제1항·제3항 및 제4항의 예에 따라 처리한다. 다만, 항고사건 중 극히 일부 범죄사실에 대하여 재정신청이 있는 경우에는 재정신청절차에 필요한 범위 내의 수사관계서류의 등본을 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의 장에게 송부할 수 있다.

⑦ 동일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처장의 재정신청은 항고 사건의 처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다만, 수사처장의 재정신청으로 수사관계 서류등이 고등법원에 송부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형사소송법」 제262조제2항의 결정이 확정된 이후에 항고 사건을 처리한다.

제6장 공판절차

제1절 총칙

제93조(공판카드의 작성) ①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경우와 약식명령을 청구한 사건중 정식재판의 청구가 있는 경우 및 법원이 공판절차에 의하여 심판하기로 결정한 경우에는 공판카드를 작성한다.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공판의 경과를 공판카드에 기재한다.

제94조(공판사건기록관리부의 작성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공소를 제기하여 공판을 청구한 때에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사건기록을 법원에 증거로 제출한 때에는 공판사건기록관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매건마다 법원의 확인을 받는다.

제2절 피고인등의 구속

제95조(구속기간 갱신결정)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에 관한 구속기간갱신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검사의 확인을 받은 후 접수일자 순으로 편철하여 보관한다.

제96조(구인 및 구속의 집행) ① 검사가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증인등에 대한 구속영장집행의 촉탁을 받은 때에는 구속영장집행지휘서에 구속영장을 첨부하여 피고인 또는 증인등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그 집행을 지휘한다. 법원이 구속영장을 발부한 피고인의 지명수배를 의뢰한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② 제1항의 경우 피고인 또는 증인등의 주거지가 다른 검찰청의 관할에 속하는 때에는 제24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③ 제1항 또는 제2항의 경우 검사는 구속영장의 집행이 불가능한 경우에는 별지 제52호서식의 영장 반환서에 구속영장집행지휘서, 구속영장 및 수사보고서를 첨부하여 구속영장을 발부한 법원에 이를 반환한다. 이 경우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영장 반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52호의2서식의 영장 반환서에 따른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구속영장의 집행 촉탁을 받은 때에는 구속영장집행원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97조(구속취소)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93조의 규정에 의한 구속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5호서식의 구속취소청구서에 따른다.

제98조(보석청구등에 대한 의견표명)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97조제1항·제2항 또는 동법 제101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 의견의 표명을 받아 회송한다. 「형사소송법」 제97조제1항의 경우에는 보석청구사건인원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표명을 하는 경우에는 그 의견이 법원의 결정에 실질적인 심리자료가 될 수 있도록 구체적으로 이유를 명시한다.

제99조(보석허가 결정시의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허가결정등본, 보석조건변경통지, 보석조건이행유예통지 등을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이 경우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의 소정사유가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하며, 보석자기록표와 함께 관련서류를 관리한다.

② 제1항의 각란의 소정사유 중 「형사소송법」 제98조 각호의 보석

조건 이행과 관련된 사유는 「형사소송법」 제98조제1호의 출석서약서, 제2호의 납입약정서, 제5호의 출석보증서, 제7호의 공탁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또는 제8호의 보증금 납입 또는 담보제공 증명서류 등 보석조건 이행관련 증명서류가 관할 검찰청에 제출된 때에 이행된 것으로 본다.

③ 법원의 보석허가결정에 따라 보석보증납입허가를 받은 사람으로부터 보석보증금이 납입되거나 보증서가 제출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으로부터 보관금보관보고서 또는 보증서보관보고서 및 보관표를 인계받아 검사의 확인인을 받은 후 이를 보관한다.

제100조(피고인의 석방) ① 검사가 법원의 구속취소, 구속의 집행정지 또는 보석을 허가하는 결정에 의하여 피고인을 석방하는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별지 제156호서식의 피고인석방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제100조의2(보석허가 피고인에 대한 감독)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석허가 결정으로 석방된 피고인이 소환을 받고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하거나 법원의 요청이 있는 등 필요한 경우, 검사의 지휘를 받아 별지 제68호서식의 시찰조회요청서를 작성하여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하여 시찰조회 협력을 요청할 수 있다.

제101조(구속집행정지등 결정시의 조치) 제48조의 규정은 법원에서

「형사소송법」 제101조제2항에 따른 구속집행정지결정이 있는 경우에 준용한다.

제102조(보석등의 취소청구)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02조제1항 또는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석 또는 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57호서식의 보석·구속집행정지취소청구서에 따른다.

제103조(보석의 취소결정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

취소 또는 구속집행정지 취소결정의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보석자 기록표와 보석자명부 또는 구속집행정지자 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수감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의 주거지를 관할하는 경찰서의 장에게 송부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수감지휘서를 송부받은 경찰서장으로부터 수감보고가 있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즉시 검사에게 보고함과 동시에 재수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하고, 수감통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법원에 통지한다. 구속집행정지 또는 보석이 취소된 피고인을 소재불명으로 지명수배하는 경우에는 제75조제2항 및 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04조(보석보증금의 몰취) ① 「형사소송법」 제103조에 따른 검사의

보석보증금몰취청구는 별지 제158호서식의 보석보증금몰취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보석보증금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에 검사의 몰취명령과 날인을 받아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다만, 보석보증보험증권을 첨부한 보증서의 제출을 허가한 사건에 대하여 보석보증보험금몰취결정등본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즉시 검사에게 보고하고 별지 제159호서식의 보석보증보험금지급청구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보증보험주식회사에 송부한다.

③ 제2항의 규정은 사건사무담당직원이 보증보험주식회사로부터 보석보증보험금을 송부받은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05조(보석보증금의 환부)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석보증금의 환부청구가 있는 때에는 환부사유를 확인하여 보관표의 명령란에 사유를 기재하고 검사의 환부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세입세출외현금출납공무원에게 인계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104조의 규정에 의하여 보석보증보험증권의 환부사유가 발생하여도 30일이내에 환부청구가 없는 때에는 보관표의 명령란에 검사의 폐기명령과 날인을 받아 보석자기록표와 보석자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 후 보관표를 유가증권취급공무원에게 인계한다.

제3절 관할지정의 신청등

제106조(관련사건의 병합신청)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6조의 규정에 의하여 토지관할의 병합심리신청을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0호서식의 관련사건 병합신청·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병합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련사건 병합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관련사건의 병합심리결정을 신청한다.

제107조(관할경합시의 조치)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3조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함이 상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1호서식의 심판신청·요청서에 따라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그 심판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요청을 받은 검사는 심판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뒤에 공소를 받은 법원으로 하여금 심판하게 하는 결정을 신청한다.

제108조(관할지정 신청)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지정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2호서식의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따라 관계있는 제1심 법원에 공통되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지정을 신청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신청을 한 검사는 별지 제163호서식의 관할지정·이전신청통지서에 따라 당해사건이 계속중인 법원에 그 뜻을 통지한다.

제109조(관할이전의 신청)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15조의 규정에 의한 관할이전신청을 하여야 하는 경우에는 직근 상급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 관할이전의 신청을 요청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요청을 받은 검사는 관할지정(이전)신청·요청서에 의하여 대응하는 법원에 관할이전신청을 한다. 이 경우에는 제108조제3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10조(병합,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이송결정시의 조치)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사건의 병합 또는 국민참여재판절차 회부·이송결정의 등본이나 그 통지를 받은 때에는 즉시 담당검사에게 이를 통보하고 소정의 사항을 전산입력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사건의 병합 또는 이송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외의 법원에 계속하게 된 때에는 별지 제164호서식의 병합·이송사건관련서류송부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병합

· 이송결정문, 공소장, 공판카드등 공소유지에 필요한 모든 관련서류 및 증거물등을 첨부하여 새로이 사건이 계속하게 된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한다.

③ 제2항의 경우 피고인이 구속중인 때에는 제81조의3제1항의 규정을 준용한다.

④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송부를 받은 검찰청의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즉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접수된 일자를 확인하여 담당검사에게 보고하고, 접수된 일자를 수리일자로 하며, 검사결정은 "법원송부"라고 전산입력한다.

제111조(기피등의 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8조제1항 또는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기피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5호서식의 기피등신청서에 따른다.

제112조(특별대리인의 선임청구)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8조제1항의 특별대리인의 선임을 법원에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6호서식의 특별대리인선임청구서에 따른다.

제3절의2 증거개시 및 공판준비절차

제112조의2(열람·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신청 등)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검사에게 공소제기된 사건에 관한 서류 또는 물건(이하 "서류등"이라 한다)의 목록과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에 규정된 서류등의 열람·등사 및 서면의 교부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7호서식의 열람·등사, 서면교부 신청서에 따른다.

②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서류등에 대한 열람·등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7호의2서식의 열람·등사 신청서에 따른다. 이 경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신청서상에 신청 대상 서류등의 표목(表目)이나 내용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함과 아울러 제3호의 서류등은 어떤 증거의 증명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제4호의 서류등은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어떤 주장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를 각각 기재한다.

③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 단서에 따라 열람만을 신청할 수 있으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피고인이 제1항 또는 제2항의 신청서를 제출한 때에는 그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

제112조의3(열람·등사 또는 서면교부의 제한)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국가안보,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인멸의 염려, 관련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는 구체적인 사유가 있거나 다음 각 호와 같이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지 아니할 상당한 이유가 있는 때에는 서류등의 목록을 제외한 나머지 서류등에 대하여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할 수 있으며, 이 경우 지체 없이 별지 제167호의3서식의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신청인에게 통지한다.

1.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 경우
2.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하거나 목적 외 사용이 금지된 정보·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인 경우
4. 열람·등사 대상 서류 등이 없거나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
5.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에 따라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이 예상된다는 이유로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기 위하여는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에 관련 사건을 표시함과 아울러 공범관계에 있는 사람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우려 등 수사에 장애가 예상되는 사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한다.

③ 검사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경우에는 열람·등사 또는 서면 교부의 시기 및 방법을 지정하거나 조건·의무를 부과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서를 작성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신청인에게 교부함과 아울러, 그 부분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한다.

제112조의4(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의 범위)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6항에 따른 도면·사진·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컴퓨터용 디스크 등 특수매체기록에 대한 등사는 사건관계인 및 조사자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이나 생활의 평온 등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없는 범위 내에서만 할 수 있다.

제112조의5(의견서 제출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제3항에 따른 의견요청이 있거나 의견요청서류가 송부되어 온 때에는 지체 없이 열람·등사의 거부 또는 범위 제한 결정을 한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는 제1항의 의견요청에 대하여 지체 없이 그에 대한 의견을 서면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제시하고, 그 의견서 부분 2부를 작성하여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그 중 1부는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다른 1부는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한다.

③ 검사는 법원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4제2항에 따라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명한 때에는 이를 지체 없이 이행하고, 사건사무담당직원으로 하여금 법원의 명령서 사본을 공판카드에 첨부하고 그 원본을 최초 신청서류와 함께 보존하게 한다.

제112조의6(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열람·등사 신청) 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공판준비기일 또는 공판기일에서 검사에게 구두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에 따른 열람·등사 신청을 한 경우 검사는 해당 기일 중에 허가 여부를 결정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

는 경우에는 해당 기일 종료 후 그 허가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② 검사는 제1항 경우 해당 기일 종료 후 지체 없이 사건사무담당직원
으로 하여금 피고인 또는 변호인으로부터 제112조의2에 규정된 신청
서를 제출받도록 하며, 제1항 단서의 경우에는 그 기일이 종료한 때에
열람·등사의 신청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그 때부터 48시간 이내에 허
가여부를 결정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경우 제112조의3 및 제112조의4를 준용한다.

제112조의7(공판준비를 위한 서면의 제출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
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6제2항에 따른 서면제출명령 또
는 같은 조 제4항에 따른 설명요구가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
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재판장의 서면제출 명령이 있는 때에는 공
소사실과 관련된 법률상·사실상의 주장요지 및 입증취지 등을 서면
으로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그 부분을 공판카드에 첨부한다.

③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제2항의 서면에 갈음하여 입증취지를 기
재한 증거목록과 수사검사가 작성한 증거설명서 등을 법원에 제출할
수 있다.

④ 검사가 제2항 또는 제3항에 따른 서면을 법원에 제출할 때에는 피
고인의 수에 1을 더한 수의 부분을 함께 제출한다. 다만, 둘 이상의 피
고인에 대하여 같은 변호인이 선임된 경우에는 변호인의 수에 1을 더
한 수의 부분만을 제출할 수 있다.

제112조의8(공판준비기일의 신청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 부터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제1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지정에 관한 의견요청이 있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68호서식의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서에 따른다.

제112조의9(공판준비기일 지정시의 조치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8제3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공판준비기일을 통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이를 그 사건의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에게 보고한다.

② 제1항의 경우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는 필요한 경우 그 사건의 수사를 담당한 검사 또는 수사담당직원에게 공판준비기일 출석 또는 관련 업무의 지원을 요청할 수 있다.

제112조의10(공판준비기일 결과의 확인 및 이의 등) ①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을 종료하는 단계에서 법원이 쟁점 및 증거에 관한 정리 결과를 고지하면 그 내용을 검토하여 이의가 있는 때에는 즉시 구두로 이의를 제기하고 그 결과를 확인한다.

② 검사는 공판준비기일조서의 기재 내용에 이의가 있는 때에는 공판준비기일의 재개신청을 하거나 그 이후의 공판기일에서 이의신청을 한다.

제112조의11(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의 열람·등사의 요구 등) ① 검사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제1항에 따라 서류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요구하는 경우 구두 또는 서면으로 할 수 있다.

② 검사는 법원에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제3항에 따른 신청을 할 경우 별지 제169호서식의 피고인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등사·서면교부허용 신청서에 따른다.

제112조의12(열람·등사된 서류 등의 남용금지 표시 등) 사건사무담당 직원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등사한 서류등을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교부하기 전에 같은 법 제266조의16에 따라 이를 해당 사건 또는 관련 소송의 준비가 아닌 다른 목적으로 남용하여서는 아니 된다는 취지의 주의 또는 경고 문구를 표시하거나 천공을 하는 등 남용금지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4절 공판기일

제113조(유의사항) 공판에 관여하는 검사 및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공판준비기일 통지서, 공판기일통지서, 배심원 선정기일 통지서, 공판사건 기록관리부 등으로 법원에 계속된 사건의 공판준비·배심원선정·공판기일을 항시 파악한다.

제113조의2(의견서의 공판카드 편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2제2항에 따라 법원으로부터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의

견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공판카드에 이를 편철한다.

제114조(공판기일 변경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70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공판기일의 변경을 서면으로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0호서식의 공판기일변경신청서에 따른다.

제114조의2(피고인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76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171호서식의 피고인과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서에 따른다.

제5절 증거조사등

제115조(증거신청)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서류나 물건을 증거로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증거신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4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07호서식의 증인등신문청구·신청서에 따른다. 「형사소송법」 제164조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법원에 증인에 대하여 필요한 사항의 신문을 청구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③ 검사가 제2항에 따른 증인·감정인·통역인 또는 번역인의 신문 신청 또는 청구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3호서식에 따른다.

제115조의2(공판완결 지연 목적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4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공판의 완결을 지연하는 증거신청에 대하여 이의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74호서식의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115조의3(피해자의 신뢰관계자 동석 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63조의2제1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에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75호서식의 피해자와 신뢰관계 있는 사람의 동석신청서에 따른다.

제115조의4(증인신문 준비) 검사는 증인신문을 신청한 경우 검사가 신청한 증인 및 그 밖의 관계자를 상대로 사실을 확인하는 등 적절한 신문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준비를 할 수 있다.

제115조의5(영상녹화물의 증거신청 등) ① 영상녹화물의 증거 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172호서식의 증거신청서로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12조제4항에 따라 영상녹화물에 대한 조사 신청을 하는 경우 구두 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에 따른다.

③ 기억환기를 위한 영상녹화물의 조사 신청은 구두 또는 별지 제176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로 할 수 있다.

제115조의6(공소유지를 위한 보완수사요구) ① 검사는 제9조의10제1항제3호에 따른 보완수사요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177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공판)에 따른다. 이 경우 보완수사요구서(공판)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분은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1항에 따라 보완수사요구서 부분(공판)을 송부받은 경우에는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60조제3항단서에 따른 보완수사요구 이행 결과가 기재된 서면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이행기한을 정하여 보완수사요구를 하였음에도 사법경찰관이 이행기한 내에 보완수사요구 이행결과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는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116조(증인신변안전조치) ① 검사가 「특정강력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경찰서장에게 증인신변안전조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8호서식의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서에 따른다. 다만, 긴급을 요하는 때에는 구두 기타 방법으로 요청할 수 있고 사후에 지체없이 그 요청서를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이 있거나 경찰조치결과를 통보받은 때에는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117조(공무소등에 대한 조회등의 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7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공무소등에 대한 조회등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79호서식의 조회신청서에 따른다.

제118조(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6조제1

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0호서식의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119조(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0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1호서식의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120조(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를 진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2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에 따른다.

제121조(공판조서 기재에 대한 변경 청구 등)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서면으로 법원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변경을 청구하거나 이의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3호서식의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이의제기서에 따른다.

제122조(압수·수색영장) ① 「형사소송법」 제113조 또는 제115조제1항 본문의 규정에 의하여 검사가 압수·수색영장의 집행을 지휘하는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압수·수색영장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수색영장에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이를 집행할 사람에게 교부한다.

② 제18조·제24조·제52조 및 제53조의 규정은 제1항의 압수·수색

영장의 집행지휘 또는 집행의 촉탁에 이를 준용한다.

제123조(공소장의 변경허가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298조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 공소장 변경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4호서식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따른다.

제124조(변론분리등의 신청)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00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변론의 분리 또는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호의 서식에 의한다.

1. 법원에 공소제기함과 동시에 이미 계속중인 사건과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서식

2.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변론의 병합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의2서식

3.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5호의3서식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05조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변론의 재개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6호서식의 변론재개신청서에 따른다.

제125조(가납판결의 청구)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3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면으로 법원에 벌금등의 가납을 명하는 판결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87호서식의 가납판결청구서에 따른다.

제6절 재판

제126조(구속영장 실효에 의한 석방) ① 검사는 「형사소송법」 제331조의 규정에 의하여 구속영장이 실효된 때에는 판결이 선고된 날에 지체 없이 피고인을 석방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제1항의 재판결과통지를 송부받은 때에는 당일에 구속감독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석방지휘서를 작성하여 검사의 서명·날인을 받아 피고인이 재소하고 있는 구치소 또는 교도소의 장에게 송부한다.

제127조(소년보호사건·가정보호사건·성매매보호사건·아동보호사건 송치결정시의 조치) 제81조의3의 규정은 「소년법」 제50조,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12조, 「성매매알선 등 행위의 처벌에 관한 법률」 제12조제2항 또는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9조에 따라 구속 중인 소년, 가정폭력행위자, 성매매를 한 자 또는 아동학대행위자의 피고사건을 관할 가정법원 또는 지방법원에 송치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있는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28조(공판정에서의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 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56조의2에 따라 법원에 속기·녹음 및 영상녹화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88호서식의 속기·녹음·영상녹화신청서에 따른다.

제7절 국민참여재판

제128조의2(국민참여재판 통지서 접수 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국민참여재판을 원하는지 여부에 관한 서면의 송부, 그 의사를 확인하기 위한 심문기일의 통지,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의 송부, 선정기일의 통지, 배제결정, 통상절차 회부결정, 배심원·예비배심원 해임·사임의 통지, 평결, 선고 등이 있는 때에는 국민참여재판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며, 지체 없이 담당검사에게 해당 통지서·명부·질문표 등을 제출하고, 그 취지를 통지한다.

② 공판사무담당직원은 배심원후보자 명부와 질문표를 배심원후보자 명부 및 질문표 철에 편철하고, 그 사본을 공판카드에 편철한다.

제128조의3(법원에 대한 의견 제출)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법원으로부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검사의 의견요청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검사에게 보고하여 그 의견을 받아 회송한다.

1.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배제결정
2.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통상절차 회부
3.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2항에 따른 배심원 해임
4.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3조제3항에 따른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사임

제128조의4(통상절차 회부 신청) 검사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11조제1항에 따라 통상절차 회부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89호서식의 통상절차회부신청서에 따른다.

제128조의5(배심원 등 해임신청 등) 검사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32조제1항에 따라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에 대한 해임신청을 할 때에는 별지 제190호서식의 배심원등 해임신청서에 따른다.

제128조의6(속기록·녹음테이프 등의 사본 청구) 검사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0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속기록·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91호서식의 속기록·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서에 따른다.

제128조의7(법률적 사항에 대한 설명 요청) 검사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46조제1항에 따른 재판장의 배심원설명에 포함할 사항을 요청할 경우에는 별지 제192호서식의 배심원 설명요청서에 따른다.

제128조의8(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 요청) 검사가 「국민의 형사재판 참여에 관한 법률」 제53조제2항에 따라 법원에 배심원 또는 예비배심원의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요청할 경우에는 구두 또는 별지 제193호서식의 배심원 등에 대한 신변보호조치 요청서에 따른다.

제7장 상소

제129조(상소의 포기 또는 취하)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49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를 포기 또는 취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4호서식의 상소권포기·취하서에 따른다.

제130조(상소권회복의 청구)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45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5호서식의 상소권회복청구서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상소권회복의 청구를 하거나 검사외의 사람로부터 상소권회복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상소권회복청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 소정의 사항이 발생한 때마다 이를 기재한다. 약식명령에 대한 정식재판청구권의 회복 청구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31조(상소절차)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57조 또는 제3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를 제기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6호서식의 항소·상고장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57조 또는 동법 제371조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를 제기하거나 「형사소송법」 제356조의 규정에 의한 상소장제출통지를 받은 때 또는 동법 제361조의2제1항 또는 동법 제37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상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때에는 항소사건부·상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소정의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때에는 항소사건부 또는 상고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제132조(항소·상고사건접수보고서의 송부등) ① 검사가 상소를 제기하거나 원심법원으로부터 상소장제출통지를 받은 때에는 7일 이내에 별지 제197호서식에 의한 항소사건접수보고서 또는 별지 제197호의2서식의 상고사건접수보고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에 송부한다.

②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제3항에 따라 구속중인 피고인을 항소법원 소재지의 구치소 또는 교도소에 이감하는 때에는 별지 제136호서식의 이감지휘서에 따른다.

제133조(공판카드의 기재등) ① 검사 또는 피고인등이 상소를 제기하거나 포기 또는 취하한 때에는 검사는 공판카드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건이 상소심에 계속된 때에는 제1항의 공판카드를 상소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한다.

제134조(상소이유서)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61조의3제1항 또는 동법 제37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상소이유서를 제출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8호서식의 항소·상고이유서에 따른다.

제135조(비약적상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372조의 규정에 의하여 비약적 상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199호서식의 비약적상고장에 따른다. 이 경우에는 제131조 내지 제134조의 규정을 준용하되, 동조중 "상소법원"은 "대법원"으로, "상소이유서"는 "비약적상고이유서"로 본다.

제136조(항고등) ① 검사가 항고·즉시항고 또는 재항고를 제기하는 경

우에는 별지 제200호서식의 항고·재항고장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항고·즉시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때에는 형사신청·항고·재항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137조(항고기록의 송부등) ①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가 있는 사건의 소송기록을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1호서식의 형사항고·재항고사건기록송부서에 따른다.

② 항고 또는 재항고 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검사가 항고 또는 재항고기록을 반환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2호서식의 형사항고·재항고사건기록반환서에 의한다.

제138조(준항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16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판장 또는 수명법관이 고지한 재판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3호서식의 재판의 취소변경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136조제2항 및 제137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8장 재심

제139조(재심의 청구)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20조 또는 제421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심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4호서식의 재심청구서에 따른다.

제140조(재심청구사건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재심의 청구를 한 때 또는 「형사소송법」 제424조제2호부터 제4호까지에 규정

된 사람으로부터 재심의 청구가 있었다는 통지를 받은 때에는 재심청구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각란 소정의 사항이 발생할 때마다 이를 기재한다.

제9장 진정·탄원·투서

제141조(진정 등 수리) ① 검사는 범죄에 관한 신문 등 출판물의 기사, 익명의 신고 또는 풍설, 첩보의 입수 등으로 범죄의 존재 여부를 확인할 필요가 있는 때에는 내사사건으로 수리한다.

② 검사는 진정·탄원 또는 투서 등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하 ‘진정인등’이라고 한다)이 제출하는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사항에 관한 서류를 접수한 때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의 단서가 기재되어 있더라도 익명, 가명, 허무인 명의의 진정서·탄원서 등 수사를 개시하기 어려운 사항
2. 검찰청소속 공무원 또는 사법경찰관리에 관한 사항
3.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이 수사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4. 편파적인 조사 등에 대한 시정을 희망하는 사항
5. 병합수사나 이송을 요구하는 사항
6.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에 관한 사항
7. 전과사실의 정정을 희망하는 사항
8.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7호의 사항과 유사한 사항

③ 검사는 고소 또는 고발사건으로 제출된 서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진정사건으로 수리할 수 있다.

1. 고소인 또는 고발인의 진술이나 고소장 또는 고발장에 의한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2. 피고소인 또는 피고발인에 대한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3. 고소 또는 고발이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4.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이중으로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제141조의2(내사·진정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수리한다.

1. 내사사건: 시스템에 피내사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입력하고, 내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내사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내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2. 진정사건: 시스템에 진정인·피진정인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진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진정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진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내사 및 진정사건의 번호는 제4조제4항에 준하여 "년 내사(진정) 제 호"로 기재한다.

④ 제2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3조제3항의 규정은 내사 및 진정사건의 수리절차에 이를 준용한다.

제141조의3(내사·진정사건의 처리등) ①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내사사건을 처리한다.

1. 입건

이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기재한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69조제3항제2호 내지 제4호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내사중지

피내사자 또는 참고인등의 소재불명으로 내사불능인 경우

5. 이송

동일내용의 내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내사중이거나 「형사소송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조사사건 등록

이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조사사건번호를 기재한다.

7. 시정사건 등록

이 경우에는 내사사건부의 비고란에 시정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② 검사는 다음 구분에 의하여 진정사건을 처리한다.

1. 공람종결

가. 3회 이상 반복 진정하여 2회 이상 그 처리결과를 통지한 진정과 같은 내용인 경우

나. 무기명 또는 가명으로 한 경우

다. 본인의 진의에 의한 것인지 여부가 확인되지 아니한 경우

라. 내용이 불분명하거나 구체적 사실이 적시되어 있지 아니한 경우

마. 단순한 풍문이나 인신공격적인 내용인 경우

바. 완결된 사건 또는 재판에 불복하는 내용인 경우

사. 특정사건과 관련없는 청원 또는 정책건의를 내용으로 하는 경우

아. 민사소송 또는 행정소송에 관한 사항인 경우

자. 동일한 사실에 관하여 고소 또는 고발이 있는 경우

차.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없거나 처벌을 희망하는 의사표시가 취소된 경우

2. 전과정정

전과사실을 정정하는 경우

3. 법원이첩

법원에 재판이 계속중인 사건에 대한 내용인 경우

4. 기록편철

검사가 조사·검토 중인 사건(검사의 지휘에 따라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이 조사·검토 중인 사건을 포함한다)에 대한 내용인 경우.
이 경우에는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5. 다른 기관 이송·이첩

수사준칙 제18조에 해당하는 경우 및 검사 이외의 다른 수사기관이 조사 중이거나 법원·검찰청 또는 군검찰부 외의 다른 기관의 소관사항에 관한 것인 경우에는 해당 기관에 이송하거나 이첩한다.

6. 내사사건에 준하여 처리

제1항 각호의 1에 준하는 경우(이 경우에는 제1항의 규정에 의한 내사사건처리의 예에 의한다.)

7. 그 밖의 진정종결

제1호 내지 제6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③ 검사는 내사사건은 내사사건기록에, 진정사건은 진정사건기록에 내사 또는 진정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 기재하여야 한다. 이 경우 피내사자 또는 피진정인등이 입건된 때에는 형사사건부에 내사 또는 진정사건번호를, 내사사건부 또는 진정사건부에는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⑤ 내사사건 또는 진정사건을 이송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5호서식의 내사·진정사건송치서에 따르고, 다른 기관 이송·이첩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06호서식의 다른기관이송·이첩서에 따른다.

제141조의4(내사·진정사건 결과 통지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4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를 지체없이 별지 제207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진정인등)에 따라 진정인등에게 통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41조의3제1항 및 제2항의 처리결과(혐의없음, 죄가안됨, 공소권없음, 입건유예의 경우에 한한다)를 지체없이 별지 제208호서식의 사건결정결과통지서(피진정인등)에 따라 피진정인, 피내사자에게 통지한다.

③ 전항의 통지로 인해 보복범죄 또는 2차 피해 등이 우려되는 아래 각호의 경우에는 피진정인, 피내사자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아니할 수 있다.

1. 혐의 내용 및 동기, 진정인 또는 피해자와의 관계 등에 비추어 통지로 인해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생명·신체·명예 등에 위해 또는 불이익이 우려되는 경우

2. 사안의 경중 및 경위, 진정인 또는 피해자의 의사 및 피진정인·피내사자와의 관계, 분쟁의 종국적 해결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하여 통지하지 아니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제10장 조사사건

제142조(조사사건의 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한다.

1. 수사의 단서로서 수사를 개시할 필요가 있는 사항에 관한 서류(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있는 서류에 한정한다)를 접수한 때

2. 내사·진정사건 진행 중 제141조의3제1항제6호에 따라 등록한 때

3. 상급검찰청에서 범죄 혐의에 대한 조사 또는 보고를 명한 사항이

기재되어 있는 서류를 접수한 때

4. 다른 기관으로부터 범죄에 대한 수사를 의뢰받은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②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때에는 조사사건으로 수리하거나 입건하여야 한다.

1. 사람의 신체, 주거, 관리하는 건조물, 자동차, 선박, 항공기 또는 점유하는 방실(房室)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을 제외한 압수·수색·검증, 통신제한조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 등 「형사소송법」 및 다른 법령에 따른 영장 또는 허가를 청구하는 때

2. 현행범인을 체포·인수한 때

제142조의2(조사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을 수리하는 때에는 시스템에 피의자의 인적사항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조사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조사사건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조사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조사사건과 관련하여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③ 조사사건의 번호는 제4조제4항에 준하여 "○년 조제 ○호"로 기재한다.

④ 조사사건의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2조의3제2항, 제3항 및 제3조제3항 및 제5조를 준용한다.

제142조의3(조사사건의 처리 등)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조사사건을 처리한다.

1. 입건

이 경우에는 조사사건부의 비고란에 형제번호를 기재한다.

2. 입건유예

범죄의 혐의는 있으나 입건할 필요가 없는 경우

3. 혐의없음, 죄가안됨 또는 공소권없음

제69조제3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의 사유가 있는 경우

4. 조사중지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수사의 진행이 불가능한 경우

5. 이송

동일한 내용의 조사사건을 다른 검찰청의 검사가 수사 중이거나 「형사소송법」 제256조 또는 제256조의2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6. 각하

제69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② 제142조제1항 제1호, 제2호, 제4호의 사유로 수리된 조사사건의 처리에 관하여는 제141조의3제2항제5호를 준용한다.

제142조의4(조사사건 결과 통지등) 제142조의3제1항의 처리결과 통지에 관하여는 제141조의4를 준용한다. 이 경우 별지 제209호서식의 사건처분결정결과통지서(조사)에 따른다.

제11장 시정사건

제143조(시정사건의 수리) 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에는 시정사건으로 수리한다.

1.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의하여 구제신청을 받은 경우
2. 검사가 진정인·탄원인 등 민원인이 제출하는 서류가 구제신청의 요건을 갖추었다고 판단하여 시정사건으로 수리하는 경우
3.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에 의하여 사법경찰관리의 법령위반, 인권침해 또는 현저한 수사권 남용이 의심되는 사실을 인식하게 된 경우
4. 내사·진정사건 진행 중 제141조의3제1항제7호에 따라 등록한 때
5. 그 밖에 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준하는 경우

제143조의2(시정사건의 수리절차)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43조제1호, 제2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수리하는 때에는 시스템에 시정사건의 요지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시정사건 수리서를 출력한 후 시정사건 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시정사건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43조제3호, 제4호, 제5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수리하는 때에는 시스템에 시정사건의 요지 등 해당 사항을 전산입력하고, 시정사건 등록서를 출력한 후 시정사건 기록 앞에 첨부하여 수리한 다음, 시정사건부에 해당사항을 기재한다.

③ 시정사건의 번호는 제4조제4항에 준하여 “O년 시정제O호”로 기재한다.

④ 시정사건의 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5조를 준용한다.

제143조의3(시정조치요구 및 송치요구의 방법 및 절차 등) ①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를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10호서식의 사건기록 등본송부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사건기록 등본송부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분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제1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 송부 요구서 부분을 송부받은 때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수사준칙 제45조제2항에 따라 사건기록 등본을 송부받은 때에는 검사에게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④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3항,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11호서식의 시정조치 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조치 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분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⑤ 검사가 수사준칙 제45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시정조치를 요구하지 아니한다는 통보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12호서식의 시정사건 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시정사건 통보서 부분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하고, 나머지 1부를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하여야

한다. 다만, 별지 제212호서식의 시정사건 통보서는 제143조의5에 규정된 별지 제213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통지서로 대체할 수 있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4항의 시정조치 요구서 부분 또는 제5항의 시정사건 통보서 부분을 송부받은 때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4항에 따라 이행결과통보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⑧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게 사건을 송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송치요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검사는 송치요구서는 사법경찰관에게 송부하고, 부분 2부 중 1부는 기록에 편철한 후, 나머지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9항에 따라 송치요구서 부분을 송부받은 때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⑩ 사건사무담당직원이 수사준칙 제45조제6항에 따라 사건을 송치받은 때에는 지체없이 검사에게 이를 보고하고,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⑪ 검사는 제1항에 따른 사건기록 등본의 송부 요구, 제4항에 따른 시정조치 요구, 제9항에 따른 사건 송치요구 여부를 판단하기 위하여 사법경찰관리의 의견을 듣거나 사건관계인 등에 대한 자료 제출 요구,

면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제143조의4(시정사건의 처리) ① 검사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정 사건을 처리한다.

1. 시정이행

사법경찰관이 검사의 시정조치요구를 이행한 경우

2. 시정불요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진행할 필요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3. 시정종결(송치)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송치요구하여 사건을 송치받은 경우

4. 각하

제69조제3항제5호에 준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

5. 기타종결

제1호 내지 제4호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경우

② 검사는 시정사건 기록에 시정사건의 요지 및 결정이유를 기재하여 처리한다.

③ 검사는 제1항 각호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는 때 시정사건 기록 비고란에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징계요구 여부를 기재하여야 하고, 제1항제3호에 따라 처리하는 때에는 시정사건 기록 비고란에 송치된 사건의 사건번호를 기재한다.

제143조의5(시정사건 결과 통지등) 검사가 제143조의4에 따라 시정사건을 처리하고 그 내용을 신고자, 고소인, 고발인 등 사건관계인에게 통지하는 때에는 별지 제213호서식의 시정사건처리결과통지서에 따른다. 다만, 사건관계인의 명시적 의사에 반하지 않는 한 전화,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메시지 또는 그 밖에 이에 상당한 방법으로 서면에 의한 통지에 갈음할 수 있다.

제3편 고등검찰청에서의 절차

제144조(수리사유) ① 고등검찰청(항소심 법원에 대응하는 지방검찰청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서는 사건이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 이를 수리한다.

1. 항소법원으로부터 「형사소송법」 제361조의2제1항의 규정에 의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경우
 2. 대법원에서의 병합·이송·환송 또는 재심개시의 결정에 의하여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3. 「군사법원법」 제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이송결정으로 사건이 대응하는 법원에 계속된 경우
 4. 「범죄인 인도법」 제12조제1항에 의하여 법무부장관으로부터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명령을 받은 경우(서울고등검찰청에 한한다)
-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하여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이 제시하는 사건송부부에 수리

일시와 수리자의 직급 및 성명을 기재하고 날인하거나 사건수리통지서를 작성하여 송부하며, 압수물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압수물사무담당직원에게 인계하여 압수물수리절차를 취하게 한다. 다만, 사건의 수리여부가 전산망등 다른 방법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때에는 사건수리통지서의 송부를 생략할 수 있다.

제145조(항소사건부 기재등) ①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44조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항소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함과 동시에 항소기록접수통지서에 항소사건번호를 기재하고, 제144조제1항제4호의 사건을 수리한 경우에는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찰보고사무규칙」에 의한 보고사건인 경우에는 그 뜻을 기재한다.

② 항소사건번호는 제4조제4항에 준하여 "○년 항 제○호"로, 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번호는 "○년 인도 제○호"로 표시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소정의 사항을 전산으로 입력한 때에는 항소사건부(범죄인 인도심사청구 사건부를 포함한다)의 기재를 생략할 수 있다. 이 경우 전산으로 입력된 자료는 매 분기말을 기준으로 하여 3개이상의 장소에 분산·보관한다.

제146조(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 수리절차가 종료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의 처리에 있어서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소속과장을 거쳐 소속 검찰청의 장의 지시를 받는다.

제147조(항소취하사건의 수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44조제1항제1호

의 규정에 의하여 송부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를 수리하기 전에 항소 취하서를 접수한 경우에는 수리절차를 취하여야 한다.

제148조(피고인색인부)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46조의 규정에 의한 절차를 마친 때에는 지체없이 피고인색인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다만, 제145조의 규정에 의한 항소사건부의 기재를 생략한 때는 피고인색인부의 기재를 생략하고, 매월초 또는 매년초에 전월 또는 전년도에 수리한 사건에 대한 피고인색인부를 전산처리방법에 의하여 작성, 비치하고, 이 경우 매년초에 피고인색인부가 작성된 때에는 전년도 월별 피고인색인부는 폐기할 수 있다.

제149조(준용규정) 고등검찰청에서의 공판·상소 및 재심의 절차에 관하여는 제2편 제6장 내지 제8장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50조(확정사건기록의 반환) 항소사건에 관하여 중국 재판이 있는 때 또는 항소가 취하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지체없이 별지 제214호서식의 항소기록 및 증거물반환서에 의하여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의 장에게 사건기록을 반환한다.

제4편 대검찰청에서의 절차

제151조(준용규정) 대검찰청에서의 사건사무의 처리절차에 관하여는 제3편의 규정을 준용한다. 이 경우 "항소사건"은 "상고사건"으로, "항소기록접수통지서"는 "상고기록접수통지서"로, "항소취하"는 "상고취하"로, "소속검찰청의 장"은 "검찰총장"으로, "○년 항 제 ○호"는 "○년

상 제○호"로, "대응하는 법원"은 "대법원"으로,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은 "원심법원에 대응하는 검찰청 또는 원심군사법원 검찰부"로 본다.

제152조(비상상고) ① 검찰총장이 「형사소송법」 제441조 또는 제442조의 규정에 의하여 대법원에 비상상고를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5호서식의 비상상고신청서에 의한다.

② 비상상고를 신청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상고사건부와 비상상고사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③ 비상상고기록을 대법원에 송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6호서식의 비상상고기록송부서에 의한다.

제153조(판결정정의 신청) 검사가 「형사소송법」 제4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정정의 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17호서식의 판결정정신청서에 의한다.

제5편 헌법소원등의 처리절차

제154조(사건접수부의 기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서 또는 동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서가 송달되면 위헌제청사건접수부 또는 헌법소원사건접수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155조(의견서등의 작성 및 송부)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과 동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

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공소를 제기한 검사가 별지 제218호서식의 의견서를, 동법 제6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는 불기소결정을 한 검사가 별지 제219호서식의 답변서를 각각 작성한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의견서 또는 답변서와 이에 관련된 기록을 헌법재판소에 송부할 때에는 제출기한 10일전까지 대검찰청을 경유하여 송부한다.

제156조(헌법재판소의 결정에 의한 조치) ① 「헌법재판소법」 제41조의 규정에 의한 위헌여부심판의 제청 및 동법 제68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청구에 대하여 공소제기한 사건의 적용법률이 위헌이라고 결정된 경우에 재판이 계속중일 때에는 공소취소 또는 공소장 변경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재판이 확정된 후 재심청구가 있을 때에는 재심절차에 따른다.

② 「헌법재판소법」 제68조제1항에 의한 헌법소원심판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의 구분에 따라 처리한다.

1. 헌법재판소로부터 불기소결정취소결정을 통지받은 검찰청의 장은 지체없이 불기소결정된 사건을 재기수사하여야 하며, 이 경우 재기사유는 "헌법재판소의 불기소결정취소결정"으로 한다.

2. 재기수사한 사건의 처리는 통상의 사건처리절차에 따르되, 그 처리결과는 제91조제5항의 규정에 준하여 고등검찰청의 장 및 검찰총장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6편 통신제한조치등의 처리절차

제157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1항 및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2항 및 제4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1호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8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부기하여 별지 제22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⑤ 판사로부터 통신제한조치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사건 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제한조치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제158조(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6조제7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3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서에 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의 신청을 받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4호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른다.

②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을 검토하여 그 기간을 연장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을 기각하고, 이 경우 별지 제22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159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7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제한조

치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6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160조(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 기간연장)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신청을 받아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7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161조(긴급통신제한조치, 사후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는 긴급검열(감청)서에 의한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에 따라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하고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사후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을 받아 조치허가 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29호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79호의

2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서에 따른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하고 고등검찰청 검사에게 사후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0호서식의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제한조치를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23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 기각서로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제한조치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⑤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 요청서 또는 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32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결정서로 지휘하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서 또는 승인건의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32호의2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건의)에 대한 결정서로 지휘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사법경찰관등이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을 하거나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

조치 승인요청결정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긴급통신제한조치를 한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⑧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가 단시간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는 지체없이 별지 제233호서식의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⑨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8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할고등검찰청검사장 또는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이 검사, 사법경찰관 또는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를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162조(통신제한조치의 집행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조치집행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4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 집행위탁의뢰서에 따른다. 동 서식의 비고란에는 녹취교부까지 포함하는지 또는 청취만 위탁하는지등 구체적인 업무위탁의 범위를 기재할 수 있다.

② 검사가 집행위탁한 통신제한조치의 통신제한조치 허가기간을 연장한 경우에는 별지 제235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통지서로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통신제한

조치를 집행하는 경우 또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하는 경우에는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④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검사는 별지 제236호서식의 집행조서를 작성하여야 한다. 검찰청이 정보수사기관으로 통신제한조치를 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⑤ 검사는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237호서식의 반환서에 의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제2항의 통신제한조치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37호의2서식의 반환서에 따른다.

⑥ 검사가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 통신제한조치를 중지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8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중지통지서를 수탁기관에 통지한다.

제162조의2(통신제한조치의 집행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1항 또는 제6항의 규정에 의하여 우편물 검열의 대상자 또는 감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의 가입자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실과 집행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39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서에 의한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사법

경찰관등에게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0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처리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처리결과통보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1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통지유예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5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2호서식의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휘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162조의3(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3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르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②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검사는 별지 제244호서식의 통신

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를 작성한다.

③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것이 불가능하거나 필요없게 된 때에는 별지 제245호서식의 반환서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반환하여야 한다. 다만,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서 반환 보고서를 접수한 때에는 별지 제245호의2서식의 반환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이 필요없게 된 경우에는 별지 제246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서를 해당 전기통신사업자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사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받은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162조의4(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7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9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6조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48호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95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249호서식의 기각서로 허가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허가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⑤ 판사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가 발부되거나 기각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또는 기각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제162조의5(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0호서식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서에 따른다.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3항 단서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고 사후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0호의2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에 따르고,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받아 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1호서식 또는 특별사법경찰관리 지휘준칙 별지 제95호2서식에 따른다.

③ 정보수사기관의 장이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고 고등검찰청검사에게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2호서식에 따른다.

④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사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검토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253호서식의 기각서로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의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에 따라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 제공을 요청한 경우에는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8조제5항에 따라 관할 고등검찰청검사장이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제출받은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통보서를 대응하는 법원장에게 송부하는 경우에는 국가안보를 위한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통보서발송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162조의6(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에 관한 통지절차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대상이 된 전기통신가입자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를 제공 받은 사실과 제공요청기관 및 그 기간 등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4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을 받은 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5호서식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서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

결과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의 통지유예에 관한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고자 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3항, 제13조의3제7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9조의2제5항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3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시행령 제19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통신사실확인자료 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가 접수된 때에는 별지 제256호서식의 지휘서에 검토의견을 기재하여 관할 지방검찰청검사장의 승인을 얻어 지휘한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3항 또는 제4항에 따른 승인신청이 있거나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의 승인을 얻은 때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사유 통지 신청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⑦ 검사는 제6항의 신청서에 따라 통지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257호서식의 통지서에 따른다. 이때 검사는 통지서 부분 1부를 사건사무담당

직원에게 송부한다.

⑧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7항의 통지서를 송부받은 때에는 통지신청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162조의7(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동법 제7조제1항제1호 및 「통신비밀보호법 시행령」 제37조제4항에 따라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8호서식에 의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162조의8(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

①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정보수사기관의 장으로부터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4제2항에서 준용하는 같은 법 제7조제2항에 따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신청을 받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59호서식에 따른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항에 따라 고등검찰청의 검사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162조의9(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

사실 통지절차 등)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수사대상이 된 가입자에게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의 집행사실을 통지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0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에게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의 처리결과를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1호서식에 따른다. 이 경우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162조의10(범죄수사를 위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 및 관련 자료의 관리) ①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1항에 따라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2호서식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받아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3호서식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검토하여 전기통신 보관 등이 필요할 만한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별지 제264호서식의 기각서로 승인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사법경찰관이 신청한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

청구 여부를 결정하기 위하여 수사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보완수사요구서(영장)로 보완수사요구를 하고, 특별사법경찰관의 전기통신 보관 등의 승인신청을 기각하는 경우에는 기한을 정하여 재신청지휘를 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라 허가를 청구하거나 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의 승인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⑤ 판사로부터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서가 발부되거나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가 기각된 때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청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하고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서 또는 기각된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⑥ 검사가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제5항에 따라 전기통신을 폐기하는 때에는 별지 제265호서식의 폐기결과보고서를 작성하여 법원에 송부하고, 부분 폐기결과보고서 부분 2부를 작성하여 그 중 1부는 사건기록에 편철하고, 다른 부분 1부는 사건사무담당직원에게 송부한다.

⑦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로부터 제6항에 따라 폐기결과보고서를 송부받은 경우에는 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162조의11(준용규정) 제21조제3항 내지 제6항 및 제23조 내지 제25조의 규정은 범죄수사목적 통신제한조치 허가청구(사전 또는 사후를 불문한다.) 및 범죄수사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사

전 또는 사후를 불문한다.)에도 준용한다.

제7편 마약류범죄관련 보전절차등

제1장 마약류 관련 입국 및 상륙등 특례절차

제163조(마약류범죄수사관련 특례요청등) ① 검사가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이하 이 편에서 "법"이라 한다) 제3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입국·상륙절차의 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6호서식의 입국·상륙절차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체류부적당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7호서식의 체류부적당통보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법 제4조제1항 또는 제2항의 규정에 의한 반출·반입특례요청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8호서식의 세관절차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④ 검사가 법 제3조제5항 또는 제4조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요청 또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69호서식부터 별지 제269호의3서식까지의 입국·상륙절차 특례요청서, 체류부적당 통보서, 세관절차 특례요청서에 따른다.

⑤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입국·상륙절차 특례요청, 체류부적당 통보, 세관절차 특례요청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70호서식부터 별지 제270호의3서식까지의 입

국·상륙절차 특례신청 기각서, 체류부적당 통보신청 기각서,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⑥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마약류범죄수사 관련 요청 또는 통보를 하는 경우에는 특례조치등요청·통보부를 작성하고, 필요한 사항을 기재하여야 한다.

제2장 몰수·부대보전절차

제164조(몰수보전등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33조제1항·제2항 또는 제34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1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34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관등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2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는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검토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할 상당한 이유가 없다고 인정될 때에는 별지 제273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신청 기각서에 그 이유를 기재하여 신청을 기각한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몰수보전신청 또는 부대보전신청을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이유와 필요에 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

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다시 신청할 것을 지휘할 수 있다.

④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거나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을 기각한 경우에는 몰수·추정보전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⑤ 법원으로부터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지거나 기각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몰수·추정보전청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기각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제165조(몰수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서 또는 부대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몰수보전부를 작성한다. 법원의 직권으로 발하여진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66조(몰수보전명령등의 집행) 검사가 법 제37조제4항, 제38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부동산 및 등기·등록에 의하여 권리변동이 이루어지는 물건등에 대한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집행을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4호서식의 등기·등록촉탁서에 따른다.

제167조(공시의 조치) 검사가 법 제39조제3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시를 하는 경우, 공시서에 의하는 때에는 다음 각호의 사항을 기재한 몰수보전공시서에 의한다.

1. 동산의 표시
2. 몰수보전명령별 재판연월일, 법원 및 사건번호
3. 공시연월일
4. 공시검사

제168조(공소장의 기재)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이 발하여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여백에 "몰수보전명령 있음"이라고 기재한다.

제169조(공소제기의 통지) ① 검사가 법 제34조제5항 전단(「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5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공소제기통지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34조제5항 후단(「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공고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6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공소제기공고서에 따른다.

제170조(몰수보전명령등의 취소청구등) ① 검사가 법 제42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명령 또는 부대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7호서식의 몰수·부대보전명령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42조제2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몰수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1조(몰수보전명령등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검사가 법 제44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의 등기나 등록에 대한 말소를 촉탁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8호서식의 등기·등록 말소촉탁서에 따른다.

제172조(준수사항) 압수사무담당직원은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몰수보전부 각 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3장 추정보전절차

제173조(추정보전의 청구) ① 검사가 법 제52조제1항 또는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79호서식의 추정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같은 항에 따른 추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0호서식의 추정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법 제53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대하여 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추정보전의 이유와 필요가 없다고 인정하여 그 신청을 기각할 때에는 별지 제281호서식의 추정보전신청 기각서에 따른다. 다만, 검사가 특별사법경찰관의 추정보전신청을 추정보전의 이유와 필요에 대한 소명자료의 보완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기각하는 경우에는 법 제53조제3항에 따라 기한을 정하여 다시 신청할 것을 재지휘할 수 있다.

④ 제164조제4항 및 제5항의 규정은 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74조(추정보전부)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제173조제4항에 의하여 준용되는 제164조제5항의 규정에 따라 추정보전명령서를 받은 경우에는 추정보전부를 작성한다. 법원의 직권으로 발하여진 추정보전명령의 경우에도 또한 같다.

제175조(추정보전명령의 집행) 검사가 법 제54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보전명령을 집행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2호서식의 추정보전명령집행명령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83호서식의 가압류집행절차신청서에 따라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

제176조(공소장의 기재) 공소가 제기되기 전에 추정보전명령이 발하어진 사건에 대하여 공소를 제기하는 경우, 검사는 공소장 첨부란의 우측여백에 "추정보전명령 있음"이라고 기재한다.

제177조(추정보전명령의 취소청구) ① 검사가 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추정보전명령의 전부 또는 일부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4호서식의 추정보전명령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에게 법 제53조제3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요구를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5호서식의 신청·보완·수정·취소등요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사법경찰관등의 신청에 따라 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추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6호서식의 추정보전명령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④ 법 제57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추정보전명령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78조(추정보전명령이 실효된 경우의 조치) ① 검사가 법 제59조(「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

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보전명령 집행명령을 취소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7호서식의 추정보전명령집행명령취소서에 따른다.

② 제1항의 경우에 있어, 추정보전명령에 따른 추정보전집행을 정지 또는 취소하기 위하여는 추정보전명령집행명령취소서를 첨부하여 별지 제288호서식의 가압류집행정지·취소절차신청서에 따라 법원에 이를 신청한다.

제179조(준수사항) 압수사무담당직원은 추정보전에 관련된 절차단계마다 추정보전부 각 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제4장 강제집행등과의 조정절차

제180조(강제집행의 정지청구등) ① 검사가 법 제48조제1항(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89호서식의 강제집행정지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48조제3항(법 제50조제7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0호서식의 강제집행정지결정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③ 법 제48조제4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9

8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81조(몰수보전재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에 의하여 압류등이 된 경우의
통지) ① 검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3
조제3항(동 규칙 제18조·제19조제1항 및 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
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는 몰수·부대보전에
관한 통지서를 작성하여 집행법원(동산의 경우에는 집행관)에 그 사실
을 통지하여야 한다.

② 검사가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16조제1
항 또는 제2항(동 규칙 제18조·제19조제3항 및 제20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한 통지를 하는 경우에도 제1항과 같다.

제5장 국제공조절차

제182조(심사청구등) ① 검사가 법 제67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
정에 의하여 심사청구를 하는 경우, 몰수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
청구는 별지 제291호서식에 의한 몰수집행공조심사청구서에 의하고,
추징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심사청구는 별지 제292호서식의 추징집
행공조심사청구서에 따른다.

② 법 제67조제7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법원에서 심
사청구에 관한 검사의 의견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제98조의 규정을 준

용한다.

③ 검사가 법 제71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보전 또는 부대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3호서식에 의한 공조몰수·부대보전청구서에 의한다.

④ 검사가 법 제72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추정보전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4호서식의 공조추정보전청구서에 따른다.

⑤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검사가 제1항 내지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청구 또는 보전청구를 하는 경우에는 마약류사범국제공조사건처리부등을 작성하고, 소정의 사항을 기재한다.

⑥ 법원으로부터 공조허가결정 또는 공조몰수·공조추정보전명령이 발하여지거나 각하, 거절 또는 기각된 경우에는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마약류사범국제공조사건처리부에 소정의 사항을 기재하고, 압수사무담당직원을 경유(심사청구가 각하 또는 거절된 경우 및 공조몰수·공조추정보전청구가 기각된 경우를 제외한다)하여 결정서를 검사에게 제출한다.

제183조(심사청구등의 취소등) ① 검사가 법 제74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심사·몰수보전 또는 추정보전의 청구를 취소

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5호서식의 심사·공조몰수보전·공조추정보
전청구취소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법 제70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공조
허가 결정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6호서식의 집행공조
허가결정취소청구서에 따른다.

③ 검사가 법 제74조제1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의 규정에 의하여 몰수
보전명령 또는 추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297
호서식의 공조몰수·추정보전명령취소청구서에 따른다.

제184조(몰수·부대보전절차등의 준용) 제172조 및 제179조의 규정은
이 장의 규정에 의한 심사청구등의 경우에 이를 준용한다.

제185조(「형사소송규칙」 등의 준용) 이 장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
를 제외하고 법원 또는 법관이 하는 심사·처분 및 영장의 발부와 검
사 또는 사법경찰관리가 하는 처분 및 법원의 심사예의 이해관계인의
참가에 관한 절차에 관하여는 「마약류범죄 등의 몰수보전 등에 관한
규칙」 제2장 및 「형사소송규칙」(제1편제2장·제5장 내지 제13장,
제2편제1장, 제3편제1장·제3장·제4장, 제5편 및 제6편에 한한다),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범죄인인도법에 의한 인도심사등의 절차
에 관한 규칙」 제4조·제12조·제14조 및 제15조를 각각 그 성질에 반
하지 아니하는 범위안에서 준용한다.

제8편 징계요구·직무배제·교체임용요구

제186조(징계요구 절차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3항 및 같은 법 제197조의3제7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징계를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98호서식의 징계요구서에 의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 제46조제1항, 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영장) 또는 시정사건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46조제2항 및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으로부터 징계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187조(직무배제요구 절차등) ① 검찰총장 또는 각급 검찰청의 검사장이

「형사소송법」 제197조의2제3항에 따라 사법경찰관에 대한 직무배제를 요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299호서식의 직무배제요구서에 의한다. 이 경우 수사준칙제61조제1항에 따른 관계 자료를 첨부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결정),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추완), 보완수사요구 사건부(공판), 보완수사요구 사건부(영장)에 해당 사항을 기록한다.

③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수사준칙 제61조제3항에 따라 경찰관서장으로

부터 직무배제요구에 대한 처리결과 및 이유를 통보받은 때에는 이를 검사에게 보고한다.

제188조(교체임용요구 절차등) ① 지방검찰청 검사장이 「검찰청법」 제54조제1항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에 대한 교체임용 요구를 하는 때에는 별지 제300호서식의 교체임용요구서에 의한다.

② 사건사무담당직원은 교체임용요구부에 해당 사항을 기재한다.

제9편 고위공직자범죄등 관련 절차

제189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통지등) ① 검사가 공수처법 제2조에 규정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하여 수리한 후 공수처법 제24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그 사실을 통보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1호서식의 고위공직자범죄등인지사실통보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공수처법 제24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수사처장의 수사개시여부에 대한 회신을 접수한 때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제190조(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의 이첩요청과 사건의 이첩등) ① 검사가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에 의한 수사처장의 이첩요청을 받은 때에는 이를 사건기록에 편철한다.

② 검사는 전항의 이첩요청이 범죄수사의 중복 등 공수처법 제24조제1항의 요건을 구비한 때에는 이첩요청을 받은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수사처에 이첩한다.

제191조(고위공직자범죄등 인지사건의 관리) 사건사무담당직원은 제189

조부터 제190조까지의 사항을 고위공직자범죄등인지 사건관리부에 기재한다.

제10편 피해자 및 공익신고자등의 보호

제192조(피해자에 대한 보호 및 지원) ① 검사 및 검찰청 소속 직원은 수사, 공소유지 및 형집행 과정에서 피해자의 주소·성명·나이·직업·학교·용모 그 밖에 피해자를 특정하여 파악할 수 있는 인적사항 등이 공개되거나 타인에게 누설되지 않도록 노력한다.

② 검사는 피해자의 신청이 있는 경우 제60조제2항의 통지 외에 공판의 일시·장소, 재판결과, 구속·석방 등 구금에 관한 사실, 출소 등 형집행상황 등 형사절차 관련 정보를 제공한다.

③ 검사가 피해자를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검사가 피해자를 조사하는 경우에 피해자의 연령, 심신의 상태, 그 밖의 사정을 고려하여 심리적 안정과 원활한 의사소통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193조(공익신고자등에 대한 보호등) ① 검사는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공익신고자등과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2조에 규정된 범죄신고자등을 보호·지원하거나 보복범죄 및 불이익조치등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영상물 촬영을 신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2호서식에 의한 영상물 촬영신청서에 따르고,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법원에 영상녹화물의 사본을 청구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303호서식의 영상녹화물 사본청구서에 따른다. 이 경우 제43조제5항 및 제6항을 준용한다.

③ 검사가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1조제1항에 따라 공익신고자등이나 범죄신고자등을 증인으로 소환하거나 참고인으로 조사하는 경우에 보복범죄 등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때에는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한다.

④ 검사가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5조에 따라 피고인 등과 관련된 주요 변동상황을 통지하는 경우 범죄신고자등 또는 친족등의 신변안전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전화, 모사전송, 전자우편, 휴대전화 문자전송 또는 그 밖의 상당한 방법으로 통지할 수 있다.

제11편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등

제194조(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 절차등)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29조, 제37조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를 요청하는 때에는 별지 제304호서식의 국제형사사법공조 요청서에 따른다.

제195조(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 절차등) 검사가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제15조부터 제21조까지의 규정 및 제37조의 규정에 따라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을 완료한 때에는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에 따른다.

제196조(외국으로의 범죄인 인도절차등) ①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3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심사를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305호서식의 인도심사 청구서에 따른다.

②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19조에 따라 법원에 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306호서식의 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르고, 「범죄인 인도법」 제26조에 따라 법원에 긴급인도구속영장을 청구하는 때에는 별지 제307호서식의 긴급인도구속영장 청구서에 따른다.

제197조(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등의 건의등) 검사가 「범죄인 인도법」 제42조의3에 따라 법무부장관에게 외국에 대한 범죄인 인도청구 또는 긴급인도구속청구를 건의하는 때에는 별지 제308호(지명수배의 경우), 제309호(자유형미집행자의 경우)서식의 범죄인 인도·긴급인도구속 청구 건의서에 의한다.

제198조(준용규정) 국제형사사법공조 절차 및 범죄인 인도 절차에 관하여는 「국제형사사법 공조법」, 「국제형사사법공조규칙」, 「범죄인 인도법」, 「범죄인인도법에의한인도심사등의절차에관한규칙」에 반하지 아니하는 한 이 규칙을 준용한다.

제12편 보칙

제199조(적용범위 등) 이 규칙 중 검사의 직무와 관련하여 규정된 각종 준수사항은 수사와 관계있는 검찰청 직원에게도 적용한다.

제200조(별표와 서식 등) ①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별지 서식은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1. 불송치-수사중지기록접수서
2. 직수고소고발사건관리부
3. 범죄인지서
4. 불기소사건재기서
5.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명령 개시서
6. 검사기록인계인수서
7. 피의자색인부
8. 사법경찰관 사건기록 열람 관리대장
9. 수사경합사건 송치요구 검토결과서
10. 송치요구대장
11. 중요사건 협력대장
12.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대장
13. 검시사건부
14. 출석요구통지부
15. 전자화대상문서 관리대장
16. 일반사건전환
17. 공조사건부

18. 증거보전청구부
19. 체포영장청구부
20. 보완수사요구사건부(영장)
21. 채수사시지휘부
22. 체포영장집행원부
23. 접견등금지처리부
24. 긴급체포원부
25. 긴급체포승인결정부
26. 긴급체포승인건의지휘부
27. 현행범인체포원부
28. 체포구속장소감찰보고
29. 피의자석방명령사건송치명령부
30. 체포구속영장등본교부대장
31.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부
32.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 석방 피의자기록표
33. 적부심보증금납입조건부석방피의자명부
34. 보관표(적부심보증금)
35. 구속영장청구부
36. 구속기간연장처리부
37. 감정유치장청구부
38. 구속집행정지결정서

- 39. 구속집행정지자명부
- 40. 구속집행정지자기록
- 41. 구속(형)집행정지취소결정
- 42. 구속영장집행원부
- 43. 압수수색영장등청구부
- 44. 감정처분허가장청구부
- 45. 증인신문청구부
- 46. 임시조치청구부
- 47. 고소고발사건처분결과통지부
- 48. 공수처송치사건처분결과통보부
- 49. 피의사건처분결과통지부
- 50. 부재기결정서
- 51. 압수물건처분서
- 52. 공소장및기록송부부
- 53. 전자적처리사건 공소장 및 출력문서 송부부
- 54. 불기소 사건기록 및 불기소 결정서
- 55. 불기소 결정서
- 56. 기소중지자명부
- 57. 참고인등소재수사요청(지휘)부
- 58. 공소보류자명부
- 59. 송치결정서

- 60. 사건이송(이첩)결정서
- 61.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사건 송치결정서
- 62.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
- 63. 보완수사요구결정서
- 64. 보완수사요구사건부(결정)
- 65. 보완수사요구사건부(추완)
- 66. 불송치기록검토결과서
- 67. 불송치 반환 기록 송부(목록)부
- 68. 재수사요청기록송부(목록)부
- 69. 재수사요청기록 송치요구검토결과서
- 70. 송치요구사건부
- 71. 수사중지기록검토결과서
- 72. 수사중지기록관리부
- 73. 지휘서송부부
- 74. 재정신청사건부
- 75. 불기소처분 항고재항고사건부
- 76. 항고사건 결정서(고검이 일선에)
- 77. 항고(재항고)각하결정서
- 78. 공판카드
- 79. 공판사건기록관리부
- 80. 보석청구사건인원표

81. 보석자기록표
82. 보석자명부
83. 보관표(보석보증금)
84. 보완수사요구사건부(공판)
85.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부
86. 국민참여재판사건부
87. 상소권 회복청구 사건부
88. 항소사건사건부
89. 형사 신청항고재항고 사건부
90. 재심청구사건부
91. 내사사건수리서
92. 내사사건부
93. 진정사건수리서
94. 진정사건부
95. 내사사건기록
96. 진정사건기록
97. 수사사건수리서
98. 수사사건부
99. 수사사건기록
100. 시정사건수리서
101. 시정사건부

- 102. 시정사건등록서
- 103. 시정조치요구서 송부(목록)부
- 104. 시정조치 기록등본송부요구(목록)부
- 105. 시정사건기록
- 106. 범죄인인도심사청구 사건부
- 107. 비상상고사건부
- 108. 위헌제청사건접수부
- 109. 헌법소원사건접수부
- 110.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부
- 111.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처리부
- 112.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처리부
- 113. 긴급검열(감청)서
- 114.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승인)요청 결정부
- 115. 긴급통신제한조치대장
- 116.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발송부
- 117. 통신제한조치집행대장
- 118.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부
- 119.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 120.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12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대장
- 122. 통신사실 확인자료 회신대장

- 123.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 청구부
- 124. 긴급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 요청대장
- 125. 국가안보를 위한긴급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통보서 발송
부
- 126.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부
- 127.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부
- 128.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 129.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부
- 130. 통신사실확인자료제공요청사유통지처리부
- 13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처리부
- 132. 송수신이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부
- 133.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 처리결
과 통보부
- 134. 전기통신 보관 등 승인청구부
- 135. 특례조치 등 요청 통보부
- 136. 몰수추징보전청구부
- 137. 몰수보전부
- 138. 추징보전부
- 139. 마약류사범등 국제공조사건처리부
- 140. 교체임용요구부
- 141. 고위공직자범죄등인지사건 관리부

② 이 규칙에 규정된 다음 각 호의 별표는 대검찰청 예규로 정한다.

1. 사건접수인
2. 기록접수인
3. 수리입력항목
4. 접수입력항목
5. 목록과 요지 접수인
6. 검토필 고무인
7. 제출지시 고무인
8. 전자화대상문서 고무인
9. 결정입력항목
10. 처리입력항목

③ 제1항, 제2항의 대검찰청 예규는 공개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1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다만, 제2편 제10장(조사사건)의 개정규정은 2023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 (일반적 적용례) 이 규칙은 이 규칙 시행 당시 수사 중이거나 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도 적용한다. 다만, 이 규칙 시행 전에 종전의 규정에 따라 행한 행위의 효력에는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3조(조사사건 명칭 변경에 따른 경과조치) 2022년 12월 31일까지 수사사건의 접수 및 처리에 관하여는 제2편 제10장(조사사건)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의한다.

[별지 제1호서식]

○○○○검찰청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수 신		검찰청검사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	
제 목 사건수리통지			
아래 사건을 수리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① 피 의 자	주민등록번호		성 명 세
② 죄 명			
③ 송 치 연 월 일	. . .	④ 수 리 연 월 일	. . .
⑤ 송 치 사 건 번 호		⑥ 수 리 사 건 번 호	
⑦ 기 록 권 수	권	⑧ 기 록 권 수	권
⑨ 비 고		비 고	

23231-36311일

210mm×297mm

93. 5. 1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 제2호서식 사건송치서]

<개정 2003.7.28>

공 소 시 효	장 기	.	.	.
	단 기	.	.	.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사 건					
형					
수신자		발신자		검찰청검사장대리	
		검사		(인)	
제 목 사건송치					
아래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 의 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연 령		
③	죄 명				
④	송 치 사 유				
⑤	기 록 권 수				
⑥	압 수 물 건				
⑦	비 고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검찰청

(00-0000-0000)

제 호

2021. . .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지방검찰청장

검 사

인

제 목 사건기록 열람요청

「형사소송법」 제197조의4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8조 제1항에 따라 귀청에서 수사 중인 사건 기록의 열람을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 아 래 -

사 건	경찰번호		검찰사건번호	
	피의자			
	죄 명			
	범죄사실	불임 범죄사실과 같음		
신청사유	동일범죄사실여부 확인 [] 영장청구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 판단 []			
영장청구	영장청구일		영장발부일	
	영장종류			
기록열람범위				

열람허가서

검 사

인

사건기록 열람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열람을 허가(불허)합니다.

- 아 래 -

사 건	경찰번호		검찰사건번호	
	피의자			
	죄 명			
신청사유	동일범죄사실여부 확인 [] 영장청구신청의 시간적 선후관계 등 판단 []			
열람 범위	※ 별지서식 활용 가능			
비 고				

열람 허가 범위

순번	요 청 목 록	허가여부		비고
		허 가	거 부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16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년 (형, 불, 시정)제 호		0000. 00. 00.
수신자	○○○경찰서장	검사 인
제 목	송치요구	
아래 사건에 대해 송치를 요구합니다.		
송 치 요 구 대 상	경 찰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송 치 요 구 사 유		
기 록 권 수		
압 수 물	☐ 有 ☐ 無	
송 치 기 한	※ 형사소송법 제197조의3제5항에 따른 송치요구 시 공소시효 만료일의 임박 등 특별한 사유가 있을 때에는 그 사유를 명시하고 별도의 송치기한을 지정	
비 고		

지정의 철회			
대표번호인 지 정 서			
지정의 변경			
피 의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대표번호인의 지정을 철회함			
제32조의2제5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 대표번호인을 지정함			
대표번호인의 지정을 변경함			
.			
.			
.			
검찰청			
검사 ①			
대표번호인	1	성	명
		송	달 주 소
	2	성	명
		송	달 주 소
3	성	명	
	송	달 주 소	
기타번호인	1	성	명
		송	달 주 소
	2	성	명
		송	달 주 소
	3	성	명
		송	달 주 소
	4	성	명
		송	달 주 소
	5	성	명
		송	달 주 소

○○○ 검찰청

(00-0000-0000)

검 제

수 신

발 신

검찰청

지 정 의 철 회

제 목 대표번호인 지 정 통보

검 사

인

지 정 의 변 경

당청 형제 호 피의사건의 피의자 에 대한

[대표번호인의 지정을
대표번호인을
대표번호인의 지정을] 아래와 같이 [철 회
지 정
변 경] 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대 표 번 호 인	1	성 명	
		송 달 주 소	
	2	성 명	
		송 달 주 소	
	3	성 명	
		송 달 주 소	
기 타 번 호 인	1	성 명	
		송 달 주 소	
	2	성 명	
		송 달 주 소	
	3	성 명	
		송 달 주 소	
	4	성 명	
		송 달 주 소	
	5	성 명	
		송 달 주 소	

○○○검찰청

제 2021-00000 호

2021.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사법경찰관의 의견 요청에 대한 사건처리 의견

다음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2021-000000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의 견 내 용

○○○검찰청

검사

인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의견요청

다음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합니다.

경찰 사건번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요 청 사 항				
이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7조에 따른 의견제시·교환이 필요하므로, 0000. 00. 00.까지 해당 사건 처리에 대한 의견제시를 요청합니다. 1. 사건 유형 ☐ 공소시효 임박사건 ☐ 내란·외환 사건 ☐ 선거 사건 ☐ 테러 사건 ☐ 대형참사 ☐ SOFA 사건 ☐ 연쇄살인 사건 ☐ 기타 () 2. 의견 요청사항 —				
○○○ 검찰청				
검 사			인	

○○○검찰청

제 2021-000 호 2021. .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사법경찰관 의견 제시에 대한 검사 의견

다음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제시합니다.

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2021-000000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의 건 내 용				
○○○검찰청				
검사				인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관계 서류 및 증거물 제출 지시

다음 사건에 대하여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지시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혐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검 사 지 시				
이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년 월 일 까지 관계 서류와 증거물을 제출할 것을 지시합니다. 제출 지시 사유 1) 사건관계인의 이익 제기 [] 2) 사건관계인의 인권 침해 []				
첨부서류 1. . 끝.				
○○○ 검찰청				
검 사 인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수사지휘

다음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지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접 수 일 자		사건번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사건에 대한 수사기일연장 지휘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접 수 일 자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연 장	
기 간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사람에 대하여 출국금지·출국정지·입국시통보요청 지휘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사 건 번 호			
인 적 사 항	성명		
	주거		
	등록기준지		
	직업	성 별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죄 명			
기 간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재기수사지휘

다음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재기수사지휘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검 사 지 휘		
1. 신병지휘 ()구속 ()불구속 ()재지휘 2. 이 사람에 대한 별지 기록을 송부하니 수사하여 년 월 일 까지 () 사건 송치할 것을 지휘합니다. () 재지휘 받을 것을 지휘합니다. () 간이공소장 양식으로 송치할 것을 지휘합니다. 3.		
첨부서류 1. 형제 호 수사기록 1권. 끝.		
○○○ 검찰청		
검 사		

○○○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 보고에 대한 지휘

다음 사람에 대한 기소중지자 소재 발견보고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구속	불구속	재지휘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송치일시	
송치번호	
사건번호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범법자 출입국 규제요청에 대한 검토의견

다음 사람에 대한 출국금지·출국정지·입국시통보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제시합니다.

가	부	비 고

사 건 번 호			
인 적 사 항	성명		
	주거		
	등록기준지		
	직업	성 별	
	여권번호	주민등록번호	
죄 명			
기 간			
검 사 의 견			
○○○ 검찰청			
검 사			인

○○○검찰청					
제 0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소재 발견 통보 (참고인증지)					
귀 서 0000년 000000 호로 참고인증지된 피의자 ○○○외 ○명에 대한 사건 관련 참고인을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참고인 (고소인, 고발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세)		
	직	업			
	주	거			
	전	화	(주택)		(직장)
대 사 상 건	피	의	자		
	죄	명			
	사	건	번	호	
발			견	경	위
비			고		
첨			부		
○○○○검찰청					
검사 					

○○○검찰청		
제 00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소재 발견 통보(수사중지)		
귀 서 0000년 000000 호로 수사중지된 피의자 ○○○외 ○명에 대한 사건의 피의자를 다음과 같이 발견하였으므로 통보합니다.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 (세)
	직 업	
	주 거	
죄 명		
사 건 번 호		
발 건 경 위		
비 고		
○○○○검찰청		
검사		인

○○○검찰청	
(00-000-0000)	
. . .	
수신	○○○경찰서장
발신	○○○검찰청
제목	소재수사요청
검사	인

아래 사람에 대하여 다음 기재사항을 속히 수사하여 통보하여 줄 것을 요청합니다.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소재수사할 곳		위주거지

수사사항

1. 현주여부, 주민등록등재여부, 전화번호
2. 출타시는 출타사유 및 행선지 또는 귀주예정일자
3. 소재불명시는 가족, 친지, 등 연고자의 유무

고 소			
고 발 인진술조서			
자 수			
①	성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거		
④	등록기준지		
⑤	직업	⑥연령	세 . . 생
검찰청에서			
임의로 아래와 같이 진술한다.			

23231-36711일

210mm×297mm

93. 5. 18 승인

(신문용지 54g/m²)

고 소 인 지 정 서

사	건	명	피의사건
신	청	인	
피해자와의 관계			
피신청인 (피 의 자)			

위 사건에 관하여 . . . 신청인으로부터 고소인 지정신청이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228조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이를 검토한 결과 그 이유 있으므로 제6조제3항 에 의거

아동학대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

제10조의4제3항

신청인(또는 신청외) 를(을) 고소권자로 지정합니다.

○○○ 검찰청

검사

인

고소권자

귀하

○○○ 검찰청

제 0000-0000 호

수 신 : ○○○ 경찰서장

제 목 :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

다음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발		견		일		시			
발		견		장		소			
신		고		일		시			
변사 종별	원				인				
	방				법				
변 인		사 적		사 사		자 향		주 거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성 명 :	
사 의		인 사		소		및 견		직 접 사 인 : 중간선행사인 : 선 행 사 인 :	
사 시		망		추		정 각			
경 및		찰		조 의		치 견			
검 사 의 견									
검		시		지		휘			
사		건		의		견			
○○○ 검찰청									
검 사 인									

○○○ 검찰청

제 0000-0000 호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한 지휘 및 의견

다음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통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의견을 제시합니다.

사 망 일 시	
사 망 장 소	
사 고 일 시	
발 생 장 소	
변 사 자 인 적 사 항	주 거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성 명 :
의 사 소 견	
경 찰 조 치 및 의 견	
검 사 의 견	
검 시 지 휘	
사 건 의 견	
○○○ 검찰청	
검 사 	

○○○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 의견

다음 변사사건 처리에 대한 검사의 의견은 아래와 같습니다.

변 사 자 인 적 사 항	주 거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성 명 :
사 인	직 접 사 인 : 간 접 사 인 :
경 찰 의 견	
검 사 의 견	
○○○ 검찰청	
검 사 인	

검 시 조 서

. 검찰청 검사 는(은) 검찰주사(보)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의 변사체를 검시하다.

변 사 자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세)			
	성 별 및 연 령	남 . 여	세	직	업
	주 거				
	등 록 기 준 지				
변 사 장 소					
검 시 장 소					
사체의 모양 및 상황					
변 사 연 월 일					
발견일시 및 발견자					
의 사 의 검 사					
관 계 인 의 진 술					
휴대품 및 유류품					

23231-37011일 210mm×297mm
96. 12. 27 승인 (신문용지 54g/m²)

사 인				
사 체 의 처 리				
참 여 인				
검 사 의 의 견				
위 검시는 . . . : 에 시작하여 . . . : 에 끝나다.				
년 월 일				
검찰청 검 사 ☐				
검찰주사(보)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발견 일시		
발견 장소		
신고 일시		
변사 종별	원인	
	방법	
변사 인사 자 적 항	성명	(수감번호)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사의인소및 의사소견		직접사인 : 중간선행사인 : 선행사인 :
사망추정시각		
교초치및 의견		
검 사 지 휘		
사체지휘		
사건지휘		
○○○ 검찰청		
검 사		인

○○○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교통사고 변사사건 발생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사		망		일		시			
사		망		장		소			
사		고		일		시			
발		생		장		소			
변 사 자 인 사 적 사 항	성		명		(수감번호)				
	주민등록번호								
	주		거						
	직		업						
의		사		소		견			
교		조		치		도		관	
						및		의	
								견	
검 사 지 휘									
사		체		지		휘			
사		건		지		휘			
○○○ 검찰청									
검 사 									

○○○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변사사건 처리결과보고 및 지휘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변 사 자 인 적 사 항	주 거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성 명 :
사 인	직 접 사 인 : 간 접 사 인 :
교 도 관 의 견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형제 호

출 석 요 구 서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아래 피의사실 요지 참조)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 오전(후) 시에 우리청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사 실 요 지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장 및 아래 증거자료와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 1.
- 2.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 담당자)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0조의2에 따라 체포 될 수 있습니다.

귀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 검찰청

검사

인

형제 호
Criminal Case No. in 20XX

출석요구서 Request for Attendance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아래 피의사실 요지 참조)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오전(후) 시에 우리청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사실 요지

You are requested to come to our Prosecutors' Office, room No.() at()a.m.(p.m.) on (Year)(Month)(Day) to deal with the case suspected of ()(complainant, accuser and petitioner).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장 및 아래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When attending, you must carry this request for attendance, ID card(or driver's license or any materials that can prove your identity), seal, evidence documents below, and any materials that need to be brought upon your judgment.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If you think that you did not have enough opportunity to make statements on the case previously or that some new arguments need to be made and investigation is needed, you may prepare for a written statement that includes those arguments, and bring it to the Office.

1.

2.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 담당자)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 case that you cannot afford to attend on a designated date due to inevitable situation or have a question regarding this request, please contact our Office, room No.()(Tel. , Person in charge) to make adjustments on the date or ask a question.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조의2에 따라 체포 될 수 있습니다.

If you do not accede to the request for attendance without justifiable reasons, you can be subject to arrest in accordance with Criminal Procedure Act Article 20(2).

귀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You are entitled to receiving support from defense attorney and may state your views when the attorney is available. If you want to make statements with the attorney in presence, please contact us in advance.

20XX.
(Year) (Month) (Day)

00검찰청 검사
Prosecutor from 000 District Prosecutors' Office

직인
Seal

형제 호
刑第 号

출석요구서 出席通知書

귀하에 대한 피의사건(아래 피의사실 요지 참조)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오전(후) 시에 우리청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사실 요지

关于您有犯罪嫌疑的案件(控告人、举报人、诉求人), 我厅有事项需询问, 请您于 ____年____
_月____日上午(下午)____时____分到我厅____号检察官办公室出席。

출석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 출석요구서와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도장 및 아래 증거자료와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를 가지고 나오시기 바라며,

出席时须携带此出席通知书、住民登录证(或驾驶执照等其他可证明身份的资料)、印章、证据资料及其他您认为需要的资料,

이 사건과 관련하여 귀하가 전에 충분히 진술하지 못하였거나 새로이 주장하고 싶은 사항 및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사항이 있으면 이를 정리한 진술서를 작성하여 가지고 나오시기 바랍니다.

关于此案件, 如您认为之前的陈述不够充分或有新的事项需要陈述和调查, 请将其内容书写在陈述书上, 并携带该陈述书出席。

1.

2.

지정된 일시에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이 출석요구서와 관련하여 궁금하신 점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 담당자)에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조정하거나 궁금하신 사항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如有不得已原因, 无法在指定日期出席, 或有其他与本出席通知书有关的疑问, 请联系我厅检察官办公室(电话: 、负责人:)调整出席日期和时间或进行咨询。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요구에 응하지 않으면, 「형사소송법」 제20조의2에 따라 체포 될 수 있습니다.

如无正当理由未出席者, 依据《刑事诉讼法第20条之2》之规定, 会被依法逮捕。

귀하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으며,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실 수 있습니다. 변호인이 참여한 상태에서 진술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미리 연락해 주시기 바랍니다.

您有权利获得辩护人助力, 可在辩护人陪同下进行陈述。如您陈述时需要辩护人陪同, 请事先告知我厅。

년 월 일
年 月 日

0000검찰청
0000檢察厅

검사
檢察官

인
(印章)

형제 호

참고인출석요구서

피의자(피내사자, 피진정인) 000에 대한 피의(내사, 진정) 사건(아래 사건의 요지 참조)의 참고인으로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 . . 오전(후) 시에 우리청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시간 정도로 예상되며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사건의 요지

▶ 준비사항

- 1.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도장
- 2.
- 3.
- 4.
- 5.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 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 담당자)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검사 (인)

20 형제 호
Criminal Case No. in 20XX

참고인출석요구서 Request for Witness Attendance

피의자(피내사자, 피진정인) 000에 대한 피의(내사, 진정) 사건(아래 사건의 요지 참조)의 참고인으로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사건의 요지

As a witness of () criminal case[internal probe case, petition case]on suspect[any person under internal probe, petitionee](),

. . . 오전(후) 시에 우리청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시간 정도로 예상되며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you are requested to come to our Prosecutors' Office, room No. () at ()a.m. (p.m.) on 20XX(Year). (Month). (Day). to deal with the case. It is expected to take about ()hour(s) for the investigation so the witness will be provided with expenses allowed in the regulation for attendance.

▶ 준비사항

Preparation items

1.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그 밖에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자료) 및 도장

Request for attendance, ID card(or driver's license or any materials that can prove your identity) and seal

2.

3.

4.

5. 그 밖에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Any materials that need to be brought upon your judgment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 담당자)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In case that you cannot afford to attend on a designated date due to inevitable situations or have a question regarding this request, please contact our Office, room No.() (Tel. - , Person in charge) to make adjustments on the date or ask a question.

검찰청
Prosecutors' Office

검사 (인)
Prosecutor (Seal)

20 형제 호
20 刑第 号

참고인출석요구서 参考人出席通知書

피의자(피내사자, 피진정인) 000에 대한 피의(내사, 진정) 사건(아래 사건의 요지 참조)의 참고인으로 에 관하여 문의할 일이 있으니

사건의 요지

关于犯罪嫌疑人 的犯罪嫌疑人
关于嫌疑人 的嫌疑, 我厅有事项要以参考人身份传唤您询问。
关于被诉人 的诉求

조사에 걸리는 시간은 오전(후) 시에 우리청 호 검사실로 출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调查所需时间大约是 时间 정도로 예상되며 출석한 참고인에게는 소정의 여비를 지급해 드립니다.

请您于 年 月 日上午(下午) 时 分到我厅 号检察官办公室出席。
调查所需时间大约有 小时, 对于出席参考人, 我们会给予一定金额的旅费。

▶ 준비사항 准备事项

- 출석요구서, 주민등록증(또는 운전면허증 기타 본인임을 확일 할 수 있는 자료) 및 도장
出席通知书、住民登录证(或驾驶执照等其他能证明本人的资料)及印章。
-
-
-
- 기타 귀하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자료
其他您认为需要的资料。

출석할 수 없는 부득이한사정이 있거나 사건내용에 관하여 문의할 사항이 있으면 우리청 검사실(전화 - 담당자)로 연락하여 출석일시를 협의하거나 사건내용을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如有不得已原因, 无法在指定日期出席, 或有其他与本出席通知书有关的疑问, 请联系我厅检察官办公室(电话: 、负责人:)调整出席日期和时间或进行咨询。

검찰청
檢察廳

검사 (인)
檢察官 (签章)

동 석 신 청 서

[illegible]

피의자신문조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찰청
호 검사실에서 검사 는(은) 검찰주사(보) 를(을) 참여하게 한
아래와 같이 피의자임에 틀림없음을 확인하다.

문 피의자의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등록기준지 등을 말하시오.

답 성명은

주민등록번호는

직업은

주거는

등록기준지는

직장 주소는

연락처는

자택 전화 :

휴대 전화 :

직장 전화 :

전자우편(e-mail) :

입니다.

검사는 피의사실의 요지를 설명하고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244조의3에 따라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 및 변호인의 참여 등 조력을 받을 권리가 있음을 피의자에게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검사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

답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 (자필기재)

피 의 자 신 문 조 서(제 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않습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의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검찰청 호 검사실에서 검사는(은) 검찰주사(보) 를(을) 참여하게 한 후, 피의자에 대하여 다시 아래의 권리들이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그 의사를 확인하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이에 검사는 피의사실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피의자를 신문하다.

문

답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 (자필기재)

진술조서

성명 :

주민등록번호 :

직업 :

주거 :

등록기준지 :

직장주소 :

연락처 : (자택 전화) (휴대 전화)

(직장 전화) (전자우편)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검찰청 호 검사실에 임의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진술하다.

1. 피의자와의 관계

저는 피의자 과(와) 인 관계에 있습니다. / 저는

피의자 과(와) 아무런 관계가 없습니다.

1. 피의사실과의 관계

저는 피의사실과 관련하여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의 자격으로서 출석하였습니다.

이때 검사는 진술자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조사하다.

문

답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 (자필기재)

[(별지31호의2)(나)-진술조서-2회이상] <개정 2011.8.8>

진 술 조 서 (제 회)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위의 사람은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 . .
검찰청 호 검사실에 임의 출석하였는바, 검사는 진술자 를(을) 상대로
다음과 같이 전회에 이어 계속 조사하다.

문

답

문

답

문 조서에 진술한 대로 기재되지 아니하였거나 사실과 다른 부분이 있는가요?

답 (자필기재)

진 술 서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거						
등록기준지						
직장 주소						
연락처	자택전화				휴대전화번호	
	직장전화				전자우편 (e-mail)	
본인은 20 검찰청 호 검사실에 피의사건의 (피의자, 피해자, 목격자, 참고인)으로서 출석하여 다음과 같이 임의로 서면 진술하다.						
경찰에서 진술한 경우	☐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은 사실이며, 진술 내용을 보다 명확히 하고자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 경찰에서 진술한 내용 중 사실이 아닌 부분이 있으며, 이와 관련하여 다음 사항을 진술하고자 합니다.					

210mm×297mm

(신문용지54g/m²(재활용품))

진술거부권 및 변호인 조력권 고지 등 확인서

1. 귀하는 일체의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개개의 질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2. 귀하가 진술을 하지 아니하더라도 불이익을 받지 아니합니다.
3. 귀하가 진술을 거부할 권리를 포기하고 행한 진술은 법정에서 유죄의 증거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4. 귀하가 신문을 받을 때에는 변호인을 참여하게 하는 등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문 피의자는 위와 같은 권리들이 있음을 고지받았는가요?

답

문 피의자는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것인가요?

답

문 피의자는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행사할 것인가요?

답

진술자

인

수사 과정 확인서

구 분	내 용
1. 조사 장소 도착 시각	
2. 조사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 시작 시각 : ☐ 종료 시각 :
3. 조서 열람 시작 시각 및 종료 시각	☐ 시작 시각 : ☐ 종료 시각 :
4. 조사 대상자가 조사장소에 도착한 시각과 조사를 시작한 시각에 상당한 시간적 차이가 있는 경우에는 그 이유	
5. 조사가 중단되었다가 재개된 경우에는 그 이유와 중단 시각 및 재개 시각	
년 월 일	
검사 는(은) 를(을)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로(으로)부터 확인받음.	
확인자 : 인	
검 사 : 인	

수사 과정 확인서

구 분		내 용
관 련 사 건	피 의 자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조 사·면 담 자	성 명 (생 년 월 일)	
	사 건 과 의 관 계	
	연 락 처	
수 사 경 과	조 사 장 소 도 착 시 각	
	조 사 장 소 떠 난 시 각	
	조 서 미 작 성 이 유	
	조 사 외 실 시 활 동	
	변 호 인 입 회 여 부	
검사는 위 피조사(면담)자를 조사한 후, 위와 같은 사항에 대해 피조사(면담)자로부터 확인받음. 년 월 일 확인자 : 인 검 사 : 인		

영상녹화 동의서

지방검찰청 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참고인으로 출석하여 진술을 함에 있어 진술과정을 영상녹화하는 것에 대하여 동의합니다.

이
의
의

인

[(별지36호)감정위촉서]

감정위촉서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년 형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감정위촉 검 사 ㉠ 피의자(피내사자, 피진정인) 에 대한 피의(피내사, 피진정)사건에 관하여 아래 사항의 감정을 위촉합니다.	
① 위촉사항	
② 비 고	감정처분허가장은 감정서와 함께 반환하시기 바랍니다.

23231-37711일210mm×297mm

96. 12. 27 승인(신문용지 54g/m²)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수 신	발 신	검찰청
	검사	인
제 목	수사사항조회	
수사상 필요하여 아래사항을 조회하오니 . . .까지 회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 사 건 번 호		② 피 의 사 건 명 ※ 수사상 필요한 경우에만 기재
③ 피 의 자 명		
④ 조회사항	1	
	2	
	3	
	4	
	5	
	6	
	7	

[(별지38호) 사자료표 송부] <개정 2003.7.28>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 사 61182-

수신자 경찰청장 . . .

참 조 과학수사과장 발신자 검찰청검사장

제 목 수사자료표 송부

①	②	③	④	⑤	⑥	⑦ 지 문 원 지		⑧	⑨
작 성 번 호	작 성 연월일	성 명	주민등록 번 호	죄 명	입건전력 발견여부	작 성 여 부		회보일 및처리일	회 보 사 유
						십 지	일 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39호)압수조서] <개정 2007.2.20>

압 수 조 서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년 월 일 시 분 경 에서 검사 은(는) 검찰주사(보) 을(를) 참여하게 하고 아래 경위와 같이 물건을 압수하다.								
①증제 번호	② 물건명	③특기사항						④비고
		수량 등						
		압수이유	몰수대상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 죄 행 위 로 생 겼 거 나 취 득 한 물 건 ☐ 위 대 가로 취득한 물건				
			☐ 장 물					
			☐ 기타 압수가 필요한 이유()					
			발견·압수 경위					
		소지자 (제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수량 등						
		압수이유	몰수대상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 죄 행 위 로 생 겼 거 나 취 득 한 물 건 ☐ 위 대 가로 취득한 물건				
			☐ 장 물					
			☐ 기타 압수가 필요한 이유()					
			발견·압수 경위					
		소지자 (제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수량 등						
		압수이유	물수대상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 죄 행 위 로 생 겼 거 나 취 득 한 물 건 ☐ 위 대 가 로 취 득 한 물 건				
				☐ 장 물				
				☐ 기타 압수가 필요한 이유()				
		발견·압수 경위						
		소지자 (제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수량 등						
		압수이유	물수대상	☐ 범죄행위에 제공되었거나 제공하려고 한 물건 ☐ 범 죄 행 위 로 생 겼 거 나 취 득 한 물 건 ☐ 위 대 가 로 취 득 한 물 건				
				☐ 장 물				
				☐ 기타 압수가 필요한 이유()				
		발견·압수 경위						
		소지자 (제출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소유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전화번호		
☐ 소유권 포기 ☐ 환부 요구								

참여인(형사소송법 제123조, 제124조)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사유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2항(피고인 구속현장에서의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3항(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1항(긴급체포시의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8조 (유류물·임의제출물의 압수)				
	☐ 기타()				
년 월 일					
검찰청					
검사 (인)					
검찰주사(보) (인)					
참여인 (인)					

제 호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압수목록교부서 검 사 (인)

에 대한 당청 형제 호 피의사건에 관하여 로부터 다음

물건을 압수하였으므로 이에 압수목록을 교부합니다.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압수목록교부서	검 사	①인

에 대한 당청 형제 호 피의사건에 관하여 로부터 다음

물건을 압수하였으므로 이에 압수목록을 교부합니다.

압수 목록

[illegible]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별지41호)압수물총목록] <개정 1998.7.3>

[illegible]

23231-38311일

210mm×297mm

98. 2. 25 승인

(신문용지 54g/m²)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기관명)

제 목 : 유가증권 원형보존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유가증권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인바, 원형보존의 필요여부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요	부	비 고

연 번	유가증권 종류	유가증권 번호	비 고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기관명)

제 목 : 압수물 위탁보관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인바, 위탁보관 지휘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연 번	품 종	수 량	비 고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기관명)

제 목 : 압수물 대가보관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인바, 대가보관 지휘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연 번	품 종	수 량	비 고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기관명)

제 목 : 유가증권 폐기처분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인바, 폐기처분 지휘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연 번	품 종	수 량	비 고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기관명)

제 목 : 압수물 환부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물건은 에 대한 피의사건의 증거품인바, 환부 지휘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연 번	품 종	수량	피압수자	환부받을 사람	비 고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별지43호)실황조사]

실 황 조 사 서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 . 시
분 시 구 동 번지에 임하여 검사 는 검찰주사(보)
를 참여하게 하고 다음과 같이 그 실황을 조사하다.

1. 실황조사대상

2. 실황조사의 목적

다음의 각항을 명백하게 하는데 있다.

1.

2.

3.

3. 현장의 부근상황 및 현장의 모양(도면별첨)

4. 실황조사 참여인

본 실황조사는 . . 시 분에 시작하여 동일 시
분에 끝나다.

검 사 ㉠

검찰주사(보) ㉠

23231-38411일

210mm×297mm

93. 5. 18 승인

(신문용지 54g/m²)

○○○○검찰청			
(전화번호)			
년		호	
수 신	검찰청검사장		발 신
제 목		수사촉탁	
		검 사	
당청		년형 제	호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수사상 필요하오니 다음 사항을 조사하여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진 술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거		
	④등록기준지		
피 의 사 실 의 요 지 및 필 요 수 사 사 항	⑤ 피의사실 의 요지		
	⑥ 수사 사 항	1	
		2	
		3	
		4	
		5	

23231-38511일

210mm×297mm

93. 5. 1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45호)공조사건회답] <개정 2008.1.7>

○○○○검찰청			
(전화번호)			
년		호	
수 신	검찰청검사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제 목	공조사건회답	검 사	㉠
호(. .)로 수사촉탁한 (참고인)에 대한 수사사항 을 회답합니다.			
진 술 인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주 거		
	④ 등록기준지		
⑤ 수 사 사 항			
⑥ 비 고			

23231-38611일

210mm×297mm

93. 5. 1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46호)증거보전청구서] <개정 2011.8.8>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증거보전청구 검 사 **인**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다음 사건에 대한 증거의 보전을 청구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피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사 건 의 개 요		
증 명 사 할 실		
증 거 및 보 전 의 방 법		
증 거 보 전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기각하는 취지 및 이 유	판 사	인

[(별지46호의2)증거보전청구서] <신설 2011.8.8>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증거보전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거보전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형사소송법」 제184조에 따라 증거의 보전을 청구합니
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사 건 의 요	별지 증거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증 명 할 실	별지 증거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증거 및 보전 의 방 법	별지 증거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증 거 보 전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별지 증거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 각 하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인

[(별지46호의3)증거보전신청기각서] <신설 2011.8.8>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

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증거보전신청 기각**

다음 피의사건에 관하여 증거보전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증거보전신청을 기각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사 건 의 개 요	별지 증거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증 명 사 할 실	별지 증거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증 거 및 보 전 의 방 법	별지 증거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증 거 보 전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별지 증거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		
○○○ 검찰청		
검 사		
		

권 리 고 지 확 인 서

성 명 : ()

주민등록번호 : (세)

주 거 :

본인은 . . . : 경 에서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되면서
피의사실의 요지,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의 이유, 진술을 거부할 수 있는 권리가 있
음과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음을 고지받고, 변명의 기회가 주어졌음을 확인합니다.

위 확인자

인

위 피의자를 체포·긴급체포·현행범인체포·구속하면서 위와 같이 고지하고 변명의 기회를 주었음
(변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정당한 이유 없이 기명날인 또는 서명을 거부함).

○○○ 검찰청

(직급)

인

○○○○검찰청 (전화번호)	
체 호	
형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체포영장청구
검 사	①인
피의 자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세)
	③ 직 업
	④ 주 거
⑤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고자 년 월 일까지 유효한 체포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⑥ 범죄사실 및 체포를 필 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⑦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 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⑧ 둘 이상의 영장을 청 구하는 취지 및 사유	
⑨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⑩ 현재 수사 중인 다른 범죄 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포영장 존재 시 그 취지 및 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⑪ 발 부 하 지 아 니 하 는 취 지 및 이 유	판사 ①인

210mm×297mm

(일반용지 75g/m²(재활용품))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

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체포영장청구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변 호 인	주거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고자 체포영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0000. 00. 00. 까지 유효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범죄사실 및 체 포를 필 요로 하는 사유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 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 유		
둘 이상의 영장을 청 구하는 취지 및 사유		
재청구의 취지 및 이 유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현재 수사중인 다른 범죄사실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 포 영 장 존재시 그 취지 및 범 죄 사 실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인	

[(별지 48호의 3) 체포영장신청기각서] <신설 2011.8.8>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체포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체포영장신청이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포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	(세)
	번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범 죄 사 실 및 체 포 를 필 요 로 하 는 사 유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 일 을 넘 는 유효기 간 을 필요로 하는 취 지 및 사 유		
둘 이상의 영장을 신청하 는 취 지 및 사 유		
재 신 청 의 취 지 및 이 유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현재 수사중인 다른 범죄사실 에 관하여 발부된 유효한 체 포 영 장 존재시 그 취 지 및 범 죄 사 실	(별지 체포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		
○○○ 검찰청		
검 사 		

○○○검찰청

제 0000-0000 호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보완수사 요구(영장)

다음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접수일자				
진행번호			영장구분 및 영장신청번호	
죄 명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보완수사요구사항				
○○○ 검찰청				
검 사 인				

[(별지50호)체포영장등 집행지휘]

○○○○검찰청 (전화번호)		
영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체포·구속영장 집행지휘	검 사 ①인
아래 사람에 대한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을 지휘함		
피고인	① 성 명	()
피의자	② 주 민 등 록 번 호	(세)
증 인	③ 주 거	
④ 죄 명		
⑤ 체 포 · 구 속 영 장 발 부 연 월 일		
⑥ 체 포 · 구 속 영 장 번 호		
첨 부 : 1. 체포영장 1통 1. 구속영장 1통		

23231-39411일

210mm×297mm

96. 12. 27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51호)체포영장등집행촉탁]

○○○○검찰청		
(전화번호)		
영 . . .		
수 신	검찰청검사	발 신
	지청장	검 사
제 목 체포·구속영장 집행촉탁		
아래와 같이 체포·구속영장의 집행을 촉탁함		
피고인	① 성 명	()
피의자	②주민등록번호	(세)
증 인	③ 주 거	
④ 죄 명		
⑤ 촉 탁 사 유		
⑥ 비 고		
첨 부 : 1. 체포영장 1통		
1. 구속영장 1통		

23231-39511일 210mm×297mm

96. 12. 27 승인 (신문용지 54g/m²)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영장 반환 검 사 인

아래와 같은 사유로 영장을 반환합니다.

영 장 종 별	
영 장 발 부 일	
영 장 번 호	
대 상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 명	
집 행 불 능 의 유 사	
첨 부 : 1. 체포 · 구속, 압수 · 수색 · 검증영장 1부. 2. 체포 · 구속, 압수 · 수색 · 검증영장 집행지휘서 1부. 3. 집행불능보고서 1부. 끝.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영장 반환 검 사 인

아래와 같이 영장집행이 불능되어 영장 반환보고가 있는바, 이에 동 영장을 반환합니다.

영 장 종 별	
영 장 발 부 일	
영 장 번 호	
대 상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 명	
집 행 불 능 의 유 사	별지 영장반환보고서 기재내용과 같음
첨 부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형제 호

수 신 자

제 목 체 포 • 구 속 등 통 지

1. 피의자

성 명 :

생 년 월 일 :

주 거 :

2. 위 사람을 . . . : 피의사건으로 에서 체포 • 긴급체포 • 현행범인체포 • 구속하여 에 인치하고 에 구금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3. 위 피의자의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는 변호인을 선임할 수 있습니다.

4. 체포 • 구속된 위 피의자 본인 또는 그 변호인, 법정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 동거인, 가족 또는 고용주가 00지방법원(00 지원)에 체포 • 구속의 적부심사를 청구할 수 있습니다.

첨부 : 범죄사실 및 체포 • 긴급체포 • 현행범인체포 • 구속의 이유 1부

○○○검찰청

검사

인

○○○○검찰청

(전화번호)

결 정

사 건 번 호 :

결 정 명 : 피의자접견등금지결정

피 의 자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죄 명 :

체포·구속일자 :

접견 등 금지기간 : . . . ~ . . . (일)

주 문 : 「형사소송법」 제200조의6에 따라 준용되는 같은 법 제91조에 따라 피의자에 대한 접견 등을 금지한다.

이 유 :

. . .

○○○○검찰청

검사

인

[(별지55호)접견등금지지휘서]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접견 등 금지 지휘	검 사 ㉠
아래 피의자(피고인)의 접견을 금지함	
피의자 또는 피 고인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세)
	③ 직 업
	④ 주 거
⑤ 죄 명	
⑥ 체 포 . 구 속 일 자	
⑦ 비 고	
첨 부 : 접견 등 금지 결정서 등본 1부	

○○○○검찰청

(전화번호)

결 정

사 건 번 호 :

결 정 명 : 접견 등 금지 취소 결정

피의자·피고인 :

주민등록번호 :

직 업 :

주 거 :

죄 명 :

접견등금지일자 :

주 문 :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접견 등 금지 결정을 취소한다.

이 유 :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접견 등 금지를 계속할 필요가 없다고 인정되므로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 . .

검찰청

검사

인

○○○○검찰청

(00-0000-0000)

제 목 : 피의자 석방

검 사

인

아래 피의자를 즉시 석방한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죄명		
구분	체포, 긴급체포, 현행범인체포	
체포	일시	년 월 일 시 분
	장소	
	사유	
석방	일시	년 월 일 시 분
	장소	
	사유	
긴급체포 및 석방한 검사 의 성명		
비고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기관명)

제 목 : 피의자석방 지휘(승인)서

다음 사람에 대한 석방 건의(승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승인)합니다.

가	부	비 고

피의자	
죄명	
체포·구속 유형	
체포·구속 일시	
검 사 지 휘(의 견)	
○○○ 검찰청	
검 사	인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장 발신 : ○○○검찰청

제 목 : 피의자석방통지 검사 인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영장발부 연 월 일	체포·구속 영 장 번 호	피 의 자	죄 명	석 방 연 월 일	석 방 사 유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긴 급 체 포 서	
제 0000-0000 호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00조의3 제1항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함. 0000. 00. 00. ○○○검찰청 검 사 성 명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별지와 같음
체포자의 관직 및 성명	
인 치 한 일 시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구금을 집행한 자의 관직 및 성명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긴급체포 승인요청에 대한 결정서

다음 사람에 대한 긴급체포승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가	부	비 고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긴 급 체 포 한		
일 시		
긴 급 체 포 한		
장 소		
긴 급 체 포 한		
자 의		
관 직 및 성 명		
인 치 한		
일 시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검 사 의 견		
○○○ 검찰청		
검 사		인

○○○검찰청

제 0000-0000 호

수 신 : ○○○(기관명)

제 목 :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한 지휘

다음 사람에 대한 긴급체포승인건의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긴 급 체 포 한		
일 시		
긴 급 체 포 한		
장 소		
긴 급 체 포 한		
자 의		
관 직 및 성 명		
인 치 한		
일 시		
인 치 한		
장 소		
구 금 한 일 시		
구 금 한 장 소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별지62호)피긴급체포자석방통지서 (검사체포)] <신설 2011.8.8>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

검 사



아래와 같이 피긴급체포자를 석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피 긴 급 체 포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긴 급 체 포 일 시	
긴 급 체 포 장 소	
죄 명	
긴급체포하게된 구체적 이유	별첨 긴급체포서 ‘범죄사실 및 체포의 사유’ 와 같음
석 방 지 휘 검 사	
석 방 한 일 시	
석 방 한 장 소	
석 방 사 유	☐ 구속영장청구 불요 ☐ 추가수사 필요 ☐ 기타
석방한자의관직 및 성명	
첨 부 : 긴급체포서 사본 1부. 끝.	

[(별지62호의2)피긴급체포자석방통지서 (사경체포)] <신설 2011.8.8>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피긴급체포자 석방통지**

검 사 **인**

아래와 같이 피긴급체포자 석방보고가 있는바, 피긴급체포자를
석방하였음을 통지합니다.

피 긴 급 체 포 자	성명
	주민등록 세
	번호
	직업
	주거
긴 급 체 포 일 시	
죄 명	
석 방 지 휘 검 사	
석 방 한 일 시	
석 방 한 장 소	
석 방 사 유	☐ 구속영장청구 불요 ☐ 추가수사 필요 ☐ 기타
	별지 피긴급체포자석방보고서 기재내용과 같음
석 방 한 자 의 관 직 및 성 명	

현행범인체포서		
피 의 자	① 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 직업	
	④ 주 거	
⑤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함		
년 월 일		
○○○○검찰청 검사 인		
⑥ 체 포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⑦ 체 포 한 장 소		
⑧ 범 죄 사 실 및 체 포 의 사 유		
⑨ 체 포 자 의 관 직 및 성 명		
⑩ 인 치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⑪ 인 치 한 장 소		
⑫ 구 금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⑬ 구 금 한 장 소		
⑭ 구 금 을 집 행 한 자 의 관 직 및 성 명		

[(별지64호)현행범인인수서]

현행범인인수서		
피 의 자	① 성 명	()
	② 주 민 등 록 번 호	(세)
	③ 직 업	
	④ 주 거	
⑤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형사소송법 제213조 제1항의 규정에 따라 동인을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인수함 ○○○○검찰청 검사 인		
⑥ 체 포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⑦ 체 포 한 장 소		
체포자	⑧ 성 명	
	⑨ 주민등록번호	
	⑩ 주 거	
⑪범죄사실및체포의사유		
⑫ 인 수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⑬ 인 수 한 장 소		
⑭인수한자의관직및성명		
⑮ 인 치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⑯인 치 한 장 소		
⑰구 금 한 일 시		년 월 일 시 분
⑱구 금 한 장 소		
⑲구금한자의관직및성명		

23231-69311H]

210mm×297mm

96.12.27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65호)피의자석방명령]

○○○○검찰청

(전화번호)

수 신 : ○○○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 피의자석방명령

검 사

㉠

아래 피의자를 즉시 석방할 것을 명함.

피 의 자	① 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 직 업	
	④ 주 거	
⑤ 죄 명		
⑥체포·긴급체포·현행 범인체포·구속일시		년 월 일 시 분
⑦체포·긴급체포·현행 범인체포·구속장소		
⑧체포·긴급체포·현행 범인체포·구속사유		
⑨ 석 방 사 유		
⑩ 비 고		

23231-69511일

210mm×297mm

96.12.27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66호)사건송치명령]

○○○○검찰청			
(전화번호)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 사건송치명령		검 사	㉠
아래 사건을 즉시 송치할 것을 명함			
① 사 건 번 호		년 제 호	
② 수 리 연 월 일		년 월 일	
③ 수 리 사 유			
④ 수 사 담 당 자			
피 의 자	⑤ 성 명		
	⑥ 주 민 등 록 번 호		
	⑦ 직 업		
	⑧ 주 거		
⑨ 죄 명			
⑩ 송 치 명 령 사 유			
⑪ 비 고			

23231-69611일

210mm×297mm

96.12.27 승인

(신문용지 54g/m²)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수사관계서류 등 송부

검 사 인

다음 사람에 대한 귀원 호 체포·구속적부심사청구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수사관계서류 등 제출이 있는바, 이를 송부하니 심사 후 반송바랍니다.

피 체 포 · 구 속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체 포 · 구 속 일 자	
지 정 된 심 문 기 일	
비 고	

○○○검찰청		
(00-0000-0000)		
21	적제 호	
21	구제 호	
21	보제 호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적부심보증금납입석방피의자		
제 목	구속집행정지자	
시찰조회요청		
검 사		
보석자		
아래 사람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피 고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죄 명		
결 정 법 원 검 찰 청		법 원 검찰청
석 방 연 월 일		년 월 일
석 방 경 찰 서, 구 치 소, 교 도 소		
석 방 사 유		
제 한 주 거 지		
신병인수인또는보호자		
비 고		

○○○검찰청

(00-0000-0000)

. . .

수 신 ○○○구치소장·교도소장·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석방지휘 검 사 ㉠

아래와 같이 석방을 지휘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죄 명		
체 포 · 구 속 연 월 일		
선 고 / 결 정 연 월 일		
석 방 사 유		
비 고		

[(별지70호)적부심보증금몰수청구서]

		○○○○검찰청	
		(전화번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적부심보증금몰수청구서	검 사	인
아래 피의자에 대한 적부심보증금 전부에 대하여 몰수 결정을 하여주시			
기 바랍니다.			
피 의 자	① 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 주 거		
④ 죄 명			
⑤ 석 방 결 정		. . . 법원	
⑥ 적 부 심 보 증 금		원	
판 결	⑦ 선 고	. . . 법원	
	⑧ 형 명 ·형 기		
	⑨ 확 정	. . . 법원	
⑩ 청 구 사 유			
⑪ 첨 부 기 록		권	

23231-70211일 210mm×297mm

96.12.27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71호)적부심보증보험금지급청구서]

○○○○검찰청				
(전화번호)				
. . .				
수 신	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발 신	검찰청
제 목	적부심보증보험금지급청구		검 사	인
아래 적부심보증보험금에 대하여 . . . 법원으로부터				
몰수결정이 있었으므로 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증 권 번 호		제 호		
보 험 계 약 자		피 보 험 자		
석 방	사 건 번 호	사 건 명		
허 가	피 의 자	(주민등록번호)		
	적부심보증보험금	원		
내 용				
붙 임 : 1. 적부심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2. 적부심보증보험금몰수결정서 사본 1부				

23231-70311일 210mm×297mm

96.12.27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72호)구속영장청구서(사전직청구)] <개정 2011.8.8>

○ ○ ○ 검 찰 청

(0000-0000)

구 호

형 호 0000. 0

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구속영장청구(사전)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별지72호의2)구속영장청구서(사후직청구)] <개정 2011.8.8>

○ ○ ○ 검 찰 청

(0000-0000)

구 호

제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구속영장청구(사후)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인 치 한 일 시 · 장 소	
구 금 한 일 시 · 장 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 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청구의취지및이유	(별지와 같음)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별지72호의3)구속영장청구서(사후 긴급체포)] <개정 2011.8.8>

○ ○ ○ 검 찰 청

(0000-0000)

구 호

제 호 0000. 0

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구속영장청구(사후)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긴급체포 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인치한 일시 · 장소		
구금한 일시 · 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필 요 적 고 려 사 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 의 자 의 지 정 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 락 처		
재 청 구 의 취 지 및 이 유	(별지와 같음)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인

[별지72호의4호)구속영장청구서(사후 현행범인체포)] <개정 2011.8.8>

○ ○ ○ 검 찰 청

(0000-0000)

구 호

제 호 0000. 0

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구속영장청구(사후)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현행범인으로 체포 하였는바,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인치한 일시 · 장소	
구금한 일시 · 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필 요 적 고 려 사 항	☐ 범죄의 중대성 ☐ 재범의 위험성 ☐ 피해자 · 중요참고인 등에 대한 위해 우려 ☐ 기타 사유 ※ 구체적 내용은 별지와 같음
피 의 자 의 지 정 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 락 처	
재 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와 같음)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인

[(별지73호)구속영장청구서 (사경신청 사전)] <신설 2011.8.8>
○ ○ ○ **검찰청**
(0000-0000)

제 호 0
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구속영장청구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구속영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수통의 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별지73호의2)구속영장청구서(사경신청 사후 체포영장)] <신설 2011.8.8>
○ ○ ○ **검찰청**
(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
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구속영장청구 검 사 **인**

피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호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하고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체포한 일시		
체포한 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른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	판사	인

[(별지73호의3)구속영장청구서(사경신청 사후 긴급체포)] <신설 2011.8.8>

○ ○ ○ **검찰청**
(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
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구속영장청구** 검 사 인

피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호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체포 하고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인을 에 구속하고자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체포한 일시		
체포한 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	판사	인

○ ○ ○ 검 찰 청

(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구속영장청구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현행범인으로 체포 하고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인을 에 구속하고 자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체 포 한 일 시	
체 포 한 장 소	
인치한 일시 · 장소	
구금한 일시 · 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필 요 적 고 려 사 항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피 의 자 의 지 정 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 락 처	
재 청 구 의 취 지 및 이 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인

[(별지74)구속영장신청기각서 (사전)] <신설 2011.8.8>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구속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의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범죄사실 및 체포 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 기간을 필요로 하 는 취지 및 사유	
수통의 영장을 신 청하는 취지와 사 유	
재신청의 취지 및 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유	
○○○ 검찰청	
검 사	
	

210mm×297mm [일반용지 60g/m² (재활용품)]

[(별지74호의2)구속영장친성기각서 (사후 체포영장)] <신설 2011.8.8>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구속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체포영장에 의하여 체포
하고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체포한 일시·장소	
인치한 일시·장소	
구금한 일시·장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이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른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 락 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	
○○○ 검찰청	
검 사 인	

[(별지 74호의3)구속영장신청기각서 (사후 긴급체포)] <신설 2011.8.8>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

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구속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체포하고 구속영장신청
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체 포 한 일 시 · 장 소	
인 치 한 일 시 · 장 소	
구 금 한 일 시 · 장 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별지74호의4)구속영장신청기각서(사후 현행범인체포)] <신설 2011.8.8>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구속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현행범인으로 체포하고
구속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구속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체 포 한 일 시 · 장 소	
인 치 한 일 시 · 장 소	
구 금 한 일 시 · 장 소	
범죄사실 및 구속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필요적 고려사항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피의자의 지정에 따라 체포이유 등이 통지된 자의 성명 및 연락처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 구속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별지75호)의견서]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수 신	법원	발 신
제 목	의견서	검찰청
검 사 ㉠		
구속영장청구에 따른 피의자심문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의견을 개진합니다.		
① 피 의 자		
② 죄 명		
③ 의견 요청 요지		
⑤ 의 견		법원접수인

23231-70611일

210mm×297mm

96.12.27 승인

(신문용지 54g/m²)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형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	검 사 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속기·녹음·영상녹화를 신청합니다.			
① 대상 사건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명		
	구속영장 청구일		
② 속기·녹음·영상녹화 범위	☐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 전부 ☐ 구속 전 피의자심문 과정 일부 - (일부의 경우) 구체적 범위 :		
③ 신청 대상	☐ 속기 ☐ 녹음 ☐ 영상녹화		
④ 속기록·녹음물 · 영상녹화물 사본 청구	☐ 청구 ☐ 불청구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형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 사본 교부 청구 검 사 ㉠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속기록·녹음물·영상녹화물 사본 교부를 청구합니다.			
① 대상 사건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명		
	구속영장 청구일		
② 청구 대상	☐ 속기록 사본 ☐ 녹음물 사본 ☐ 영상녹화물 사본		

210mm×297mm

(일반용지75g/m²(재활용품))

○○○검찰청	
(전화번호)	
구연	
형 제 호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구속기간연장신청 검 사 인
아래와 같이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합니다.	
① 성 명	
② 주 거	
③ 주민등록번호	(세)
④ 직 업	
⑤ 피 의 사 건	
⑥ 구 속 연 월 일	. . .
⑦ 송 치 연 월 일	. . .
⑧ 인치연월일	. . .
⑨ 연장요구기한	. . . 까지
이 유	

[(별지78호)구속기간연장통지서]

○○○○검찰청		
(전화번호)		
검 . . .		
수 신	교도소장(구치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구속기간연장통지	검 사 인
아래와 같이 구속기간을 연장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	① 성 명	
	② 주민등록번호	
③ 죄 명		
④ 구 속 연 월 일		. . .
⑤ 송 치 연 월 일		. . .
⑥ 연 장 연 월 일		. . .
첨 부 : 구속기간연장결정등본 1통		

23231-39911일 210mm×297mm

93.5.1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79호)피고인접견등금지결정청구서]

○○○○검찰청			
(전화번호)			
형제	호	. . .	
수신	법원 재판부명	발신	검찰청
제목	피고인접견등금지결정청구		검사 ①인
아래 피고인은 외부와의 접촉을 통하여 죄증을 인멸할 염려가 있으므로 형사소송법 제34조에 규정된 사람 이외의 타인과의 접견(또는 서류, 기타물건의 수수)을 금지하는 결정을 하여주기 바랍니다.			
① 사건 번호			
② 피 고 사 건 명			
피 고 인	③ 성 명	④ 주민등록번호	
	⑤ 주 거		
⑥ 구 속 장 소			
⑦ 접 견 금 지 기 간		. . . 부터 . . . 까지	
⑧ 비 고		1. 공소제기일 : . . .	

23231-40511일210mm×297mm

93.5.18 승인(신문용지 54g/m²)

[(별지80호)피고인접견등금지취소청구서]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피고인접견등금지취소청구
검 사	인
다음 피고인에 대한 접견등금지결정은 그 사유가 해제되었으므로 취소를 청구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② 죄 명	
피 고 인	③ 성 명 ()
	④주민등록번호 (세)
	⑤ 직 업
	⑥ 주 거
⑦ 접 견 등 금 지 결 정 일	
⑧ 결 정 취 소 사 유	
⑨ 비 고	

23231-40411일210mm×297mm

96.12.27 승인(신문용지 54g/m²)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감정유치장청구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동인을 아래와 같이 감정유치하고자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감정유치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범 죄 사 실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이상의 유치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유 치 할 장 소		
유 치 기 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00 일간)	
감정의 목적 및 이유		
감 정 인	성 명	
	직 업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별지81호의2)감정유치장청구(사경신청)] <신설 2011.8.8>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감정유치장 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유치장신청이 있
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감정유치장의 발
부를 청구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범 죄 사 실	별지 감정유치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 기간을 필요로 하 는 취 지 와 사 유		
둘이상의 유치장 을 청구하는 취지 와 사 유		
유 치 할 장 소		
유 치 기 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00 일간)	
감정의 목적 및 이 유	별지 감정유치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감 정 인	성 명	
	직 업	
발부하지 아니하 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별지 제82서식 감정유치장신청기각] <신설 2011.8.8>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감정유치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감정유치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감정유치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범 죄 사 실	별지 감정유치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 기간을 필요로하 는 취 지 와 사 유		
둘이상의 유치장 을 신청하는 취지 와 사 유		
유 치 할 장 소		
유 치 기 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00 일간)	
감정의 목적 및 이 유	별지 감정유치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감 정 인	성 명	
	직 업	
기각하지 취지 및 이 유		
○○○ 검찰청		
검 사		인

○○○검찰청	
(00-0000-0000)	
집제 호	. . .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감정유치장집행지휘	검 사 인
아래 사람에게 대한 감정유치장의 집행을 지휘합니다.	
죄 명	
피 고 인 피 의 자	성 명
	주 거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 . 생
감 정 유 치 장 발 부 일	. . .
감 정 유 치 장 소	
감 정 유 치 기 간	. . . ~ . . . (일간)
피 고 인 · 피 의 자 에 대 한 간 수 명 령	유 무
비 고	
첨 부 : 감정유치장등본 1통	

[(별지84호)감정유치해제청구서]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감정유치해제청구	검 사	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감정유치의 해제를 청구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② 죄 명			
인 적 사 항	③ 성 명	④ 직 업	
	⑤ 생 년 월 일	⑥ 연 령	
	⑦ 주 거		
⑧ 감 정 유 치 처 분 연 월 일			
⑨ 감 정 유 치 목 적			
⑩ 감 정 유 치 기 간			
⑪ 감 정 유 치 장 소			
⑫ 취 소 를 필 요 로 하 는 사 유			
⑬ 비 고			
첨 부 :			

23231-41311일

210mm×297mm

93.5.18 승인

(신문용지 54g/m²)

○○○검찰청

(00-0000-0000)

집제 호 . . .

수 신 ○○○교도소장(구치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출감지휘 검 사 인

귀소에 수용중인 아래 사람에 대하여 감정을 하기 위하여 . . .부터
. . . 까지 에 유치한다는 감정유치장이 발부되었으므로
경찰서장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합니다.

피 고 인 피 의 자	성 명	
	주 거	
	주 민 등 록 번 호	
	생 년 월 일	. . . 생
죄 명		
구 속 연 월 일		. . .
감 정 유 치 처 분		. . . 법원
신 병 인 수 경 찰 서		경찰서
첨 부		감정유치장등본 1통

○○○검찰청

(00-0000-0000)

집제 호 . . .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호송지휘 검 사 인

아래사람을 교도소(병원)에서 인수받아 병원(교도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합니다.

피고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소	
사 건 번 호	형공	형집행정지명부
죄 명		
결정	법 원 및 검 찰 청	법원 검찰청
	일 자 및 구 분	. . .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호 송 병 원		

첨 부 : 1. 정지자인도지휘서 1통

○○○검찰청

(00-0000-0000)

집제 호 . . .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감호지휘 검 사 인

아래 피의자(피고인)의 감정유치 기간 중 감호할 것을 지휘합니다.

피 의 자 또는 피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사 건 번 호		
죄 명		
유 치 기 간		
유 치 장 소		
유 치 사 유		

○○○검찰청		
(00-0000-0000)		
집제 호 . . .		
수 신	○○○구치소장(교도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수감지휘	검 사 ㉠
보석 취소		
아래 사람에게 대하여 별첨 결정서등본과 같이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감정유치 해제		
있었으므로 동인을 귀소에 수감할 것을 지휘합니다.		
피 고 인	성 명	
	주 거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 . 생
죄 명		
결 정 구 분	보석취소결정 구속집행정지취소결정 감정유치해제결정	
결 정 연 월 일	. . .	
결 정 법 원	법원	
비 고		
첨 부	1.결정서등본 1통	

[(별지89호)수감통지서]

○○○○검찰청			
(전화번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수감통지	검 사	㉠
아래와 같이 수감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피 고 인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피 의 자	④ 주 거		
⑤ 수 감 사 유	감정유치기간만료 감정유치처분취소결정 보석취소결정 구속집행정지취소결정		
⑥ 수감일시및장소	. . .		
⑦ 비 고			

23231-41811일

210mm×297mm

93.5.1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90호)감정피의자입원의뢰서]

○○○○검찰청			
(전화번호)			
집 행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참 조		검 사	㉠
제 목 감정피의자 입원의뢰			
아래 피의자의 감정을 위한 입원을 의뢰합니다.			
사 건 번 호	형제 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거)		
감정유치장발부일			
감 정 유 치 기 간			
감 정 목 적			
비 고			

23231-62411일210mm×297mm

93.5.18 승인(신문용지 54g/m²)

[(별지91호)감정피의자퇴원의뢰서]

○○○○검찰청			
(전화번호)			
집 행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참 조		검 사	인
제 목 감정피의자 퇴원의뢰			
. . . 귀소(원)에 입원의뢰한 아래 피의자의 퇴원을 의뢰합니다.			
사 건 번 호	형 제 호		죄 명
피 의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소 (거)		
입 원 일 자			
퇴 원 사 유			
비 고			

23231-62511일210mm×297mm

93.5.18 승인(신문용지 54g/m²)

○○○검찰청					
(00-0000-0000)					
집제 호 . . .					
수 신		○○○구치소장(교도소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피의자 호송지휘 피고인		검 사 인	
교도소 (구치소)에 수용 중인 아래 피의자 피고인 인수받아 다음 장소에 호송할 것을 지휘합니다 .					
피의자 또는 피고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연 령		
사 건 번 호					
죄 명					
호 송	연 월 일	. . .	☐ 오 전 ☐ 오 후	시 분	
	장 소				
	사 유				
재 수용 예정 일					
첨 부 1. 피의자 인도지휘서 1통 피고인					

○○○검찰청	
(00-0000-0000)	
집제	호
수신	○○○구치소장(교도소장)
발신	○○○검찰청
제목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인도지휘
검사	인
아래 구속집행정지자(형집행정지자)를 경찰서장에게 인도할 것을 지휘합니다.	
피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사건번호	형공 형집행정지명부
죄명	
결정	법원또는검찰청
	법원 검찰청
일자및구분	구속집행정지 형집행정지
신병인수경찰서	경찰서
첨부 1. 결정서등본 1통	

○○○검찰청		
(00-0000-0000)		
21	적제 호	
21	구제 호	
21	보제 호	
수 신	○○○구치소(교도소장)	
발 신	○○○검찰청	
적부심보증금납입석방피의자		
제 목	구속집행정지자	
시찰조회		
검 사		
보석자		
아래 사람에 대한 이면 기재사항을 면밀히 조사하여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피 고 인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죄 명		
결 정 법 원 검 찰 청		법 원 검찰청
석 방 연 월 일		년 월 일
석 방 경 찰 서, 구 치 소, 교 도 소		
석 방 사 유		
제 한 주 거 지		
신병인수인또는보호자		
비 고		

○○○검찰청			
(00-0000-0000)			
집제	호	. . .	
수신	교도소장	발신	검찰청
	구치소장		
제 목	구속집행정지자	재수용 지휘	검사
	보석자		인
		경찰서장에게 인도한 아래	피의자 피고인
귀소에 재수용할 것을 지휘합니다.			
피의자 또는 피고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사건번호	형		
죄명			
재수용사유			
비고			

○ ○ ○ 검 찰 청
(0000-0000)

수 호
형 호 0000. 0
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청구(사전)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 · 수색 · 검증 하 고자 0000. 00. 00. 까지 유효한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압 수 할 물 건	
수색 · 검증할 장소, 신 체 또는 물 건	
범죄사실 및 압수 · 수색 · 검증을 필요 로 하는 사 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 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 유	
둘이상의 영장을 청구 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 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 별 · 건 강 상 태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인

[(별지97)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서(계좌)] <개정 2011.8.8>

○ ○ ○ **검찰청**

(0000-0000)

수 호

형 호 0000. 0

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청구 (금융계좌추적용)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 · 수색 · 검증 하고자 0000. 00. 00. 까지 유효한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대 상 계 좌	계 좌 명 의 인	☐ 피의자 본인 ☐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개설은행 · 계좌번호	
	거 래 기 간	
	거래정보 등의 내용	
압 수 할 물 건		
수색 · 검증할 장소 또는 물 건		
범죄사실 및 압수 · 수색 · 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7일을 넘는 유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 지 와 사 유		
둘 이상의 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 지 와 사 유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인		

○ ○ ○ ○ 검 찰 청

(전화번호)

수 호
징 호

수 신: ○○○법원장

발 신: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압수·수색·검증 영장청구(몰수·추징 집행)

피 의 자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위의 대상자에 대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고자 0000. 00. 00.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압 수 할 물 건 수 색 · 검 증 할 장 소 , 신 체 또 는 물 건 몰수·추징 대상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 요 로 하 는 취 지 와 사 유 둘이상의 영장을 청구하 는 취 지 와 사 유 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 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 별 · 건 강 상 태 발 부 하 지 아 니 하는 취 지 및 이 유	별지와 같음	판 사 인

○ ○ ○ ○ 검 찰 청

(전화번호)

수 징 호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
[몰수·추징 집행(금융계좌추적용)]

피 의 자	성 명 (한글)
	(한자)
	주민등록번호 (세)
	직 업 주 거
변 호 인	

위의 대상자에 대한 「공무원범죄에 관한 몰수 특례법」 제9조의3제3항(「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0조의3제3항)에 따른 몰수·추징의 집행을 위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하고자 0000. 00. 00.까지 유효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대 상 계 좌	계좌명의인 []대상자 본인 []제3자(인적사항은 별지와 같음)
	개설은행·계좌번호
	거래기간
	거래정보 등의 내용
압 수 할 물 건 수색·검증할 장소 또 는 물 건 몰수·추징 대상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7일을 넘는 유효 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 이상의 영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사유 일 출 전 일 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 지 와 사 유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 지 및 이 유	(별지와 같음)
판 사 인	

[(별지100호) 수·수색·검증영장 청구(사전)] <개정 2015.11.12.>

○ ○ ○ 검 찰 청

(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0000. 00. 00. 까지 유효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압 수 할 물 건	
수 색 · 검 증 할 장 소 , 신 체 또 는 물 건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사유	
둘이상의 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및 사유	
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별·건강상태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	판사 인

[(별지100호의2)압수·수색·검증영장 청구(계좌)] <개정 2015.11.12.>

○ ○ ○ 검 찰 청

(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

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금융계좌추적용]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압수·수색·검증영장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0000. 00. 00. 까지 유효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대 상 계 좌	계 좌 명 의 인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개설은행·계좌번호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거 래 기 간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거래정보 등의 내용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압 수 할 물 건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수색·검증할 장소, 신체 또는 물건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범죄사실 및 압수·수색·검증을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지와 사유		
둘이상의 영장을 청구하는 취지 와 사유		
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인

[(별지100호의3)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후)] <개정 2011.8.8>

○ ○ ○ **검찰청**

(0000-0000)

수 호

형 호 0000. 0

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청구(사후)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압수 · 수색 · 검증 하고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긴급 압수 · 수색 · 검증한 자의 관직, 성명		
긴급 압수 · 수색 · 검증한 일시		
긴급 수색 · 검증한 장소, 신체 또는 물건		
긴급 압수한 물건		
범죄사실 및 긴급압수 · 수색 · 검증한 사유	별지와 같음	
체포한 일시 및 장소 (형사소송법 제217조 제2항에 따른 경우)		
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사유		
신체검사를 한 자의 성 별 · 건 강 상 태		
영장 없이 압수한 경우 그 사유	☐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7조제1항(긴급체포시의 압수) ☐ 기타()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인	

[(별지100호의4)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후)] <신설 2011.8.8>

○ ○ ○ **검찰청**

(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

검찰청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청구[사후]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의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긴급 압수·수색·검증한 자의 관직·성명	
긴급 압수·수색·검 증 한 일 시	
긴급 수색·검증한 장소·신체 또는 물건	
긴급 압수한 물건	
범죄사실 및 긴급 압수·수색·검증한 사유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체포한 일시 및 장소 (형사소송법 제217조제2항에 따른 경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한 사유	
신체검사를 한 자의 성 별 · 건 강 상 태	
영 장 없 이 압수한 경 우 그 사 유	☐ 형사소송법 제216조제1항제2호(체포현장에서의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6조제3항(범죄장소에서의 압수) ☐ 형사소송법 제217조제1항(긴급체포시의 압수) ☐ 기타()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인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

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 · 수색 · 검증영장
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압 수 할 물 건	
수색 · 검증할 장소, 신 체 또 는 물 건	
범죄사실 및 압수 · 수색 · 검증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별지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 을 필 요 로 하 는 사 유	
둘이상의 영장을 신 청하는 취지 및 사 유	
일출 전 일몰 후 집행 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 유	
신체검사를 받을 자의 성 별 · 건 강 상 태	
기각하는 취지 및 이 유	
○○○ 검찰청	
검 사 인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
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신청 기각[금융계좌추적용]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대 상 계 좌	계좌명의인 별지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 과 같음
	개설은행 · 계좌번호 별지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 과 같음
	거래기간 별지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 과 같음
	거래정보 등의 내용 별지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 과 같음
압 수 할 물 건	별지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수색 · 검증할 장소, 신 체 또 는 물 건	별지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범죄사실 및 압수 · 수색 · 검증을 필 요로 하는 사유	별지 압수 · 수색 · 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 을 필요로 하는 사 유	
둘이상의 영장을 신 청하는 취지 및 사 유	
일출 전 일몰 후 집행을 필요로 하는 취지 및 사유	
기각하는 취지 및 이 유	
○○○ 검 찰 청 검 사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 기각[사후]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 압수·수색·검증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호
	직업
	주거
변 호 인	
긴급압수·수색·검증 한자의 관직·성명	
긴급 압수·수색·검 증 한 일 시	
긴급 수색·검증한 장소·신체 또는 물건	별지 압수·수색·검증영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긴급 압수한 물건	
범죄사실 및 긴급 압수·수색·검증한 사유	
체포한 일시 및 장소(형사소송법제217조제2항에 따른 경우)	
일출 전 또는 일몰 후 집행을 한 사유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별지101호)증명서]

○○○○검찰청
(전화번호)

검			
수검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증명서	검사	인
	에 대한	사건에 대하여	에서 을

수색한 결과 증거물 또는 몰수할 물건이 없음을 증명합니다.
23231-43411일 210mm×297mm

93.5.18 승인 (신문용지 54g/m²)

전자정보 삭제·폐기 또는 반환 확인서

○○○검찰청 형제 호 사건의 압수·수색·검증 과정에서 확보한 전자정보 중 압수한 전자정보의 목록에 포함되지 아니한 전자정보를 아래와 같이 삭제·폐기하거나 반환하였음을 확인함

○○○검찰청 검사 인

■ 대상 전자정보

사건번호	형제 호	지원번호	지원 호
주임검사		압수일시	. . .
압수장소			
압수된 전자정보			

■ 삭제·폐기 또는 반환 대상 확인

(삭제·폐기) ☐ 수사기관의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
☐ 탐색·복제·출력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남겨진 전자정보

(매체 반환) ☐ 반출된 정보저장매체 원본 내 전자정보
☐ 피압수자의 정보저장매체등에 저장되어 반출된 전자정보

■ 삭제·폐기 확인

전자정보	
일시	. . . 00:00경
장소	
삭제·폐기 방법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은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던 삭제·폐기 대상 전자정보를 위와 같이 삭제·폐기하였음	
확인자 : 디지털포렌식 수사관 ○○○	

■ 반환 확인

전자정보(매체)		
일시	0000. 0. 0. 00:00경	
장소		
수령자	(성명)	(연락처)
검찰주사(보) ○○○은 주임검사의 지휘에 따라 반환 대상 전자정보가 저장되어 있는 정보저장매체등 원본/복제본을 반환하는 방식으로 위와 같이 반환하였음		
. . .		
확인자 : 검찰주사(보) ○○○		

[(별지104호)감정처분허가장청구] <개정 2011.8.8>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
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감정처분허가장청구 검 사 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 감정인이 아래와 같이
감정에 필요한 처분을 할 수 있도록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감정처분허가장의 발부
를 청구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감 정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감 정 위 촉 연 월 일		
감 정 위 촉 사 항		
감 정 장 소		
감 정 처 분 허 가 장 유 효 기 간		
범 죄 사 실		
7일을 넘는 유효기 간을 필요로 하는 취 지 와 사 유		
둘이상의 허가장을 청 구 하는 취 지 와 사 유		
감정에 필요한 처분 의 이 유		
변 호 인		
비 고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인

[(별지105호) 정처분허가장청구(사경)] <신설 2011.8.8>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
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감정처분허가장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고 인정되므로 0000. 00. 00. 까지 유효한 감정처분허가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감 정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감 정 위 촉 연 월 일		
감 정 위 촉 사 항		
감 정 장 소		
감 정 처 분 허 가 장 유효 기 간		
범 죄 사 실	별지 감정허가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기간을 필요로 하는 취 지 와 사 유		
둘 이상의 허가장을 청구하는 취지와 사 유		
감정에 필요한 처분의 이 유	별지 감정허가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변 호 인		
비 고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인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감정처분허가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감정처분허가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감 정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감정 위촉연월일		
감 정 위 촉 사 항		
감 정 장 소		
감정처분허가장 유효기간		
범 죄 사 실	별지 감정허가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7일을 넘는 유효 기간을 필요로 하 는 취지와 사유		
둘이상의 허가장 을 청구하는 취지 와 사유		
감정에 필요한 처 분 의 이 유	별지 감정허가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변 호 인		
비 고		
기각하는 취지 및 이 유		
○○○ 검찰청		
검 사		

[별지107호]증인신문청구(직청구) <개정 2011.8.8>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

청

제 목 : 증인신문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피고)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을 청구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피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증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거		
	연락처		
증 명 할 사 실			
신 문 사 항			
증인신문청구(신청) 의 요건이 되는 사 실			
변 호 인			
기각하는 취지 및 이 유	판 사 인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
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증인신문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증인신문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
다고 인정되므로 증인신문을 청구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증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거	
	연락처	
증 명 할 사 실	별지 증인신문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신 문 사 항	별지 증인신문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증인신문청구(신청) 의 요건이 되는 사실	별지 증인신문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변 호 인		
기각하는 취지 및 이 유	판 사	인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

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증인신문신청 기각

다음 피의사건에 관하여 증인신문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증인
신문신청을 기각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증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거	
	연락처	
증 명 할 사 실	별지 증인신문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신 문 사 항	별지 증인신문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증인신문신청의 요건이 되는 사실	별지 증인신문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변 호 인		
기각하는 취지 및 이 유		
○○○ 검찰청		
검 사		인

○○○검찰청
(00-0000-0000)

임 호
형 호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임시조치청구(가정폭력) 검 사 인

행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호인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5.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피해자	성명	주거		
	직장			
범죄사실 및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사		인

○○○검찰청
(00-0000-0000)

임 호
형 호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임시조치청구(아동 학대) 검 사 인

행 위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2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피 해 자	성명	주거		
	연령	직장		
범죄사실 및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임시조치청구(사전 가정폭력) 검 사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임시조치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 5.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행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번호인				
피해자	성명	주거		
	직장			
범죄사실 및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임시조치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사		인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임시조치청구(사전 아동학대)

검 사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임시조치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
되어 아래와 같이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 ☐ 1. 피해아동 도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2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행 위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피 해 자	성명	주거		
	연령	직장		
범죄사실 및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임시조치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 유		판 사		인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임시조치청구(사후 가정폭력)

검 사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임시조치 후의 임시조치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 퇴거 등 격리
-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 5.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행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번호인			
피해자	성명	주거	
	직장		
긴급임시조치를 한 일시, 내용, 사유			
범죄사실 및 임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임시조치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사 인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임시조치청구(사후 아동 학대)

검 사 인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임시조치 후의 임시조치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임시조치를 청구합니다.

- ☐ 1. 피해아동 도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2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행 위 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 호 인			
피 해 자	성명	주거	
	연령	직장	
긴급임시조치를 한 일시, 내용, 사유			
범죄사실 및 임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임시조치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사		인

○○○검찰청

제 0000-0000 호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임시조치신청 기각(가정폭력)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임시조치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시조치신청을 기각합니다.

- ☐ 1.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또는 점유하는 방실로부터의 퇴거 등 격리
- ☐ 2.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직장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금지
- ☐ 3. 피해자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4.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소에의 위탁
- ☐ 5. 경찰관서 유치장 또는 구치소에의 유치
- ☐ 6. 상담소등에의 상담위탁

행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번호인			
피해자	성명	주거	
	직장		
범죄사실 및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임시조치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검찰청

제 0000-0000 호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임시조치신청 기각(아동학대)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임시조치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임시조치신청을 기각합니다.

- ☐ 1.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로부터 퇴거 등 격리
- ☐ 2. 피해아동등 또는 가정구성원의 주거, 학교 또는 보호시설 등에서 100미터 이내의 접근 금지
- ☐ 3. 피해아동 또는 가정구성원에 대한 전기통신기본법 제2조2제1호의 전기통신을 이용한 접근금지
- ☐ 4. 친권 또는 후견인 권한 행사의 제한 또는 정지
- ☐ 5.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에의 상담 및 교육 위탁
- ☐ 6. 의료기관이나 그 밖의 요양시설에의 위탁
- ☐ 7. 경찰관서의 유치장 또는 구치소의 유치

행위자	성명	()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변호인			
피해자	성명	주거	
	연령	직장	
범죄사실 및 임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임시조치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 신:

발 신:

검사

인

제 목: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 통지**

귀하가 고소·고발하신 우리 청 **년 형제 호**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명			
수리죄명		처분일자	
결정죄명 및 결과			
공소시효 만료일	단기 . . .	장기 . . .	

-결정결과에 대한 안내-

1. ‘불기소’ 결정에 대하여 불복이 있을 경우에는 이 통지서를 받으신 날부터

가. 30일 이내에 불기소결정에 대한 항고(「검찰청법」 제10조)를 하실 수 있습니다.
(만약 항고 기각 시 고소인 및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 및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은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그 밖의 고발인은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를 각각 제기 가능)

나. 다만, 고소인 및 가목에 규정된 일부 고발인은 ① 항고 이후 재기수사가 이루어진 다음에 다시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② 항고 신청 후 항고에 대한 결정이 행하여지지 아니하고 3개월이 경과된 경우, ③ 검사가 공소시효 30일 전까지 공소를 제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항고를 제기하지 아니하고 바로 재정신청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① 및 ②의 경우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10일 이내에, ③의 경우는 공소시효 만료 전날까지 신청서 제출 필요)

다. 항고 또는 재정신청을 하고자 할 때에는 항고장 또는 재정신청서를 위 기일 내에 우리 청에 제출하셔야 하며, 위 기간 경과 후에는 항고 또는 재정신청이 있더라도 기각됨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항고는, 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고발인이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검찰청 검사장에게 제기하는 불복절차를 말하고, 재정신청은, 검사로부터 불기소결정 통지를 받은 고소인 및 일부 고발인이 항고기각이 있는 등 일정한 경우 그 검사가 속한 검찰청을 거쳐 관할 고등법원에 그 당부에 관한 재정을 신청하는 불복절차를 말합니다.

라. 불기소이유를 알고 싶을 때에는 우리 청 혹은 가까운 검찰청 민원실을 방문하시거나 형사사법포털을 통하여 신청 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2.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기소중지’ 결정 또는 ‘참고인중지’ 결정된 경우

가. 그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된 때에는 그 사유를 밝혀 재기 신청할 수 있습니다.

나. 피의자 또는 참고인 등의 소재가 발견되어 사건이 종결될 때까지 고소(고발)인의 주소 변동이 있을 때에는 우리 청 사건과로 주소 보정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구공판, 구약식’ 결정은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으로, 법원에 문의하여 법원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safind.scout.go.kr/sf/mysafind.jsp)에서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4. ‘보완수사요구’ 결정은 송치사건의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기록을 송부하는 결정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경찰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제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5. ‘공소보류’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에 따라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하는 결정입니다.

6. ‘이송’ 결정은 타 검찰청 또는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결정입니다.

7.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은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 수리죄명은 고소(고발)접수 시 죄명이며, 결정죄명은 검사가 고소(고발)사실을 수사하여 결정한 죄명으로 수리죄명과 결정죄명이 다를 수 있으며, 기타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000-0000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전송

등록번호

수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인

제 목: 수사처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

귀 기관에서 송치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26조제2항에 따라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년 형 제 호	
송 치 년 월 일	. . .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결 정 일 자	죄 명	결 정 내 용
. . .		
. . .		
. . .		
. . .		
. . .		
피 의 사 실 요 지		
비 고	구체적인 불기소 이유에 대하여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설치및운영에관한법률」 제17조제4항에 따라 불기소이유에 대한 통보를 요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의사건 결정결과 통지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 검찰청

검사

인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결 정 일 자

결 정 죄 명

결 정 결 과

-결정결과에 대한 안내-

1. **‘구공판, 구약식’** 결정은 사건에 대하여 법원에 재판을 청구하는 결정으로, 법원에 문의하여 법원 사건 번호를 확인하고 대법원 인터넷 사이트(safind.scout.go.kr/sf/mysafind.jsp)에서 재판진행 상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2. **‘기소유예’** 결정은 죄는 인정되나 정상을 참작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결정입니다.
3. **‘혐의없음’** 결정은 증거 부족 또는 법률상 범죄가 성립되지 않아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4. **‘죄가안됨’** 결정은 피의자가 14세 미만이거나 심신상실자의 범행 또는 정당방위 등에 해당되어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5. **‘공소권없음’** 결정은 처벌할 수 있는 시효가 경과되었거나 친고죄에 있어서 고소를 취소한 경우 등 법률에 정한 처벌요건을 갖추지 못하여 처벌할 수 없다는 결정입니다.
6. **‘각하’** 결정은 위 2~5의 사유에 해당함이 명백하거나, 고소인 또는 고발인으로부터 고소·고발 사실에 대한 진술을 청취할 수 없는 경우, 또는 사안이 경미하여 수사의 필요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결정입니다.
7. **‘참고인중지’** 결정은 참고인 등의 소재불명으로 참고인 소재발명 시까지 수사를 중지하는 결정입니다.
8. **‘보완수사요구(결정)’** 결정은 송치사건의 보완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에게 기록을 송부하는 결정으로, 문의사항이 있는 경우 담당경찰서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제59조제1항)은 검사는 사법경찰관으로부터 송치받은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특별히 직접 보완수사를 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사법경찰관에게 보완수사를 요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할 것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9. **‘공소보류’** 결정은 국가보안법 제20조(공소보류)에 따라 형법 제51조(양형의 조건)의 사항을 참작하여 공소 제기를 보류하는 결정입니다.
10. **‘이송’** 결정은 타 검찰청 또는 타 수사기관으로 사건을 이송하는 결정입니다.
11. **‘소년보호사건 송치’**, **‘가정보호사건 송치’**, **‘성매매보호사건 송치’**, **‘아동보호사건 송치’** 결정은 가정법원으로 사건을 송치하는 결정입니다.

※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00-000-0000)

수 신 : ○○○ 귀하

제 목 : 재수사 요청 사실 통지

1. 2021. . . . 우리청 (2021불제 호)로 접수한 피의자 에 대한 (죄명) 사건기록을 검토한 결과, 재수사의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어 송부관서인 ○ ○ ○ ○경찰서에 재수사하도록 요청하였습니다.
2.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으면 담당 경찰서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검찰청

. . .

검 사

인

○ ○ ○ ○ 검 찰 청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인

제 목: 공무원 등 피의사건 수사개시통보서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 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소속 및 직급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수사개시일자	. . .		
죄 명		신 병			
피의사실요지					
비 고	이 건 사실로 인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 검 찰 청

(전화번호)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인

제 목: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수사개시통보서

아래 직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수사를 개시하였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 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통보합니다.

피 고 소 (발)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소속 및 직급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수사개시일자	. . .
죄 명		신 병	
피 고 소 (발)			
사 실 요 지			
비 고	이 건 사실로 인하여 행정조치를 취한 사실 등이 있으면 참고로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검 찰 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등록번호

수 신: ○○○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인

제 목: 공무원 등 피의사건 결정결과통보

귀(부) 직원 에 대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결	정	일	자	죄		명	결	정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 의 사 실 요 지										
비 고				귀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사건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 검 찰 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등록번호

수 신: ○○○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제 목: 공무원 등 고소·고발사건 결정결과통보

귀(부) 직원 에 대한 사건이 다음과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년		형제	호
피 고 소 (발)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위			
결	정	일	자	죄 명		결 정 내 용	
	.	.	.				
	.	.	.				
	.	.	.				
	.	.	.				
	.	.	.				
	.	.	.				
	.	.	.				
	.	.	.				
	.	.	.				
피 고 소 (발) 사 실 요 지							
비 고				귀 기관 소속 직원에 대한 사건이 위와 같이 결정되었으므로 「국가공무원법」 제83조제3항(「지방공무원법」 제73조제3항, 「사립학교법」 제66조의3제1항,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53조의2)에 따라 통보하오니, 적의 조치하시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송치사건결정결과통지 및 결정결과통보서송부표

검찰 → 송치 관서 외 명		. 제 호 . . . 작성		. 서(국) 호 . . . 정리		. 제 호 . . . 정리	
송치 관서 → 경찰청 외 명		수신 경찰서(청) 발신 검찰청 사건과장 ㉠		수신 경찰청 발신 경찰서(청) 수사과장 ㉠		수신 대검찰청(정보통신과) 발신 경찰청 수사1과 ㉠	

송달(인편)	송 치 연 월 일	송 치 번 호	피 의 자 또는 피 고 인 성 명 (한 자)	죄명	결 정 결 과			송 치 관 서 지 문 원 지 작 성		경 찰 청 지문원지정리		비고
. . .					연월일	내용	관서	연월일	작성 번호	지 문 번 호		
계급·성명												
㉠												
송달(우편)												
. . .												
등기 호												

○○ 지방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		발신자 :	검찰청
제 목 : 부재기 결정 통지		검 사 :	(인)

귀하가 재기 신청하신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기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피 의 자	② 성 명	
	③ 주민등록번호	
④ 결 정 일 자		
⑤ 결 정 이 유	☐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 ☐ 상피의자 () 소재불명 ☐ 참고인 () 소재불명 ☐ 고소인 () 소재불명 ☐ 기타	
비 고		
안 내 재기를 하지 않는 결정이유가 소재불명인 경우 소재불명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재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 지방검찰청 ○○ District Prosecutors' Office		
우편번호/ Zip code	주소/ Address	
전화/ Tel.	전송/ Transmission(Fax)	
수신자 : Recipient	발신자 : Sender	검찰청 Prosecutors' Office
제 목 : 부재기 결정 통지 Title Decision Notice on No Re-initiation of Investigation	검 사 : Prosecutor	(인) (seal)
귀하가 재기 신청하신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기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Regarding the case over suspect ○○○ that you have filed for re-initiation of investigation, you are informed that the case would be determined not to re-initiate investigation due to the reasons hereunder.		
① 사 건 번 호 Case No.		
피 의 자 Suspect	② 성 명 Name	
	③ 주민등록번호 ID No.	
④ 결 정 일 자 Decision date		
⑤ 결 정 이 유 Decision grounds	☐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 Suspect's continued missing ☐ 상피의자 () 소재불명 Co-suspect () missing ☐ 참고인 () 소재불명 Witness () missing ☐ 고소인 () 소재불명 Complainant () missing ☐ 기타 Others	
비 고 Remarks		
안 내 Note		
재기를 하지 않는 결정이유가 소재불명인 경우 소재불명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재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In case that the grounds on the decision are subject to unknown whereabouts, the case can be re-initiated if the whereabouts of the unknown are identified.		

○○ 지방검찰청
○○ 地方檢察庁

우편번호/
邮编号码/주소/
住址/

전화/
电话/

전송/
传真/

수신자 :
收件人 :발신자 :
发件人 :

검찰청
檢察廳

제 목 : 부재기 결정 통지
标题 : 不再起诉決定通知

검 사 : (인)
 檢察官 : (簽章)

귀하가 재기 신청하신 피의자 ○○○에 대한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이유로 재기 하지 않기로 결정하였음을 통지합니다.

关于您申请再起诉的嫌疑人〇〇〇案件，我厅决定不再起诉，理由如下：

① 사 건 번 호
案 件 号 码

피의자

② 성명

③ 주민등록번호
住民登録号码

④	결 決	정 定	일 日	자 期
---	--------	--------	--------	--------

⑤ 결 정 이 유
決 定 理 由

- ☐ 피의자 계속 소재불명
嫌疑人所在地持续不明
 - ☐ 상피의자 () 소재불명
共同犯罪嫌疑人 () 所在不明
 - ☐ 참고인 () 소재불명
参考人 () 所在不明
 - ☐ 고소인 () 소재불명
起诉人 () 所在不明
 - ☐ 기타
其他

高注
訓備

안 내
提 示

재기를 하지 않는 결정이유가 소재불명인 경우 소재불명자의 소재가 확인되면 다시 재기신청 할 수 있습니다.

若我厅不再起诉理由为所在地不明，等所在地不明问题解决后，可申请再次起诉。

○○○검찰청			
제 호			
수 신 : ○○○(기관명)		검 사 : ①인	
제 목 : 기소중지자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 통보			
귀 기관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자로 기소중지자 소재발견 보고하였는바, 동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송 치 연 월 일		경 찰 서 사 건 번 호
소재 발견 보고 연 월 일			보 고 서 번 호 제 호
처리내용(재기결정, 부재기결정)			
재 기 결 정	사 건 번 호	형 제 호	
	재기사건번호	형 제 호	재기일자
부 재 기 결 정	결 정 일 자		
	이유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담당
문서번호 :			시행일자 :			
수신 자 : ○○○(기관명)			발신자: 검사 ①			
제목 :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에 대한 처리결과통보						
귀 서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 . . 참고인 등 소재발견보고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처리하였음을 통보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송 치 연 월 일		경 찰 서 사 건 번 호			
참 고 인 (고 소 인 , 고 발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소 재 발 견 보 고 연 월 일			보 고 서 번 호		제 호	
처 리 내 용 (재 기 결 정 , 부 재 기 결 정)						
재 기 결 정	사 건 번 호		형 제 호			
	재 기 사 건 번 호		형 제 호 재 기 일 자 . . .			
부 재 기 결 정	결 정 일 자		. . .			
	이 유					

[(별지123호)공소장] <개정 2009.6.9>

○ ○ ○ 검 찰 청

. .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수 신 자 법원

제 목 공소장

검사 ○○○은(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피 고 인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거 (통 반),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죄 명

적용법조

구속여부 . . . 구속 (. . . 체포)

변 호 인 변호사 ○○○

II. 공소사실

III. 첨부서류

검사 ○ ○ ○ (인)

[(별지124호)재감인기소통지부]

재감인기소통지부

①통지월일		②형제번호	③수감번호	④피고인	⑤죄 명	⑥교도관 수리인	⑦비 고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월	일						

23231-44611비

210mm×297mm

93.5.18 승인

(인쇄용지(2급) 60g/m²)

○ ○ ○ 검 찰 청

. . .

사건번호 년 형제 호

수 신 자 법원

제 목 공소장

검사 ○○○은(는) 아래와 같이 공소를 제기하여 약식명령을 청구합니다.

I. 피고인 관련사항 및 의견

피 고 인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 일반전화번호, 휴대전화번호

주거 (통 반), (전화번호)

등록기준지

죄 명

적용법조

변 호 인 변호사 ○○○

의 견 벌 금 () 원

(미결구금일수 일, 1일 환산금액 원)

가납명령청구

II. 공소사실

검사 ○ ○ ○ (인)

[(별지126호) 즉결사건기록송부]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제 목	즉결사건기록송부 검 사 ㉠	
다음 즉결사건 기록을 송부합니다.		
피고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송 부 사 유		으로부터 정식재판청구가 있음으로 인함
기 록 권 수		권
증 거 물		
비 고		

23231-44811일

210mm×297mm

93.5.18 승인

(인쇄용지(2급) 60g/m²)

[(별지127호)정식재판청구]

○○○○○검찰청			
(전화번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정식재판청구	검 사	㉠
다음 피고사건의 약식명령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정식재판을 청구합니다.			
피고인	① 사 건 번 호	고 약 호 (형 호)	
	② 성 명		
③ 죄 명			
④ 선 고 연 월 일			
⑤ 약 식 명 령 주 문		벌금	원
⑥ 비 고		구형	원

23231-44911일

210mm×297mm

96.12.27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128호) 공소취소장]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공소취소장		검사 ㉠	
다음 사람에 대한 공소를 취소합니다.			
사 건 번 호		공소제기일자	
피고인	성 명	()	
	생 년 월 일	직 업	
	주 거		
취 소 부 분	공 소 사 실		
	죄 명		
	적 용 법 조		
비 고			

23231-62811일 210mm×297mm

93.5.18 승인 (신문용지 54g/m²)

○○○ 검 찰 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분류기호 및 사건 61100 - . . . 문서번호 수 신 자 발신자 ○○지방검찰청검사장 (인) 제 목 불기소 이유 통지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① 사 건 번 호	지검 00지청 20 형제 호	
② 고 소 (발) 인 성 명		
피 의 자	③ 성 명	
[피고소(발)인]	④주민등록번호	
⑤ 죄 명		
⑥ 처 분 검 사		
⑦ 처 분 년 월 일	. . .	
⑧ 처 분 요 지	불기소()	
⑨ 불 기 소 이 유	별첨과 같음	
⑩ 비 고		

○○○ 검 찰 청
○○○ District Prosecutors' Office

우편번호/ 주소/
Zip code Address

전화/ 전송/
Tel. Transmission(Fax)

분류기호 및 사건 61100 -
Classification code & Case

문서번호
Document No.

수 신 자 Recipient

발 신 자 Sender ○○지방검찰청검사장 (인)
Chief Prosecutor of ○○District Prosecutors' Office (seal)

제 목 불기소 이유 통지
Title Notice on grounds for non-prosecution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Regarding the case you have filed, you are informed on the grounds for non-prosecution.

① 사 건 번 호 Case No.		지검 00지청 20 형 제 호 Criminal Case No. in 20XX at 00 Branch of 00 District Prosecutors' Office
② 고 소(발) 인 성 명 Name of complainant		
피 의 자 [피고소(발)인] Suspect (The accused)	③ 성 명 Name	
	④ 주민등록번호 ID No.	
⑤ 죄 명 Name of the crime		
⑥ 처 분 검 사 Prosecutor who made the disposition		
⑦ 처 분 년 월 일 Disposition date		Year. Month. Day.
⑧ 처 분 요 지 Disposition summary		불기소() Non-prosecution()
⑨ 불 기 소 이 유 Grounds for non-prosecution		별첨과 같음 The same as attached
⑩ 비 고 Remarks		

○○○ 검찰청 ○○○ 检 察 厅						
우편번호/ 邮编号码/	주소/ 住址/					
전화/ 电话/	/전송 /传真					
분류기호 및 分类符号 及 사건 61100 - 案件 문서번호 文件号码 수 신 자 收件人 제 목 : 불기소 이유 통지 标 题 : 不起诉理由通知 발신자 ○○지방검찰청검사장(인) 发件人 ○○地方检察厅检察长(签章)						
귀하가 청구한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지합니다. 现将您申请的不起诉理由通知如下：						
① 사 案	건 件	번 号	호 码	지검 00지청 20 地检 00支厅 20	형 제 刑 第	호 号
② 고 소 (발) 인 성 명 控告人 / (举报人) 姓 名						
피 의 자 [피고(발)소인] 嫌 疑 人 [被控告人 / (被举报人)]		③ 성 명 姓 名				
		④ 주민등록번호 住民登录号码				
⑤ 죄 罪				명 名		
⑥ 처 분 处 分				검 사 관 检 察 官		
⑦ 처 분 处 分				년 월 일 日 期		
⑧ 처 분 处 分				요 지 要 点		
⑨ 불 기 소 不 起 诉				이 유 理 由		
⑩ 비 备				고 注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분류기호 및 사건 61100 -			
문서번호			
수 신 자		발신자 ○○○검찰청검사장 (인)	
제 목 :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송치사건 불기소이유 통보			
귀 기관이 요청한 불기소 이유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사 건 번 호		○○지검(○○지청) 20 형제 호	
송 치 년 월 일		. . .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결 정 검 사			
결 정 연 월 일		. . .	
결 정 요 지		불기소()	
불 기 소 이 유		별첨과 같음	
비 고			

발행번호 제 호			
사 건 결 정 결 과 증 명 서			
사 건 번 호		지검 00지청 형제 호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소		
죄 명			
결 정	년 월 일	. . .	
	결 과		
송치관서 및 수사단서		(고소·고발·인지)	
용 도			신 청 인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 . . ○ ○ ○ 검 찰 청 검 사 장			

발행번호 제 호 Issuing No.			
사 건 결 정 결 과 증 명 서 Certificate of Results of Disposition on Case			
사 건 번 호 Case No.		지검 00지청 형제 호 Criminal case No. in 20XX at ○ ○ Branch of District Prosecutors' Office	
피 의 자 Sus- pect	성 명 Name		
	주민등록번호 ID No.		
	주 소 Address		
죄 명 Name of the crime			
결정 Dispo- sition	년 월 일 Date		
	결 과 Result		
송치관서 및 수 사 단 서 Agency that sent the case & clue to the investigation		(고소·고발·인지) (Complaint·accusation·recognition)	
용 도 Purpose		신 청 인 Applicant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It is certified that the disposition is made hereinabove. (Year) (Month) (Day) ○○ ○ 검 찰 청 검 사 장 Chief Prosecutor of ○ ○ District Prosecutors' Office			

발행번호 제 호 签发号码 第 号			
사 건 결 정 결 과 증 명 서 案 件 處 分 結 果 证 明			
사 건 번 호 案 件 号 码		지검 00지청 형제 호 地检 00支厅 刑第 号	
피 嫌 의 疑 자 人	성 명 姓 名		
	주민등록번호 住民登录号码		
	주 소 住 址		
죄 명 罪 名			
결 處 정 分	년 월 일 日 期	年 月 日	
	결 과 結 果		
송치관서 및 수 사 단 서 移送机关及 侦查线索		(고소·고발·인지) (控告·举报·主动侦查)	
용 도 用 途			신 청 인 申 请 人
위와 같이 결정되었음을 증명합니다. 兹证明本案件处分结果。 ○ ○ 지 방 검 찰 청 검 사 장 ○ ○ 地 方 检 察 厅 检 察 长			

○○○검찰청

우편번호 : 주소 : 전화 : 전송 : 담당 :

문서번호 : 시행일 : . . .

수 신 : ○○○(기관명) 발 신 : 검사 인

제 목 : 참고인증지 의견 송치사건 결정결과통보

귀 기관에서 아래 사항에 대하여 . . . 참고인증지의견으로 송치한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음을 통보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기 바랍니다.

피의자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송 치 연 월 일		사 건 번 호	
참 고 인 (고 소 인 고 발 인)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결 정 결 과	연 월 일		결 정 내 용	

○○○검찰청

(00-0000-0000)

명 부 . . .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공소보류자 시찰조회 요청 검 사 인

아래 사람에 대하여 면밀히 조사하여 그 결과를 회답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등 록 기 준 지			
연 령		직 업	
죄 명			
송 치 관 서			
결 정 검 찰 청	검찰청		
결 정 연 월 일			
비 고			

<개정 2020. 9. 10.>

○○지방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사건		
수신자		발신자 ○○검찰청
제 목	소년보호사건 송치	검 사 (인)
	가정보호사건	
	성매매보호사건	
	아동보호사건	
아래 사건을 송치합니다.		
피 의 자	① 성 명	()
	② 주민등록번호	(세)
	③ 직 업	
	④ 주 거	
	⑤ 피해자와의 관계	
	⑥ 가정상황	성 명 : 주 거 : 피의자와의 관계 : 피의자의 ()
⑦ 죄명		
⑧ 적용법조		
⑨ 범죄사실		
⑩ 송치사유		요 보호처분 (호)
⑪ 기록권수		
⑫ 압 수 물		
⑬ 비 고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사 건		
수신자 ○○○경찰서/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발신자 ○○○검찰청
제 목 사건이송(이첩)서		
아래 사건을 이송·이첩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죄 명		
적 용 법 조		
범 죄 사 실		
이 송 · 이 첩 사 유		[]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18조 [] 공수처법 제24조제1항 [] 공수처법 제25조제2항
기 록 권 수		
압 수 물		
비 고		

○○○○검찰청	
(전화번호)	
집 제	교도소장 . . .
수 신	구치소장 발 신 검찰청
	경찰서장 검 사 ①인
제 목	이감지휘
아래 사람을 교도소·구치소·경찰서에 이감할 것을 지휘함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주 거	
④죄 명	
⑤이 감 사 유	사건이송 항소 파기환송
첨 부 : 1. 구속영장등본 1통	
2. 구속기간 갱신결정 1통	

23231-41611일 210mm×297mm

96. 12. 27 승인 (신문용지 54g/m²)

○○○검찰청	
(전화번호)	
집제	.
수신	교도소장
	구치소장
	경찰서장
발신	검찰청
제 목	이송지휘
검 사	인
가 정 법 원	
아래 사람을 지방법원 지원에 인도할 것을 지휘합니다.	
지방법원소년부	
성 명	()
주민등록번호	(세)
주 거	
죄 명	
이 송 사 유	소년보호사건 가정보호사건 송치 결정 성매매보호사건 법원 아동보호사건
첨 부 : 1. 구속영장 등본 1통 2. 구속기간갱신결정 등본 1통 끝.	

공 소 시 효	장 기	. . .
	단 기	. . .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사 건		0000. 00. 00.	
형			
수신자	법무부장관	발신자	○○○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인
제 목 국제 형사사법공조사건 송부			
국제형사사법공조 이행명령을 이행하고 그 결과를 송부합니다.			
피	의	자	
죄	명		
이행결과는 첨부한 국제형사사법공조요청 이행결과서와 같음			
공 조 요 청 국 및 요 청 기 관			
공 조 요 청 사 항			
공 조 이 행 자 료 송 부		※ 예시 : 서울중앙지검 형사제11부-1191(2020. 9. 11.)호	
문 서 번 호 및 시 행 일 자			
문 서 제 목		※ 예시 : 「사우디아라비아의 형사사법공조요청에 대한 회신」	
비 고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년 형제 호		. . .
수신자 ○○○경찰서		검사 인
제 목 보완수사요구(결정)		
아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 찰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보 완 수 사 요 구 사 유		
기 록 권 수		
압 수 물	유 무	[] 有 [] 無
	처 분	가환부대로본환부 제출인환부 피해자환부 보관 폐기 국고귀속 보완수사요구에따른반환
비 고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년 월 일		. . .	
수신자		검사	인
제 목 보완수사요구(추완)			
아래 사건에 대해 보완수사를 요구합니다.			
경 찰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보 완 수 사 요 구 사 유			
이 행 기 한			
비 고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년 불제 호		. . .
수신자		검사 인
제 목 재수사요청		
아래 사건에 대해 재수사를 요청합니다.		
경 찰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재 수 사 요 청 사 유		※ 기록이 송부된 날로부터 90일이 경과한 이후 요청 [] 불송치 결정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명백히 새로운 증거 또는 사실이 발견된 경우 [] 증거 등의 허위, 위조 또는 변조를 인정할 만한 상당한 정황이 있는 경우
기 록 권 수		
압 수 물	유 무	[] 有 [] 無
	처 분	가환부대로본환부 제출인환부 피해자환부 보관 폐기 국고귀속 처분지휘보류에 대한 반환
비 고		

○ ○ ○ **검찰청**
(tel.)

0000. 00. 00.

재 정

발 신 : ○○○검찰청검사장

제 목 : 재정신청통지

아래 재정신청사건은 지방법원·지원에 공소를 제기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청연월일		
죄명		
원결정	검찰청	(사건번호)
	연월일	. . .
	요지	
비고		

○○○검찰청
(00-0000-0000)

수 신 : ○○○경찰서장

발 신 : ○○○검찰청검사장

제 목 : 재정신청접수통보서

귀 기관에서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해 아래와 같이 재정신청서가 제출되어 이를 통보하오니 즉시 해당 사건을 송치하고 관계서류와 증거물을 송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신 청 연 월 일	
죄 명	
비 고	

[illegible]

검 사 장	○○○○검찰청		검 사 장
차장검사	(전화번호)		차장검사
	검		
사무국장	재 정		주임검사
과 장	수 신 검찰청검사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		사무국장
	제 목 재정신청사건송치		
	아래 재정신청은 이유 있으므로 공소제기명령서		
	와 같이 공소제기하시기 바랍니다		
피의자	①성 명		과 장
	②주민등록번호		
신청인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죄 명			
종 결	⑥연 월 일	. . .	
	⑦결 정 요 지	공소제기명령	
⑧기 록 권 수		권	
⑨압 수 물 건			
⑩비 고		첨 부	

23231-46311일

210mm×297mm

93. 5. 18 승인

(인쇄용지(특급) 70g/m²)

[(별지147호) 항고·재항고 사건처리결과보고] <개정 1999.3.30>

선 결			결		지시
접 수 일 시		번 호	제		
처 리 과			공 랑		
○○○○검찰청 (전화번호)					
사 건 61100-					
수 신			발 신 ○○○○검찰청		
참 조			검 사 인		
제 목 항고·재항고 사건처리결과보고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죄 명	
원 결 정	결정일자 및 내용				
	결 정 검 사				
항고·재항고 결 과	결정일자 및 내용				
	결 정 검 사				
재 기 결 과	재기일자및사건번호				
	처리일자 및 내용				
	처 리 검 사				
원 결 정 과 동 일 하 게 처 리 한 이 유					
승 인 근 거					
비 고					

23231-46611보

210mm×297mm

98. 12. 31 승인

(신문용지 54g/m²)

선 결					지시
접 수 일 시		번 호		결제	
처 리 과				공람	
○○○검찰청					
(전화번호)					
사 건 61100-					
수 신			발 신 ○○○검찰청		
참 조			검 사 ①		
제 목 항고사건 불기소결정 승인 요청					
사건 번호		피의자		죄명	
원 결 정	결정일자 및 내용				
	결 정 검 사				
재기수사결과	재 기 일 자				
	재 기 검 사				
	사 건 번 호				
	수 사 결 과				
	처 리 검 사				
재기수사 결과와 같이 결정하고자 하는 이유					
승인여부	[] 승 인 [] 불 승 인 ※ 불승인 이유 :				
비 고					

○○○○ 검찰청	사건과장	. . . 수리	주임검사	차장검사	검 사 장
		불 항 제 호			
○ ○ ○ 검 찰 청 (00-0000-0000) 불 항 제 호 수 신 발 신 ○ ○ ○ ○ 검 찰 청 검 사 (인) 제 목 불 기 소 결 정 항 고 · 재 항 고 기 록 송 부 아 래 기 록 을 송 부 합 니 다 .					검 사 장
					차 장 검 사
					부 장 검 사
					과 장
피 항 고 인 또 는 피 재 항 고 인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항 고 인 또 는 재 항 고 인	성 명	()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불 기 소 결 정 연 월 일		. . .			
항 고 · 재 항 고 연 월 일		. . .			
기 록 권 수		권			
압 수 물					
비 고					

검 사 장	○ ○ ○ 검찰청		검 사 장
	(tel.)		
차장검사			차장검사
주임검사	2021 불항 호		주임검사
	수 신 : ○○○검찰청검사장 발 신 : ○○○검찰청검사장대리		
사무국장	경 유 : 검 사 인		사무국장
과장	제 목 : 불기소결정 항고(재 항고)사건기록반환		과장
	아래 기록을 반환함.		
	피 항 고 인 .	성명	
	피 재 항 고 인	주민등록번호	
	항 고	성명	
	(재 항 고) 인	주민등록번호	
	죄 명		검 사 장
	결 정 연 월 일		차장검사
	결 정 요 지		주임검사
	반 환 기 록 권 수	권	
	압 수 물 건		사무국장
	비 고		과장

○○○검찰청		
우	/ 주소	/ 전화 / 전송
수신자 : 발신자 :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		
제 목 : 항고(재 항고) 사건결정통지		
에 대한 항고(재항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결 정	사 건 번 호	항(재 항) 제 호 <○○○지검(지청) 형제 호>
	연 월 일	
	결 과	
이 유		
비 고		
항고기각 결정에 대하여 이의가 있을 경우에는 ① 고소인 및 「형법」 제123조부터 제125조까지의 죄, 「공직선거법」 제273조에 정한 죄 등에 대한 일부 고발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10일 이내에 관할 고등법원에 재정신청을, ② 그 밖의 고발인은 이 통지서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대검찰청에 재항고(「검찰청법」 제 10조제3항)를 각각 할 수 있으며, 위 기간 안에 재정신청서는 불기소결정청(지방검찰청 또는 지청)에, 재항고장은 우리청에 각 제출하면 됩니다.		

○○○검찰청					
우		/ 주소		/ 전화	/ 전송
등록번호					
수신자 :		발신자 :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인			
제 목 : 재기수사명령사건 불기소결정 · 이송 승인 요청					
귀청		불(재)항 제		호로 재기수사명령한 우리 청	형제 호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을 아래 결정 의견과 같이 결정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재)항고인		(재)항 고 인			
결 정 의 건		원 결 정			
불 임					
○○○검찰청		가		불승인 사유	
주임검사 ○ ○ ○		부			

○○고등검찰청			
우편번호/ 등록번호	주소	/전화	/전송
수신자 ○○고등검찰청 검사장 () 발신자 ○○고등검찰청검사장대리 검사 인			
제 목 재기수사등명령사건 이송 통보			
당청에서는 (사건번호)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검찰청 ○○지청에서 귀청 관할인 ○○검찰청 ○○지청으로 이송토록 승인하였음을 통보합니다.			
아 래			
항 고 번 호	년	불 항 제	호
항 고 인			
피 항 고 인			
죄 명			
재기수사명령일		이송승인일	
승 인 검 사			
이 송 한 청 명	○○검찰청 ○○지청		
이 송 할 청 명	○○검찰청 ○○지청		
붙임 재기수사명령 결정서 등(사)본 1부. 끝.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별지154호)항공사건기록송부] <개정 2011.8.8>

수신	사건과 장	수리	주임검 사	부장검 사	차장검 사	검 사 장
○ ○ ○ 검 찰 청 (tel .) 2000. 0 0. 00. 수 신 : ○○○검찰청검사장 발 신 : ○○○검찰청검사 장대리 검 사 인 제 목 : 항고사건기록송부 아래와 같이 항고사건기록 및 증거물을 송부합니다.						검 사 장
						차장검 사
						부장검 사
						주임검 사
						과 장
피 항 고 인 · 피 재 항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항 고 인 · 재 항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죄 명						
재 정 신 청 일						
기 록 권 수	권					
압 수 물 건						
비 고						

[(별지155호)구속취소청구]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검사 ①인	
제 목 구속취소청구			
아래 사람에 대한 구속을 취소청구합니다.			
①사 건 번 호			
피 고 인	②성 명		③직 업
	④생년월일		
	⑤주 거		
⑥죄 명			
⑦구 속 일 시			
⑧구속취소사유			
⑨비 고			

23231-47311비

210mm×297mm

93. 5. 18 승인

(신문용지 54g/m²)

○○○○검찰청		
(전화번호)		
집 제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피고인석방통지	검 사 ㉠
아래와 같이 석방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피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석 방 연 월 일		
④석 방 사 유	보 석 . . . 구속집행정지 결정으로 인함 구 속 취 소	
⑤비 고		

23231-48011비

210mm×297mm

93. 5. 1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157호)보석[구속집행정지]취소청구]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보석(구속집행정지)취소청구	
검 사		㉠	
아래 사람에 대한 보석(구속집행정지)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고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 . . 생 (세)	직 업
	주 거		
보석(구속집행정지)			
결 정 일			
결 정 취 소 사 유			
비 고			

23231-30711일210mm×297mm

91. 3. 16 승인(신문용지 54g/m²)

○○○○검찰청 (전화번호)			
수 신		지방법원	
제 목		보석보증금 몰취 청구	
		발 신	
		검찰청	
		검 사	
		①인	
아래 피고인에 대한 보석보증금 전부를 몰취 결정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피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주 거		
④죄 명			
⑤보 석 결 정		. . . 법원	
⑥몰 취 대 상			
판 결	⑦선 고	. . . 법원	
	⑧형명·형기		
	⑨확 정	. . . 법원	
⑩첨 부 기 록		권	
⑪(청 구 사 유)			

○○○○검찰청				
(전화번호)				
. . .				
수 신	보증보험주식회사 대표이사		발 신	검찰청
제 목	보석보증보험금지급청구		검 사	㉠
아래 보석보증보험금에 대하여 . . . 법원으로부터				
몰수 결정이 있었으므로 보석보험금의 지급을 청구합니다.				
증 권 번 호		제 호		
보 험 계 약 자		피 보 험 자		
석 방	사 건 번 호	사 건 명		
	피 고 인	(주민등록번호)		
허 가				
내 용	보석보증보험금	원		
붙 임 : 1. 보석보증보험증권 사본 1부				
2. 보석보증보험금몰수결정서 사본 1부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관련사건 병합신청·요청		검 사 ㉠
다음 사건은 관련사건으로서 병합심리함이 상당하다고 인정되어 병합 심판신청 심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심판요청		
구분 \ 법원	① 법원	② 법원
③사 건 번 호		
④죄 명		
피 ⑤성 명		
고 ⑥직 업		
	⑦생 년 월 일	
	⑧주 거	
⑨관 련 요 지		
⑩병합심리할법원 (검 사 의 견)		
⑪비 고		

23231-48311일

210mm×297mm

93. 5. 18 승인

(신문용지 54g/m²)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심판신청·요청		검 사	㉠
다음 사건은 동일사건임에도 각기 다른 법원에 계속되어 있으므로 심 신청요청 판 을 합니다.			
법원		① 법원	② 법원
구분			
③공 소 제 기 일 자			
④사 건 번 호			
⑤죄 명			
피 고 인	⑥성 명		
	⑦직 업		
	⑧생 년 월 일		
	⑨주 거		
⑩심 판 할 법 원 (검 사 의 견)			
⑪비 고			

23231-48411비

210mm×297mm

93. 5. 18 승인

(신문용지 54g/m²)

○○○○검찰청

(전화번호)

수신

발신

검찰청

제 목

관할

☐ 지정

신청

검 사

(인)

□ 이전

제14조

형사소송법

제15조

호에 의거 다음 사건의 관할

□ 지정

□ 이전

신청을 요청합니다.

①사 건 번 호

②죄 명

피

③성명

④직업

고

⑤생년월일

⑥연 령

인

⑦주 거

⑧ 이 유

⑨ ㅁ ㅊ

○○○○검찰청			
(전화번호)			
. . .			
수 신	법 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관할지정(이전)신청통지	검 사	㉠
형사소송법 제 14 조		호에 의거 다음 사건의 관할지정(이전)	
15			
신청을 하였음을 통지합니다.			
①사 건 번 호			
②죄 명			
피 고 인	③성 명	④직 업	
	⑤생 년 월 일	⑥연 령	
	⑦주 거		
⑧이 유			
⑨신 청 일 자			
⑩비 고			

[(별지164호)병합·이송사건 관련서류송부서]

○○○○검찰청 (전화번호)			검사장
			차장검사
			주임검사
수 신 검찰청검사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병합·이송사건관련서류등송부 검 사 인			사무국장
아래 사건에 관하여 법원의 병합·이송결정이 있으므로 관련서류등을 송부합니다.			
피 고 인	성 명		과장
	주민등록번호		
	구 속 표 시		
죄 명			
결 정 연 월 일		. . . 법원	
송부서류및증거물		1. 2. 3. 4.	
비 고			

23231-48711일210mm×297mm

93. 5. 18 승인(신문용지 54g/m²)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기피등신청 검 사 ①인

회원 호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를 기피신청합니다.

다 음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특별대리인선임청구 검 사 ①인				
회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람을 특별대리인으로 선임하여 줄 것을 청구합니다.				
다 음				
①특별대리인을선임할사유				
특별대리인 이 될 자	②성 명		직 업	
	③생년월일		연 령	
	④주 거			

23231-48911일

210mm×297mm

93. 5. 18 승인

(신문용지 54g/m²)

열람·등사 서면교부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및 제2호)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8시간
------	------	------	------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고인 과의 관계	[] 피고인 본인 [] 변호인 [] 피고인의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사 건	사건번호	피고인
	년 형제 호 죄 명	외 명

신청사유	[] 당해 사건 소송 준비
신청내용	[] 위 사건에 관한 서류 등의 목록의 열람·등사 [] 검사가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의 열람·등사(제1호) [] 검사가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의 교부 또는 그 사람이 공판기일 전에 행한 진술을 기재한 서류 등의 열람·등사(제2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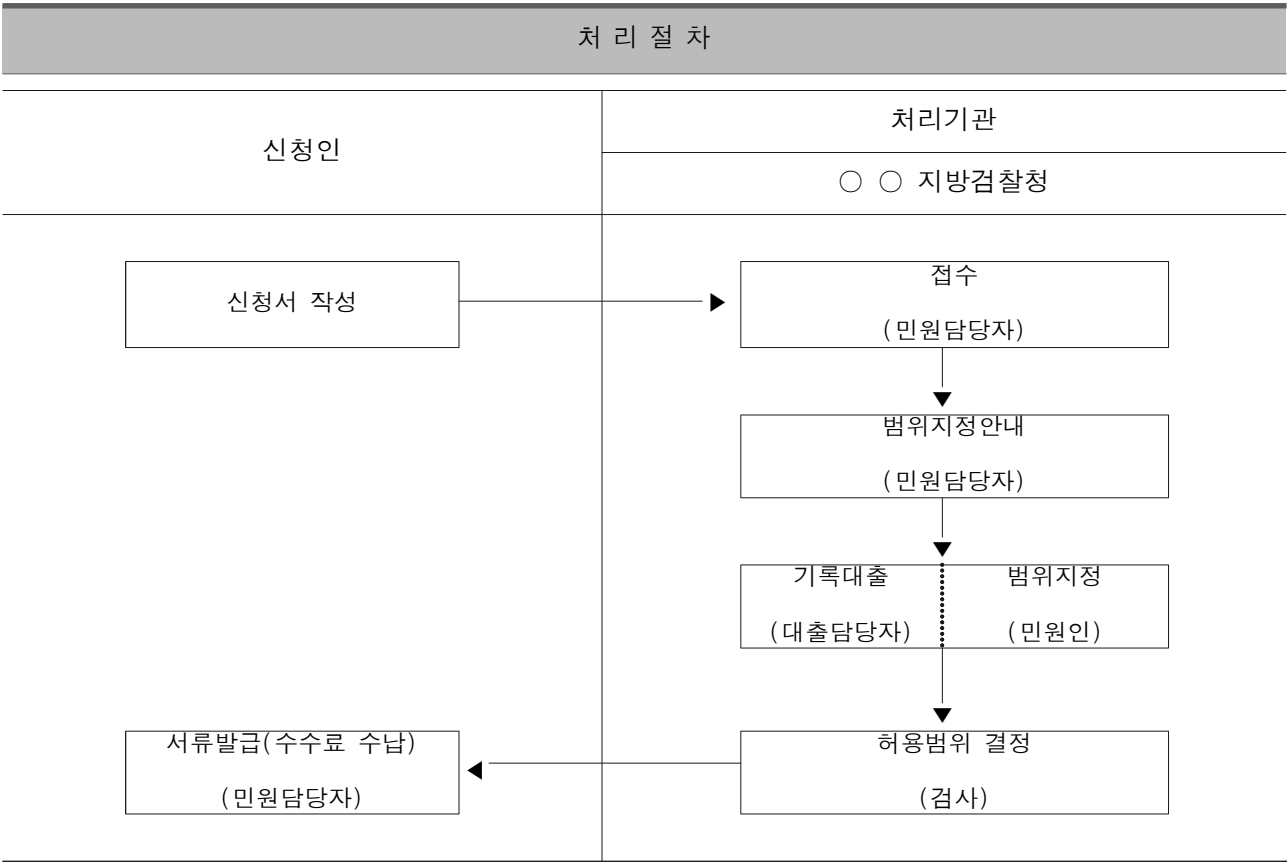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등사, 서면의 교부를 신청합니다.

신청인
년 월 일
(서명 또는 인)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검 사	서류 등 목록	제1호 서류 등				제2호 서면 및 서류 등	
	허 가	허 가	거 부	범위제한		교부(허가)	불교부(거부)
결 정	인	인	인	인		인	인

210mm × 297mm(백상지 (80g/㎡))



범위제한 내용

순번	서류 등의 표목	허가여부			비고
		허 가	거 부	범위제한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 범위제한의 구체적 내용(예: 열람 가, 등사 불가 또는 등사허가 범위) 등을 비교란에 기재

열람·등사 신청서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및 제4호)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를 합니다.

(앞쪽)

접수번호	접수일자	처리기간	48시간
신청인	성명	생년월일	
	주소	전화번호	
	피고인	[] 피고인 본인 [] 변호인	
	과의 관계	[] 피고인의 () ※ 피고인의 법정대리인, 특별대리인, 배우자, 직계친족, 형제자매인 경우에는 위임장 첨부 ※ 변호인이 있는 피고인은 열람만 신청 가능	
사 건	사건번호	피고인	
	년 형제 호	외 명	
	죄 명		
신청사유	[] 해당 사건 소송 준비		
신청내용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서류 등의 증명력에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제3호) ※ 별지에 기재		
	[]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등의 열람·등사(제4호) ※ 별지에 기재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에 따라 위와 같이 열람·등사를 신청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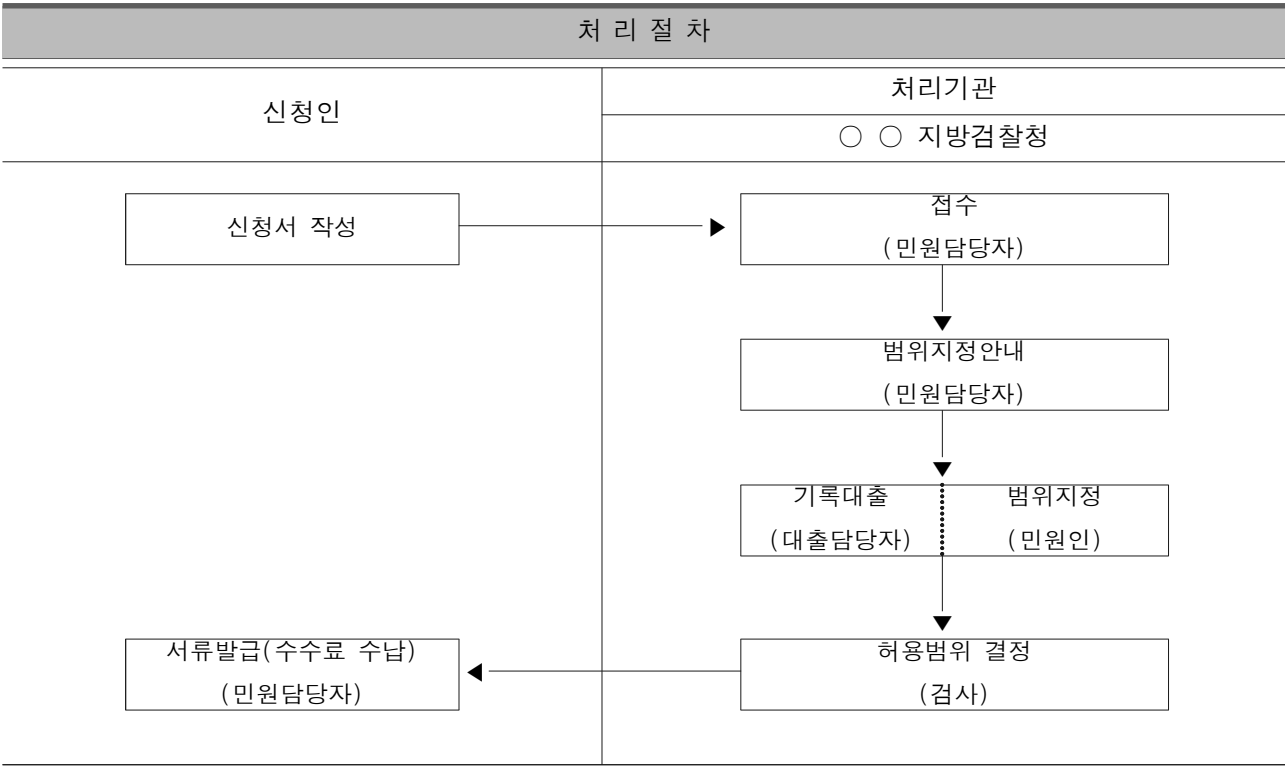
년 월 일

신청인

(서명 또는 인)

○○ 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검 사	제3호 서류 등			제4호 서류 등		
	허 가	거 부	범위제한	허 가	거 부	범위제한
결 정	인	인	인	인	인	인



열람·등사 신청 내용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의 서류 등

1. 열람·등사 신청 대상 서류 등의 표목(내용)

-

2. 위 1항 서류 등이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1호 또는 제2호의 어느 서류 등의 증명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

[]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4호의 서류 등

1. 열람·등사 신청 대상 서류 등의 표목(내용)

-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법률상·사실상 주장의 요지

-

3. 위 제1항 서류 등이 제2항 주장과 어떤 관련이 있는지 여부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200 . . .
수 신 발 신 ○○지방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열람·등사 거부 또는 범위제한 통지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3항에 따라 귀하의 열람·등사, 서면 교부 신청에 대해 다음 이유로 거부·제한함을 알려드립니다.

1. 열람·등사 신청 부분

서류 등의 표목 (별지순번 또는 면수)	열람·등사의 거부 또는 범위제한 이유
	국가안보(「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2항)
	증인보호의 필요성(")
	증거 인멸의 염려(")
	관련 사건의 수사에 장애를 가져올 것으로 예상(") 구체적 사유 :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의 비밀, 생명·신체의 안전, 생활의 평온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음(「검찰사건사무규칙」 제112조의3제1항제1호)
	법령상 타인에게 제공 또는 누설 등이 금지된 정보·자료 또는 수사방법상의 기밀을 보호할 필요(제2호)
	수사기관의 의견 또는 법률판단 등을 기재한 내부문서(제3호)
	열람·등사 대상이 없거나 특정되지 아니함(제4호)
	「형사소송법」 제266조의3제1항제3호 또는 제4호 소정의 관련성이 인정되지 아니함(제5호)

2. 서면 교부 신청 부분

- ☐ 해당사항 없음(다만, 증거로 신청할 서류 등에 대해 피고인 측에서 열람 후 증거 부동의 할 경우에 따른 증인 신청은 제외)
- ☐ 증거조사전 교부 불가(이유 : 증인보호의 필요성 및 증거인멸의 염려등)

210mm×297mm

(신문용지54g/m²(재활용품))

○○지방법원

(전화번호)

제 호 200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법원
검 사 (인)

제 목 공판준비기일 지정 신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7제2항에 따라 귀원에 계속 중인 다음 사건에 대하여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신청합니다.

○ 사건의 표시

- 재 판 부 :
- 사건번호 :
- 피 고 인 :
- 죄 명 :

○ 공판준비기일의 지정을 요하는 사유

- 증거신청 및 쟁점정리

<신설 2008.1.7>

○○지방법원
(전화번호)

제 호 200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법원
검 사 (인)

제 목 피고인등이 보관 중인 서류등의 열람·등사·서면교부허용 신청

「형사소송법」 제266조의11제3항에 따라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보관 중인 다음 서류 등의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할 것을 신청합니다.

○ 사건의 표시

- 재 판 부
- 사건번호
- 피 고 인
- 죄 명

○ 피고인 측의 법률상·사실상 주장요지

○ 열람·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 대상

1.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거로 신청할 서류등()
2.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증인으로 신청할 사람의 성명·사건과의 관계 등을 기재한 서면()
3. 제1호의 서류등 또는 제2호의 서면의 증명력과 관련된 서류등()
4.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등()

210mm×297mm

(일반용지75g/m²(재활용품))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공판기일변경신청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있어 다음 공판기일
. . . 시는 한 사유가 있으므로 공판기일의
변경을 신청합니다.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검 사 ①
동석신청

귀원 호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을
신문함에 있어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고인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
합니다.

다 음

동석하고자 하는 자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직 업	
	④주 거	
	⑤전 화 번 호	
	⑥피고인과의 관계	
⑦동석이 필요한 사유		

※ 소명자료 별첨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증거신청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의 증거를 다음과 같이
신청합니다.

다 음

1.

2.

첨 부

[(별지173호)증인등신문신청·청구철회서] <신설 2011.8.8>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

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증인등신문신청·청구 철회**

검 사

인

다음 피의(피고) 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사유로 증인등신문신청·청구를 철회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피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증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거		
	연락처		
증 인 신 청 일			
신 청 철회 사유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증거신청에 대한 이의신청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피고인 (변호인)
의 증거신청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다 음

[(별지175호)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신청서] <신설 2008.1.7>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신청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의 피해자 에 대한
증인신문 시 다음과 같은 이유로 피해자와 신뢰관계에 있는 자의 동석을 신청합
니다.

다 음

피 해 자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직 업	
	④주 거	
	⑤전 화 번 호	
동석하고자 하는 자	⑥성 명	()
	⑦주민등록번호	(세)
	⑧직 업	
	⑨주 거	
	⑩전 화 번 호	
	⑪피해자와의 관계	
⑪동석이 필요한 사유		

※ 소명자료 별첨

[(별지176호)영상녹화물 조사 신청서] <개정 2011.8.8>

○ ○ ○ **검찰청**

(tel. _____)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〇〇〇법원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영상녹화물 조사 신청

검 사

인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아래의 영상녹화물
에 대한 조사를 신청합니다.

[illegible]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증인신변안전조치요청 검 사 ㉠

특정강력범죄의처벌에관한특례법 제7조에 의하여 아래 증인에 대한 신
변안전조치를 요청하니 필요한 조치를 취하고 그 결과를 통보하여 주시기 바랍니
다.

증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생 년 월 일		직 업	
	주 거		전 화 번 호	
관련사건	사건번호			
	죄 명			
	피 고 인			
필 요 한 조 치				
사 유				
비 고				

[(별지179호)조회신청서(공무소 등)]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조회신청 검 사 인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 사항을
에 조회 신청합니다.

다 음

- 1.
- 2.
- 3.

○ ○ ○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수 신 ○ ○ ○ 법 원 장

발 신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증거조사에 대한 이의신청

귀 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 증거조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이유로
이의신청합니다.

다 음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재판장의 처분에 대한 이의신청 검 사 ①인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재판장의 처분이 있었는 바 이에 대하여 이의신청합니다.	
①재판장의처분	
②이의신청사유	

[(별지182호)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서]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이의신청 검사 ①인

형사소송법 제48조제5항에 의거 공판조서의 기재의 정확성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이의신청합니다.

다 음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한 변경청구·이의제기 검 사 ㉠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공판심리한 주요사항 요지의 고지가 있었는바, 「형사소송법」
제54조제3항에 따라 공판조서의 기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그 변경을 청구
합니다. 이의를 제기

다 음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 추가	
피고사건의 공소장을 다음과 같이	☐ 철회 하고자 합니다.	
	☐ 변경	
	다 음	

[(별지185호)변론의 병합신청서(공소제기와 동시에 법원에 계속중인 사건)]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변론의 병합신청 검 사 ㉠
이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3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원에 재판 계속중인 아래 사건과 병합심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고 인 성 명	
신 청 사 유	
비 고	

23231-22411일 210mm×297mm

87. 12. 24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185호의2)변론의 병합신청서(법원에 계속 중인 사건에 대해 변론 병합 신청)]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변론의 병합신청	검 사 ㉠
이 사건을 형사소송법 제3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원에 재판계속중인		
아래 각 사건의 변론병합을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고 인 성 명		
신 청 사 유		
비 고		

23231-22511일

210mm×297mm

87. 12. 24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185호의3)변론의 분리신청서]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변론의 분리신청
검 사	㉠
형사소송법 제300조의 규정에 의하여 귀원에 재판계속중인 아래 사건에 대하여 변론의 분리를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고 인 성 명	
분 리 사 유	
분 리 방 법	
비 고	

23231-22011일

210mm×297mm

87. 12. 24 승인

(신문용지 54g/m²)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변론재개신청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변론의 재개를 신청합니다.

다 음

[(별지187호)가납판결청구서]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가납판결청구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 판결선고에
있어 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34조에 의거 가납판결을 청구합니다.

23231-50311비

210mm×297mm

93. 5. 18 승인

(신문용지 54g/m²)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형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속기·녹음·영상녹화 신청		검 사 ①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 속기 ☐ 녹음 ☐ 영상녹화를 신청합니다.			
속기·녹음·영상 녹화대상자 (피고인,증인,기타)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직 업		
	④주 거		
⑤속기·녹음·영상 녹화 범위	☐ 전 부	☐ 일 부	
⑥사본청구 여부	☐ 청구함 ☐ 청구하지 않음		

210mm×297mm

(일반용지75g/m²(재활용품))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통상절차 회부 신청 검 사 ㉠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통상절차 회부를 신청합니다.

다 음

- 1.
- 2.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배심원등 해임 신청 검 사 ㉠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사유로 배심원(예비배심원) 해임을 신청합니다.

다 음

배심원 (예비배심원) 번호		
해임사유	법 제42조 제1항의 선서를 하지 아니함.	
	법 제41조 제2항 각호의 의무를 위반하여 그 직무를 담당하게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다고 인정됨.	
	출석의무에 위반하여 그 계속하여 직무를 이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함 .	
	법 제17조부터 제20조까지의 사유에 해당하는 사실이 있거나 불공평한 판단을 할 우려가 있음.	
	질문표에 거짓 기재를 하거나 선정절차에서의 질문에 대하여 정당한 이유 없이 진술을 거부하거나 거짓의 진술을 한 것이 밝혀지고 계속하여 그 직무를 행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함.	
	법정에서 재판장이 명한 사항을 따르지 아니하거나 폭언 또는 그 밖의 부당한 언쟁을 하는 등 공판절차의 진행을 방해함.	

첨 부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신 법원 발신 검찰청
제목 속기록·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청구 검사 ①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속기록·녹음테이프·비디오테이프 사본교부를 청구합니다.

다 음

청구대상	☐ 속기록 사본 ☐ 녹음테이프 사본 ☐ 비디오테이프 사본
청구부분	☐ 전부 ☐ 일부()

210mm×297mm

(일반용지75g/m²(재활용품))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배심원 설명요청 검 사 ㉠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배심원에 대한 설명을 요청합니다.

다 음

- 1.
- 2.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배심원등 신변보호조치 요청 검 사 (인)

귀원 호 피고인 에 대한 피고사건의 배심원·예비
배심원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신변안전을 위한 조치를 신청합니다.

다 음

1. 필요한 조치의 내용

- ☐ 보호
- ☐ 격리
- ☐ 숙박
- ☐ 기타 ()

2. 요청사유

○○○○검찰청	
(전화번호)	
검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상소권포기(취하)서 검 사 ㉠
아래 피고사건에 대한 상소권을 포기(취하)함	
피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죄 명	
④선 고 연 월 일	
⑤비 고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상소권회복청구 검 사 ㉠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 . . 유죄() 판결선고가 있었던 바 동 판결에 대하여
상소함이 없이 상소제기기간이 경과되어 동 재판이 확정되었으나 다음과 같은 사
유로 형사소송법 제345조에 의한 상소권회복을 청구합니다.

다 음

○○○○검찰청

(전화번호)

검

수신법원발신검찰청

제목항소·상고장검사인

아래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불복이므로 항소·상고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죄명		
④선고연월일		
⑤판결주문		
⑥항소·상고의범위		
⑦항소·상고의이유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

수 신 처	○○○○검찰청		발 신 처
주임검사			주임검사
	항 소 제 호		
사건과장	수 신	검찰청검사장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항소사건접수보고	검 사 ①
	피고인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구 속 여 부	
	④죄 명		
	⑤1 심 판 결 선 고		. . . 지방법원 ○○지원
	항 소	⑥검 사	. . . ()
		제 기	⑦피 고 인
	⑧구 속 일 자		. . .
	⑨구속기간갱신결정		. . . (1차) . . . (2차) . . . (대행갱신)
	⑩구 속 기 간 만 료		. . .
	⑪이 감 지 회		. . .
	⑫압 수 물 건		
	⑬첨 부		1. 공판카야드 2. 판결문등본 부 3. 검사항소이유서 부분 부

○ ○ ○ 검찰청 형제 호 상고 호 수 신 검찰총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상고사건접수보고 검 사 ㉠		발신처
		주임검사
		사건과장
피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구속여부		
죄 명		
구 속 일 자 . . .		
제1심판결선 고 . . . 지방법원○○지원		
항 소 제 기	검 사 . . . ()	
	피 고 인 . . . ()	
제2심판결선 고 . . . 지방법원(노 호)		
상 고 제 기	검 사 . . . ()	
	피 고 인 . . . ()	
첨 부 ○ 집행지휘 대상사건(실행선고된 경우, 사회봉사, 보호관찰, 수강명령, 부착명령, 치료감호)의 심급별 판결문등 본 각 1부		

[(별지198호)항소[상고]이유서]

검		○○○○검찰청 (전화번호)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항소(상고)이유서	검 사 ①인
아래와 같이 항소(상고)이유서를 제출합니다.		
피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죄 명		
④선 고 법 원		법원
⑤선 고 일 자		. . .
⑥항 소 (상 고) 일 자		. . .
⑦항 소 (상 고) 이 유		별지와 같음
⑧비 고		

○○○○검찰청	
(전화번호)	
검제	호 . . .
수신	법원 발신 검찰청
제목	비약적상고장 검사 ㉠
아래 피고사건의 판결에 대하여 형사소송법 제372조에 따라 비약적 상고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①성명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죄명	
④선고연월일	
⑤판결주문	
⑥상고의범위	
⑦상고의이유	

○○○○검찰청	
(전화번호)	
집 제	호
수 신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항고·재항고장
검 사	㉠
아래 피고사건에 관한 결정은 전부 불복이므로 항고·재항고를 제기합니다.	
피고인	①성 명 ()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죄 명	
④결 정	
⑤결 정 요 지	
⑥항고·재항고의 이유	

(발신청)

○○○○검찰청		검 사 장
(전화번호)		
형 항		차장검사
수 신 검찰청검사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주임검사
제 목 형사hang고(재hang고)사건기록송부 검 사 ①인		
아래와 같이 기록을 송부합니다.		사무국장
피의자	①성명	
또 는	②주민등록번호	과 장
피고인		
hang고인	③성 명	
	④주민등록번호	
⑤죄 명		
⑥결 정 법원		
⑦결 정 요 지		
⑧hang 고 		
⑨기 록 권 수 권		
⑩압 수 물 건		
⑪비 고		

23231-51311일

210mm×297mm

93.5.18 승인

(인쇄용지(2급) 60g/m²)

(발신청)

검 사 장	○○○○검찰청			
	(전화번호)			
차장검사	827.1 . . .			
				전 결
주임검사	항 호			
사무국장	경 유	지방(고등)검찰청검사장	발 신	검찰청
	수 신	지방검찰청검사장·지청장		
과 장	제 목	형사항고(재항고)사건기록반환		
	아래와 같이 기록을 반환함			
	피 의 자 또는 피 고 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신 청 인 또는 재 항 고 인	③성 명		(수신청)
		④주민등록번호		검 사 장
		⑤사 건 명		
		⑥결 정	. . . 법원	차장검사
		⑦경 정 요 지		
		⑧기 록 권 수	권	주임검사
		⑨압 수 물 건		사무국장
		⑩비 고		과 장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재판의 취소 변경 청구	검 사 ①인
귀 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재판의 고지가 있었는 바 이에 불복이므로 동 재판의 취소를 변경 청구합니다.	
①재판의고지내용	
②취소 변경 을 청구하는 사유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검찰청
제 목 재심청구		검 사		㉠
다음 사람에 대하여 . . . (지방)법원에서 유죄의 판결선고가 있어 동 재판이 확정되었던 바 이에 대한 재심을 청구합니다.				
인 적 사 항	①성 명		②직 업	
	③생 년 월 일		④연 령	
	⑤주 거			
⑥재 심 사 유				
첨 부		1. 판결등본 1통 2. 증거서류		

[(별지205호)내사진정사건 송치서] <신설 1999.3.30>

○○○○검찰청

(전화번호)

사 건 ○○ 내사·진정 ○○○호

수 신 발 신 ○○○○검찰청

검사 (인)

제 목 내사·진정사건 송치

아래 사건을 송치합니다.

진 정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내사자 피진정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송 치 사 유		
기 록 권 수		
압 수 물		
비 고		

23231-82811일

210mm×297mm

98.12.31 승인

(신문용지 60g/m²)

○○○검찰청		
(00-0000-0000)		
사 건 ○○ 내사·진정 ○○○호		
수 신		
발 신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내사 · 진정사건 이송(이첩)		
아래 사건을 이송·(이첩)합니다.		
진 정 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피내사자 피진정인	성 명	
	주민등록번호	
이 송 · 이 첩 사 유		
기 록 권 수		
압 수 물		
비 고		

사 건 결 정 결 과 통 지 서

시 구 로
○○○ 귀 하

1. 귀하가 진정(신고)한 우리 청 년 진정(내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 사건번호 : 년 진정(내사) 제 호

결정일자 : . . .

결정요지 :

※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검 찰 청

검 사 ○○○

사 건 결 정 결 과 통 지 서

시 구 로
○○○ 귀 하

1. 에 대한 우리청 년 진정(내사) 제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 사건번호 : 년 진정(내사) 제 호

결정일자 : . . .

결정요지 :

※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검 찰 청

검 사 ○○○

사 건 결 정 결 과 통 지 서(조 사)

시 구 로
○○○ 귀 하

1. 에 대한 우리청 년 조제 호 사건에 관하여 다음과 같이 결정하였으므로
통지합니다.

2. 사건번호 : 년 조제 호

결정일자 : . . .

결정요지 :

※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검 찰 청

검 사 ○○○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년		시	정 제 호 . . .
수신자		검사 인	
제 목 시정 조치 요구			
아래 사건에 대해 시정조치를 요구합니다.			
경 찰 관 련 사 건	경 찰 사 건 번 호		
	피 의 자		
	주 민 등 록 번 호		
	죄 명		
시 정 조 치 요 구 사 유			
이 행 기 한			
검 찰 관 련 사 건			
비 고			

○ ○ ○ 검 찰 청
(00-0000-0000)

(분류기호 및 문서번호) . . .

수 신 : ○○○경찰서장 발 신 :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 인

제 목 : 시정 사건 통보

아래 사법경찰관에 대하여 시정조치 요구를 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하였으므로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상호협력과 일반적 수사준칙에 관한 규정」 제45조 제3항에 따라 이를 통보합니다.

통 보 대 상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소속 및 직급			
검찰사건번호	년 시정 제 호	경찰사건번호	-	
비 고				

시 정 사 건 처 리 결 과 통 지 서

시 구 로

○○○ 귀 하

1. 귀하가 신고한 시정사건은 다음과 같이 처리하였으므로 이를 통지합니다.

2. 사건번호 : 년 시정 제 호

결정일자 : . . .

결정요지 :

※ 위 사건에 관하여 문의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전화 000-0000으로 연락하시기 바랍니다.

. . .

○○○검 찰 청

검 사 ○○○

(별지214호)항소기록 및 증거물 반환서

(수신청)

(발신청)

검 사 장	○○○○검찰청				검 사 장
	(전화번호)				
차장검사	검				부장검사
주임검사	경 유	검찰청검사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주임검사
	수 신	검찰청	검 사	인	
사무국장	제 목 항소기록 및 증거물 반환서				사무국장
	아래와 같이 항소기록 및 증거물을 반환함.				
과 장	①사 건 번 호		형 제 호		과 장
			항(상)제 호		
	피고인	②성 명			(경유청)
		③주민등록 번 호			검 사 장
	④죄 명				차장검사
	⑤처 분 촉 탁				
	⑥기 록 권 수	권	⑦압수물건		주임검사
	⑧비 고	1. 형집행지휘 . . .형집행지휘필			사무국장
		2. 석 방 지 휘 . . .석방지휘필			
		3. 징수금조정 . . .징제 호조정필			과 장
4. 압 수 물 건					

[(별지215호)비상상고신청서]

대 검 찰 청				
비상제 호 . . .				
수 신 대법원		발 신 검찰총장대리		
제 목 비상상고신청		검 사 ①인		
판 결 다음 에 대하여 법령위반이 있다고 인정되므로 비상상고를 약식명령 신청합니다.				
피고인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주 거			
	④직 업			
⑤죄 명				
⑥원 판 결		. . . 법원		
⑦판 결 요 지				
⑧재 판 확 정		. . . 법원		
⑨판 결 요 지				
⑩비 성 상 고 이 유		별 첨		
⑪비 고				

[(별지216호)비상상고기록송부서]

대 검 찰 청			
비상제 호 . . .			
수 신 대법원		발 신 검찰총장대리	
제 목 비상상고기록 및 증거물 송부		검 사 인	
아래 비상상고 기록을 송부합니다.			
피고인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구 속 표 시	☐ 구 속 ☐ 불구속	
④죄 명			
⑤원 판 결		. . . 법원	
⑥재 판 확 정		. . . 법원	
⑦비 상 상 고 신 청		. . .	
⑧구 속		. . .	
⑨기 록 권 수		권	
⑩압 수 물 건			
⑪비 고			

23231-51711일

210mm×297mm

93.5.18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217호)판결정정신청서]

대 검 찰 청	
제 호	
수 신 대법원판사	발 신 대검찰청
제 목 판결정정신청	검 사 ①인
아래와 같이 내용의 오류가 있음을 발견하였으므로 형사소송법 제400조의 규정에 의하여 판결의 정정을 구하고자 신청합니다.	
①사 건 번 호	
②사 건 명	
③피 고 인	
④형 선 고 일	
⑤오 류 내 용	
⑥신 청 이 유	

[(별지218호)의견서] <개정 2003.7.28>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등록번호			
수신자 헌법재판소장 ()		발신자 ○○검찰청검사장대리	
경 유 검찰총장		검사 ①인	
제 목 의견서 제출			
아래와 같이 의견서를 제출합니다.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청 구 인			
붙 임	의견서 15부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등록번호			
수신자 헌법재판소장 ()		발신자 ○○검찰청검사장대리	
		검사	인
경 유 검찰총장			
제 목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 제출			
아래와 같이 답변서 및 불기소사건기록을 제출합니다.			
사 건 번 호			
사 건 명			
청 구 인			
붙 임	1. 답변서 15부 2. 우리청 ○○형제 ○○호 불기소사건기록 ○권		

[(별지220호)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직청구)] <개정 2011.8.8>

○ ○ ○ **검찰청**

(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
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검 사 **인**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과 범 위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 간 :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2. 집행장소 :
혐의 사실의 요지 및 청구이유	1. 혐의사실의 요지 :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
둘이상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취지 및 사유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

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대상 과 범 위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장소	1. 기 간 :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2. 집행장소 :	
혐의사실의 요지 및 청 구 이 유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둘이상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취지 및 이 유		
재청구의 취지 및 이 유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인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통신제한조치의 종 류 및 방 법				
통신제한조치의 대 상 과 범 위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통신제한조치의 기 간 및 집 행 장 소	1. 기 간 :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2. 집행장소 :			
혐의사실의 요지 및 신 청 이 유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둘이상을 신청하 는 경우 신청취지 및 이 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 유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 유				
○○○ 검찰청				
검 사 인				

○ ○ ○ **검찰청**
(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을 청구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사 건 번 호	
허 가 서 번 호	
통신제한 허가기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연 장 할 기 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소명자료	
발부하지 아니하 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인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0000. 00. 00.

수 신 : ○○○법원장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 청구**검 사 **인**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을 청구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사 건 번 호	
허 가 서 번 호	
통신제한 허가기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연 장 할 기 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소명자료	별지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아니하 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인

[(별지225)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 기각서] <신설 2011.8.8>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

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사 건 번 호	
허 가 서 번 호	
통신제한 허가 기 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연 장 할 기 간	0000. 00. 00. 부터 0000. 00. 00. 까지
기간연장이 필 요한 이유 및 소 명 자 료	별지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 유	
○○○ 검찰청	
검 사	
인	

(정보수사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제 호				
수 신		고등검찰청		발 신 ㉠
제 목 안보목적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				
통신비밀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사 항	③주 거		④직 업	
⑤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⑥통신제한조치의 대상 과 범 위				
⑦통신제한조치의 기간 및 집행 장소		1. 기간 : 부터 까지 2. 집행장소 :		
⑧통신제한조치 신청 이유		1. 혐의사실의 요지 :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		
⑨수통을신청하는경우 신청 취 지 및 사유				
⑩재신청의취지및이유				
○○고등검찰청				
수 신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제 목 안보목적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고등검찰청 검사 ㉠				
⑪기 각 취 지 및 이 유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227호)안보목적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

(정보수사기관의명칭)	
(전화번호)	
제 호	.
수 신	고등검찰청 발 신 ㉠
제 목	안보목적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신청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거	
④직 업	
⑤통신제한조치허가기간	. 부터 . 까지
⑥연 장 할 기 간	. 부터 . 까지
⑦기 간 연 장 이 필 요 한 이 유 및 소 명 자 료	
○○고등검찰청 수 신 고등법원 제 목 안보목적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청구 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통신제한조치기간 연장을 청구합니다. ○○고등검찰청 검사 ㉠	
⑧기 각 취 지 및 이 유	

○ ○ ○ 검 찰 청

(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사후)

검 사

인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위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별지와 같음	통신제한조치를 계속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일시와 집행장소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성명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장소	
둘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취지 및 이유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지 및 이유	판사		인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사후) 검 사 인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 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통신제한 조치를 계속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 과 범 위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통신제한조치의 대 상 과 범 위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 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일시 와 집행 장소		통신제한조치의 기 간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성명		통신제한조치의 집 행 장 소	
둘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취지 및 이유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인		

[(별지230호)안보목적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긴급 사후)] <개정 2002.3.30>

(정보수사기관의 명칭) (전화번호)			
제 호			
수 신	고등검찰청	발 신	인
제 목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		
다음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긴급통신제한 조치를 실시하였으므로 통신제한조치를 계속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①성 명		②주 민 등 록 번 호
	③주 거		④직 업
⑤긴급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⑥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별지와 같음	통신제한조치를 계속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와 같음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일시와 장소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성명		통신제한조치의 장소	
⑦수통을 신청하는 경우 신청취지 및 사유			
⑧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고등검찰청			
수 신	고등법원		
제 목	안보목적 통신제한조치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고등검찰청 검사 인			
⑨기 각 취 지 및 이 유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사후)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 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고 그에 대한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긴급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의 사유와 내용	
통신제한조치를 필요로 하는 사유와 허가를 받을 수 없었던 긴급한 사유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통신제한조치를 계속 필요로 하는 사유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및 방법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긴급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긴급통신제한조치의 일시와 집행장소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성명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장소	
둘 이상을 청구하는 경우 청구취지 및 이유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별지 통신제한조치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기관명)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건의)에 대한 결정

다음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 지휘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가	부	비 고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검 사 결 정				
○○○ 검찰청				
검 사			인	

○○○검찰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기관명)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건의)에 대한 결정

다음 사람에 대한 긴급통신제한조치 승인요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결정합니다.

가	부	비 고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검 사 결 정		
○○○ 검찰청		
검 사		인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검찰청 검사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긴급통신제한조치통보서 제출 검 사 인

아래 사람에 대한 제 호 피의사건에 관하여 긴급통신제한조치를 실시하였으
나 단시간 내에 종료되어 법원의 허가를 받을 필요가 없는 경우에 해당되므로 긴급통신제
한조치통보서를 작성하여 제출합니다.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긴급통신제한조치 의 종 류 및 방 법		
긴급통신제한조치 의 대 상 과 범 위		
긴급통신제한조치 의 기간 및 집행장소		
긴급통신제한조치 집행자의 관직·성 명		
긴급통신제한조치 의 목 적		
긴급통신제한조치 후 법원에 허가청 구를 하지 못한 사 유		

[(별지234호)통신제한조치집행위탁의뢰서]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 . .

수 신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통신제한조치집행위탁의뢰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의 집행을 위탁합니다.

인적 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세)
	③주 거	
	④직 업	
⑤통신제한조치의 종류		
⑥통신제한조치의 대 상 과 범 위		
⑦통신제한조치의기간		. . 부터 . . 까지
⑧비 고		
붙임 : 통신제한조치장허가(승인)서 사본 1통		

23231-67711일

210mm×297mm

94.12.16 승인

(신문용지 54g/m²)

[(별지235호)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통지서]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 . .		
수 신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통신제한조치기간연장통지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기간을 연장하였음을 통지합니다.		
인적	①성 명	
사항	②주민등록번호	
③통신제한조치의기간	. . . 부터 . . . 까지	
④연장한기간	. . . 부터 . . . 까지	
⑤붙임 : 통신제한조치연장 결정문 사본 1통		

23231-67811일

210mm×297mm

94.12.16 승인

(신문용지 54g/m²)

통신제한조치집행조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고 이조서를 작성함

- 1. 통신제한조치의 종류
- 2. 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 범위
- 3. 통신제한조치의 기간
- 4. 집행위탁여부
- 5. 집행경위
- 6.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 별첨

. . .

○○지방검찰청

검사 (인)

검찰주사(보) (인)

[(별지237호)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개정)/별지233호의2 활용] <신설
2011.8.8>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

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검 사 인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신제한조치 허가서를 반환합니다.

허가서 종별		
허가서 발부일		
허가서 번호		
대 상 지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 명		
집행불능의 사유		
첨 부 : 1.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1부. 2.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지휘서 1부. 3. 집행불능보고서 1부. 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

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

검 사 인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집행이 불능되어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보고가 있는바, 이에 동 허가서를 반환합니다.

허 가 서 종 별	
허가서 발부일	
허 가 서 번 호	
대 상 지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 명	
집행불능의 사유	
별지 통신제한조치 허가서 반환보고서 기재내용과 같음	

[(별지238호)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서]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수 신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중지 통지		
아래 사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는 집행이 필요없게 되어 통지하니 집행을 중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통신제한조치허가법원		
④통신제한조치의종류		
⑤통신제한조치허가연월일		
⑥통신제한조치허가서번호		
⑦비 고		

[(별지239호)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서] <신설 2002.3.30>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수 신	귀 하
발 신	지방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	
당청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2제1항의 규정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①허가서번호	
②통신제한조치집행기관	
③감청대상전기통신가입자 (우편물검열의대상자)	
④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범위	
⑤통신제한조치의기간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240호)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신설 2002.3.30>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수 신	발 신 지방검찰청
	검 사 ㉠
제 목 통신제한조치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귀서에서 통신제한조치를 집행한 후 송치한 당청 제 호 피의 사건 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①허가서번호	
②전기통신의가입자 (우편물검열의대상자)	
③통신제한조치의 대상과범위	
④통신제한조치의기간	
⑤통신제한조치를집행한 사건의처리일자및처리결과	
⑥통신제한조치집행자의 관직·성명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241호)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서] <신설 2002.3.30>

○○지방검찰청 (전화번호)		검사장승인		
		. . .		
		가	부	
제 호 . . .				
수 신 지방검찰청 검사장		발 신 지방검찰청		
		검 사 ㉠		
제 목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				
피의자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아래와 같이 실시한 통신제한 조치집행사실의 통지를 유예하고자 하오니 승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적사항	①성 명		②주민등록번호	
	③주 거		④직 업	
⑤사 건 번 호				
⑥통 신 제 한 조 치 의 종 류 및 방 법				
⑦통 신 제 한 조 치 의 대 상 과 범 위				
⑧통 신 제 한 조 치 의 기 간 및 집 행 장 소				
⑨통신제한조치의목적				
⑩통신제한조치를 집행 한 사건의 처리 일 자 및 결 과				
⑪통지를 유예하고자 하 는 사 유		별지와 같음		

210mm×297mm

(신문용지 54g/m²(재활용품))

[(별지242호)통신제한조치 집행사실 통지유예승인신청에 대한 지휘서] <개정
2011.8.8>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

다음 사람에 대한 통신제한조치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
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사 건 번 호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검찰청

문서번호 제 0000-0000 호

수 신 :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검 사 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오니 협조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요청사유	
해당가입자와의 연관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붙임 : 허가서 1통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집행조서

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집행을 하고 이 조서를 작성함

1. 허가서 번호
2. 집행기관
3. 전기통신가입자
4.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대상과 종류
5.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으로 취득한 결과의 요지 : 별첨

년 월 일

○○지방검찰청

검사

인

검찰주사(보)

인

(별지245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 <개정 2011.8.8>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

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 검 사

인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를 반환합니다.

허가서종별	
허가서발부일	
허가서번호	
대상지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명	
집행불능의사유	
첨부 : 1.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1부. 2.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집행지휘서 1부. 3. 집행불능보고서 1부. 끝.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

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 검 사 인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집행이 불능되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보고가 있는바, 이에 동 허가서를 반환합니다.

허 가 서 종 별	
허 가 서 발 부 일	
허 가 서 번 호	
대 상 지	성명 ()
	주민등록번호
	주거
죄 명	
집 행 불 능 의 사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서 반환보고서 기재내용과 같음	

○○지방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수신자 발신자 지방검찰청
검사 인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중지통지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요청한 통신사실 확인자료는 그 제공이 필
요없게 되어 통지하오니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 공 요 청 허 가 법 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 공 요 청 의 종 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 공 요 청 허 가 연 월 일	
통신사실 확인자료제 공 요 청 허 가 서 번 호	
비 고	

○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수 신: ○○○법원장

발 신: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가 입 자 의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전 기 통 신 사 업 자		
요 청 사 유		
해 당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필 요 한 자 료 의 범 위		
재 청 구 의 취 지 및 이 유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 지 및 이 유		판사 인

(별지248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서(사경신청)

○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다음과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가 입 자 의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전 기 통 신 사 업 자		
요 청 사 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해 당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필 요 한 자 료 의 범 위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재 청 구 의 취 지 및 이 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 지 및 이 유		판사 인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기각

다음과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기각합니다.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전 기 통 신 사 업 자		
요 청 사 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해 당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필 요 한 자 료 의 범 위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재 청 구 의 취 지 및 이 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		
○○○ 경찰청		
검 사 인		

○ ○ ○ 검 찰 청

문서번호 0000. 00. 00.

수 신 : 발 신 : ○○○검찰청

제 목 :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검 사 인

다음 사람에 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제2항 단서에 따라 아래와 같이 긴급
으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니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주 거	
직 업	
요 청 사 유	
해 당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필 요 한 자 료 의 범 위	
미 리 허 가 를 받 지 못 한 사 유	

○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사후]

가 입 자 의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위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하였
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전 기 통 신 사 업 자	
요 청 사 유	
해 당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 리 허 가 를 받 지 못 한 사 유	
집 행 일 시 · 장 소	
집행자의 관직 · 성명	
재 청 구 의	
취 지 및 이 유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 지 및 이 유	판사 인

(별지251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사후/사경용)

○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 . .

수 신: ○○○법원장 발 신: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사후]

다음과 같이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허가신청
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가 입 자 의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전 기 통 신 사 업 자		
요 청 사 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해 당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미 리 허 가 를 받 지 못 한 사 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집 행 일 시 · 장 소		
집행자의 관직 · 성명		
재 청 구 의 취 지 및 이 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발부하지 아니하는 취 지 및 이 유		판사 인

[(별지252호)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개정 2011.8.8>

(정보수사기관명칭)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제 0000-0000 호

수신자 고등검찰청 발신자 지방검찰청 인

제 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 하였으므로 이에 대한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전 기 통 신 사 업 자		
요 청 사 유		
해 당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미리 허가를 받지 못한 사유		
재청구의 취지 및 이유		
○○ 고등검찰청 수신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제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고등검찰청 검사 인		
기각 취지 및 이유		

(별지253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기각(사후)
<개정 2011.8.8>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기각[사후]

다음과 같이 긴급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실시하고 그에 대한 허가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을 기각합니다.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전 기 통 신 사 업 자		
요 청 사 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해 당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 위		
미 리 허 가 를 받 지 못 한 사 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재 청 구 의 취 지 및 이 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집 행 일 시 · 장 소 집행자의 관직 · 성 명		
재 신청의 취지 및 이 유	(별지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		
○○○ 검찰청		
검 사		인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0000-0000 호

수신자 ○○○귀하

발신자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실통지

당청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 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1항 또는 제4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허 가 서 번 호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 청 집 행 기 관	
전 기 통 신 가 입 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의 대상과 종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 청 의 범 위	

※ 전기통신가입자는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5항에 따라 수사기관에 해당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한 사유를 알려주도록 서면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지255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개정 2011.8.8>

○ ○ 지방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제 0000-0000 호

수신자 경찰서장 발신자 지방검찰청

검사 인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집행사건 처리결과통보

귀서에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을 집행한 후 송치한 당청 제 호 피의사건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허 가 서 번 호		청 구 부 진 행 번 호	년-
통신사실 확인자료제 공 요 청 기 관		처 리 자 소 속 , 계 급 , 성 명	
전 기 통 신 가 입 자 (통 지 대 상 자)			
전 기 통 신 사 업 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 공 요청대상과 종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 공 요 청 의 기 간			
사 건 처 리 일 자 및 처 리 결 과			

[(별지256호)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 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
 <신설 2011.8.8>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한 지휘

다음 사람에 대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요청 집행사실통지유예 승인신청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지휘합니다.

가	부	비 고

인 적 사 항	성 명	주민등록번호
	직 업	
	주 거	
사 건 번 호		
검 사 지 휘		
○○○ 검찰청 검 사 인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제 0000-0000 호			
수신자	귀하	발신자	○○○지방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 통지

당청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3조의3제6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사유를 통지합니다.

허 가 서 번 호	
전 기 통 신 가 입 자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 사유 통지여부	☐ 통지대상 ☐ 통지제외 대상 [] 국가의 안전보장, 공공의 안녕질서를 위태롭게 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생명이나 신체의 안전을 위협할 우려가 있는 경우 [] 증거인멸, 도주, 증인 위협 등 공정한 사법절차의 진행을 방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 피의자, 피해자 또는 그 밖의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사생활을 침해할 우려가 있는 경우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 청 사 유	(통지제외 대상인 경우 ‘해당없음’ 기재)

[(별지258호)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신설
2011.8.8>

(정보수사기관명칭)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제 0000-0000 호

수신자 고등검찰청 발신자 인

제 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

다음 사람에 대하여 아래와 같은 내용의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을 요청할 수
있는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인 적 사 항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전 기 통 신 사 업 자		
요 청 사 유		
해 당 가 입 자 와 의 연 관 성		
필요한 자료의 범위		
재 청구의 취지 및 이 유		
○○고등검찰청 수신자 고등법원 수석부장판사 제 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허가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 고 인정되므로 동 허가서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고등검찰청 검사 인		
기각 취지 및 이유		

[(별지259호)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청구] <신설
2011.8.8>

(정보수사기관명칭)

우편번호/ 주소 /전화번호 /전송

제 0000-0000 호

수신자 고등검찰청 발신자 인

제 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청구

아래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의 연장을 청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성명	
주민등록번호	
주거	
직업	
허가받은 대상 및 범위	
연장할 기간	. . 부터 . . 까지
기간연장이 필요한 이유 및 소명 자료	

○○고등검찰청

수신자 고등법원

제 목 국가안보를 위한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허가청구

위와 같이 통신사실 확인자료제공 요청기간 연장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동 기간연장을 청구합니다.

○○고등검찰청 검사 인

기각 취지 및 이유	
------------	--

[(별지260호)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서] <신설 2011.8.8>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귀하

발 신 :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실 통지

당청 제 호 사건과 관련하여 아래와 같이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하여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하였으므로 「통신비밀보호법」 제9조의3제1항에 따라 이를 통지합니다.

영 장 번 호	
압수·수색·검증영장 집 행 기 관	
전 기 통 신 가 입 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 행 대 상 과 범 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 행 대 상 기 간	

[(별지261호)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
보] <신설 2011.8.8>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발 신 : ○○○검찰청

검 사 인

제 목 :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 집행사건 처리결과 통보

귀서에서 송·수신이 완료된 전기통신에 대한 압수·수색·검증영장을 집행한 후 송치
한 당청 제 호 피의사건의 처리결과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영 장 번 호	
전 기 통 신 가 입 자 (통 지 대 상 자)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대상과 범위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 대상 기간	
사 건 처 리 일 자 및 처 리 결 과	
압수·수색·검증영장 집행자의 관직·성명	

210mm×297mm[일반용지 60g/m²(재활용품)]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전기통신보관 등 승인 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의 보관 등 승인을 청구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통 신 제 한 조 치 집 행 사 건	사 건 번 호			
	허 가 서 번 호			
	집 행 종 료 일			
통 신 제 한 조 치 집 행 경 위				
취 득 한 결 과 의 요 지				
혐의사실의요지및 승인 청 구 이 유	1. 혐의사실의요지 :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 별지와 같음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 통신의 대상 및 범위				
보 관 등 이 필 요 한 전 기 통 신 의 목 록	별지와 같음			
통 신 내 용 자 료 또 는 통 신 내 용 분 석 자 료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 신을 선별한 방법				
전기통신 선별자의 관 직 . 성 명				
재 청 구 의 취 지 및 이 유				
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목록

연번	전기통신 (파일명)	전기통신 기간	전기통신 내용의 요지	비고

○ ○ ○ 검 찰 청

(0000-0000)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전기통신보관 등 승인 청구(사경신청)

검 사

인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 등 승인 신청이 있는 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아래와 같이 보관 등 승인을 청구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통 신 제 한 조 치 집 행 사 건	사 건 번 호				
	허 가 서 번 호				
	집 행 종 료 일				
통 신 제 한 조 치 집 행 경 위					
취 득 한 결 과 의 요 지					
혐의사실의요지및 승인 청 구 이 유	1. 혐의사실의요지 :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 별지와 같음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 통신의 대상 및 범위					
보 관 등 이 필 요 한 전 기 통 신 의 목 록					
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분석자료					
보관 등이 필요한 전기통 신을 선별한 방법					
전기통신 선별자의 관 직 . 성 명					
재 청구의 취지 및 이 유					
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		판 사			

(별 지)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목록

[illegible]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전기통신보관 등 승인 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에 대한 보관 등 승인 신청이 있는 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보관 등 승인 신청을 기각합니다.

피의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통신제한조치 집행사건	사건번호	
	허가서번호	
	집행종료일	
통신제한조치 집행경위		
취득한결과 의요지		
혐의사실의요지및 청구이유	1. 혐의사실의요지 : 별지와 같음 2. 소명자료 : 별지와 같음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 통신의대상 및 범위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의 목록	별지와 같음	
통신내용자료 또는 통신내용분석자료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을 선별한 방법		
전기통신 선별자의 관 직 . 성명		
재신청의 취지 및 이유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검찰청		
검사		인

(별 지)

보관등이 필요한 전기통신 목록

[illegible]

폐 기 결 과 보 고 서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통 신 제 한 조 치 집 행 사 건	사 건 번 호	
	통 신 제 한 조 치 허 가 서 번 호	
	통 신 제 한 조 치 집 행 종 료 일	
	전 기 통 신 보 관 등 승 인 서 번 호	
	전 기 통 신 보 관 등 승 인 (기 각) 통 지 일	20 . . .
위 사람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통신비밀보호법 제12조의2 제5항 및 제6항의 규정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신제한조치로 취득한 전기통신을 폐기하였습니다.		
폐 기 의 이 유		
폐 기 의 범 위		
폐 기 의 일 시	20 . . . :	
전기통신의 취득부터 폐기까지의 진행 경과 및 요지 , 그 주체 및 방법		
폐기한 전기통신의 목록		
20 . . .		
○○○검찰청		
검사 		

[(별지266호)입국·상륙절차 특례요청서] <개정 2011.8.8>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
0. 00. 00.

수 신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입국 · 상륙절차 특례요청 검 사 인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을 입국 · 상륙시킬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입국 · 상륙절차의 특례 조치를 요청합니다.

대 상 자	성명 ()		
	생년월일 (세)	성 별	남 · 여
	국적		
마약류의 분산방지 및 도주방지를 위한 감시체제의 상황			
비 고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체류부적당 통보 검 사 인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을 계속 대한민국에 체류하도록 하는 것이 적당하지 아니하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대 상 자	성명 ()		
	생년월일 (세)	성별	남 · 여
	국적		
입 국 (상 룝) 허 가 일 자			
비 고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
0. 00.

수 신 : ○○○세관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세관절차 특례요청 검 사 인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마약류가 외국으로 반출될(우리나라로 반입
될) 필요가 있으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조에 따라 세관절
차의 특례조치를 요청합니다.

마 약 류 의 특 정	
마약류의 분산방 지를 위한 감시체제 의 상 황	
비 고	

[(별지269호)입국·상륙절차 특례요청(사경신청)] <신설 2011.8.8>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입국 · 상륙절차 특례요청** 검 사 **인**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에 대한 입국 · 상륙절차 특례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입국 · 상륙절차의 특례조치를 요청합니다.

대 상 자	성명 ()		
	생년월일 (세)	성 별	남 · 여
	국적		
마약류의 분산방지 및 도주방지를 위한 감시체제의 상황	별지 입국 · 상륙절차 특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비 고			

[(별지269호의2)체류부적당 통보(사경신청)] <신설 2011.8.8>

○ ○ ○ **검찰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출입국관리사무소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체류부적당 통보

검 사

인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에 대한 체류부적당 통보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조에 따라 통보합니다.

대 상 자	성명 ()		
	생년월일 (세)	성 별	남 · 여
	국적		
입 국 (상 륙) 허 가 일 자			
비 고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
000. 00. 00.

수 신 : ○○○세관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세관절차 특례요청 검 사 인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마약류에 대한 세관절차 특례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
법」 제4조에 따라 세관절차의 특례조치를 요청합니다.

마 약 류 의 특 정	별지 세관절차 특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의 분산방지 를 위 한 감시체제 의 상 황	별지 세관절차 특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비 고	

[(별지270호)입국·상륙절차 특례신청 기각] <신설 2011.8.8>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입국·상륙절차 특례신청 기각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에 대한 입국·상륙절차 특례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입국·상륙절차 특례신청을 기각합니다.

대 상 자	성명 ()		
	생년월일 (세)	성 별	남 · 여
	국적		
마약류의 분산방지 및 도주방지를 위한 감시체제의 상황	별지 입국·상륙절차 특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비 고			
기 각 하 는 취 지 및 이 유			
○○○ 검찰청			
검 사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체류부적당 통보신청 기각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외국인에 대한 체류부적당 통보신청
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체류부적당 통보신청을 기각합니다.

대 상 자	성명 ()		
	생년월일 (세)	성 별	남 · 여
	국적		
입 국 (상 륙) 허 가 일 자			
비 고			
기각하는 취지 및 이 유			
○○○ 검찰청			
검 사 인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세관절차 특례신청 기각

마약류범죄수사와 관련하여, 아래 마약류에 대한 세관절차 특례신청
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세관절차 특례신청을 기각합니다.

마 약 류 의 특 정	별지 세관절차 특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의 분 산방지를 위 한 감시체제 의 상 황	별지 세관절차 특례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비 고	
기각하는 취 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물수 • 부대보전청구 검 사 인

아래 피의자(피고인)에 대한 피의(피고)사건에 관하여, 물수 • 부대보전명령
에 의한 재산처분 금지를 청구합니다.

피 의 자 (피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죄 명		
피의사실(공소사실)의 요 지		
물 수 • 부 대 보 전 의 근 거 법 령 조 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물 수 보 전 관계	처분을 금지하는 재 산 및 그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무자 의 성명·주소	
	마약류불법거래방지 에관한특례법 제33조 제 1항이 규정하는 사유	
부 대 보 전 관계	물수·보전사건의표시	지방법원 년 제 호
	처분을 금지하는 권 리 및 그 권리를 가진 자의 성명·주소	
	마약류불법거래방지 에관한특례법 제3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법원장 발 신 : ○○○검찰청

제 목 : 몰수·부대보전청구 검 사 인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부대보전명령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몰수·부대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금지를 청구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죄 명		
피의사실(공소사실)의 요지		별지 몰수·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몰수·부대보전의근거법령조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제2항, 제34조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몰수 보전 관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재산을 가진자의 성명·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주소	별지 몰수·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별지 몰수·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부대 보전 관계	몰수·보전사건의 표시	지방법원 년 제 호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자의 성명·주소	별지 몰수·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 관한특례법 제3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유	별지 몰수·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0000. 00. 00.

수 신 : ○○○경찰서장

제 목 : 몰수 · 부대보전신청 기각

다음 피의자에 대한 피의사건에 관하여 몰수 · 부대보전신청이 있는바, 아래와 같은 사유로 몰수 · 부대보전신청을 기각합니다.

피 의 자		성명
		주민등록번호 (세)
		직업
		주거
죄 명		
피의사실(공소사실)의요지		별지 몰수 · 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몰수 · 부대보전의근거법령조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33조제1항 · 제2항, 제34조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몰수보전관계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및 그재산을 가진자의 성명 · 주소와, 채권의 경우 채무자의 성명 · 주소	별지 몰수 · 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관한특례법 제33조제1항이 규정하는 사유	별지 몰수 · 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부대보전관계	몰수 · 보전사건의표시	지방법원 년 제 호
	처분을 금지하는 권리 및 그 권리를 가진자의 성명 · 주소	별지 몰수 · 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불법거래 방지에관한특례법 제33조 제2항이 규정하는 사 유	별지 몰수 · 부대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수 신	등기소장·등록소장
제 목	등기·등록 촉탁
발 신 지방검찰청	
검 사 ㉠	
아래 재산에 대한 등기·등록을 촉탁합니다.	
물 건 의 표 시	
권 리 의 표 시	
등 기 목 적	물 수 보 전
등 기 원 인	년 월 일 지방법원의 물수보전결정(년 제 호)
등 기 권 리 자	국
등 기 의 무 자	
비 고	
첨 부 : 물수보전명령등본 1부	

23231-84611일 210mm×297mm

98.6.25 승인 (신문용지 54g/m²)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별지275호) 물수·부대보전 공소제기 통지] <신설 1998.7.3>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물수·부대보전 공소제기 통지 검 사 ㉠

아래 물수·부대보전사건과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통지합
니다.

물 수 .부 대 보 전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사 건 의 표 시	물수보전결정(년 제 호)		
공소제기관련사항	피 고 인		
	죄 명		
	공소제기		
	일 자		
비 고			

23231-84711일

210mm×297mm

98.6.25 승인 (일반용지 54g/m²)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몰수·부대보전에 관한 공소제기 공고

제 호 . . .

제 목 몰수·부대보전 공소제기 공고

아래 몰수·부대보전사건과 관련하여 공소가 제기되었으므로 이를 공고합니다.

몰 수 · 부 대 보 전	성 명		주민등록번호	
명령을받은자의성명	주 거			
몰 수 · 부 대 보 전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사 건 의 표 시	몰수보전결정(년 제 호)			
공 소 제 기	피 고 인			
	공소제기			
관 련 사 항	일 자			
통 지 에 갈 음 하 여				
공 고 하 는 사 유				
비 고				

○○지방검찰청

검 사 ㉠

23231-84811일 210mm×297mm

98.6.25 승인 (일반용지 54g/m²)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검찰청 (00-0000-0000)				
제 호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물수·부대보전명령 취소청구		검 사 ㉠		
아래와 같이 물수·부대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물수·부대보전사건의 표시		년 월 일 지방법원의 물수·부대보전명령(년 제 호)		
피 고 인 (피 의 자)	성 명		직 업	
	주 민 등 록 번 호		연 령	세
	주 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범죄 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 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규정 하 는 사 유				
첨 부 :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수 신	등기소장·등록소장
제 목	등기·등록 말소촉탁
발 신 지방검찰청	
검 사 ㉠	
아래 등기·등록에 대한 말소를 촉탁합니다.	
말 소 되 는	년 월 일 접수 제 호
등 기 · 등 록	물수보전(부대보전)
원 인	취소결정(년 월 일 실효)
등기권리자	
등기의무자	국
물건의표시	
권리의표시	
비 고	
첨 부 :	

23231-85011일 210mm×297mm

98.6.25 승인 (일반용지 54g/m²)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검찰청				
(00-0000-0000)				
제 호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추징보전 청구		검 사 인		
고 아래 피 사건에 관하여, 추징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금지를 청구합니다. 의				
피 고 인 (피의자)	성 명		직 업	
	주 민 등 록 번 호		연 령	세
	주 거			
죄 명				
공 소 사 실 (피 의 사 실) 의 요 지				
추 징 의 근 거 법 령 조 항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범죄		
추 징 보 전 액				
처 분 을 금 지 하 는 재 산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규정하는 사유				
첨 부 : 1. 공소사실(피의사실)의 요지서 1통				

○○○검찰청

(00-0000-0000)

제 호 . . .

수신 ○○○ 법원 발신 ○○ ○ 지방검찰청
검사 인

제목 추정보전 청구

아래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하여 추정보전명령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추정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분금지를 청구합니다.

피의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연 령	세
	주 거			
죄 명				
피의사실의 요지		별지 추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추정의 근거 법령 조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3조제1항, 제52조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추정보전액		별지 추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별지 추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범죄수 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 한 법률 제12조가 규정하는 사 유		별지 추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붙임 피의사실의 요지서 1부. 끝.				

○○○검찰청
(00-0000-0000)

제 호 . . .

수신 ○○○ 경찰서장

제목 추정보전신청 기각

아래 피의자에 대한 ○○ 피의사건에 관한 추정보전신청을 아래와 같은 사유로 기각합니다.

피의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연 령	세
	주 거			
죄 명				
피의사실의 요지		별지 추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추정의 근거 법령 조항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52조제1항, 제53조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		
추정보전액		별지 추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별지 추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규정하는 사유		별지 추정보전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 검찰청				
검 사				인

[(별지282호)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서] <신설 1998.7.3>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제 목 추징보전명령 집행명령				
추 징 보 전 명 령		년 월 일 지방법원(년 제 호)		
피 고 인 (피의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연 령	세
	주 거			
추 징 보 전 액				
추 징 보 전 재 산				
첨 부				
위 추징보전명령에 대하여 그 집행을 명령함				
○○지방검찰청				
검사				인

23231-85311일 210mm×297mm

98.6.25 승인 (일반용지 54g/m²)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별지283호)가압류집행절차 신청서] <신설 1998.7.3>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가압류집행절차 신청		검 사 ㉠
아래 추정보전명령에 기하여 가압류집행절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 정보 전 명 령		년 월 일 지방법원 (년 제 호)		
피 고 인	성 명		직 업	
(피의자)	주 거			
추 정보 전 액				
추 정보 전 재 산				
비 고				
첨 부 : 추정보전명령집행명령서 1통				

23231-85411일 210mm×297mm

98.6.25 승인 (일반용지 54g/m²)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제 목		추정보전명령 취소청구		지방검찰청
		검 사		㉠
아래와 같이 추정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추 정보 전 사 건 의 표 시		년 월 일 지방법원의 추정보전명령(년 제 호)		
피 고 인 (피의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연 령	세
	주 거			
취소 대상		[] 전부취소 [] 일부취소		
일부취소 시 범위		(기존 추정보전액: 원) 취소청구 추정보전액: 원 잔여 추정보전액: 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규정하는 사유				
첨 부 :				

210mm×297mm(일반용지 54g/㎡)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 []에는 해당되는 곳에 √ 표시

(별지285호)추정보전신청(보완·청구·취소)등 요구서 <신설 2020. 9. 10.>

○ ○ ○ 검 찰 청

제 0000-0000 호

수신 ○○○경찰서장

제목 추정보전 신청(보완·청구·취소) 등 요구서

다음 추정보전 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신청(보완·수정·취소)을 요구합니다.

접수일자			사건번호	
죄 명				
피의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요 구 내 용				
○○○ 검찰청				
검 사				인

○○○검찰청

(00-0000-0000)

제 호

수신 ○○○ 법원

발신 ○○○ 지방검찰청
검사 인

제목 추정보전명령 취소청구

다음 피의자에 대한 ○○○ 피의 사건에 관하여 추정보전명령 취소신청이 있는바, 그 사유가 상당하다고 인정되므로 추정보전명령의 (전부·일부)취소를 청구합니다.

추징보전사건의 표시		별지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피의자	성 명		직 업	
	주민등록번호		연 령	세
	주 거			
취소 대상		별지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일부취소 시 범위		별지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범죄수 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규정하는 사유		별지 추징보전명령 취소신청서 기재내용과 같음		
붙임 ○○관련 서류 ○부. 끝.				

210mm×297mm[백상지(80g/㎡)]

비고(이 난은 서식에 포함하지 아니한다)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할 수 있다.

[(별지287호)추정보전명령집행명령 취소서] <신설 1998.7.3>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제 목 추정보전명령집행명령 취소				
추 정보 전 명 령		년 월 일 지방법원(년 제 호)		
피 고 인	성 명		직 업	
(피의자)	주 거			
추 정보 전 명 령 집 행 명 령		년 월 일 지방검찰청 검사		
비 고				
이 실효되었으므로 위 추정보전명령 그 집행명령 에 대하여 추정보전해방금이 공탁되었으므로 을 취소함 ○○지방검찰청 검 사 ㉠				

23231-85611일 210mm×297mm

98.6.25 승인 (일반용지 54g/m²)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별지288호)가압류 집행정지·취소절차 신청서] <신설 1998.7.3>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가압류 집행정지·취소절차 신청		검 사 ㉠	
아래 추정보전명령에 기한 가압류 집행의 정지·취소절차에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추 정 보 전 명 령		년 월 일 지방법원 (년 제 호)	
피 고 인	성 명	직 업	
(피의자)	주 거		
비 고			
첨 부 : 추정보전집행명령취소서 1통			

23231-85711일 210mm×297mm

98.6.25 승인 (일반용지 54g/m²)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수 신 :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강제집행정지 청구	검 사 (인)
아래 강제집행사건에 대하여 강제집행의 정지를 청구합니다.	
물 수·부 대 보 전 사 건 의 표 시	지방법원 년 제 호
강 제 집 행 사 건 의 표 시	지방법원 년 제 호
피 고 인 (피 의 자) 성 명	
강제집행에 의한 압류명령에 있어서의 채권자 및 채무자의 성명	채 권 자
	채 무 자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 42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규정하는 사유	
첨 부 :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강제집행정지결정 취소청구	검 사 인
아래 강제집행정지사건에 관련된 강제집행정지결정의 취소를 청구합니다.	
강제집행정지사건의 표시	지방법원 년 제 호
피고인(피의자)성명	
마약류 불법거래 방지에 관한 특례법 제42조제1항 및 범죄수익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12조가 규정하는 사유	
첨 부 :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물수집행공조심사청구	검 사 인
아래와 같은 물수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이 있으므로, 공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합니다.	
공조요청을 한 국가명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조항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주소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및 그 재판의 확정일자	
공조 범죄 관련	공조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요 지, 적용법조, 물수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첨 부 :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수 신 : ○○○경찰서장

발 신 ○○○검찰청

제 목 추징집행공조심사청구

검 사 인

아래와 같은 추징확정재판의 집행에 관한 공조요청이 있으므로, 공조를 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의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합니다.

공조요청을 한 국가명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조항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및 그 재판의 확정일자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추징의 확정재판에 있어서의 추징액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65 조제1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 2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의 가액		
공조 범죄 관련	공조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요지, 적용법조, 추징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첨 부 :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공조 물수 부대 보전 청구	검 사 인
아래와 같이 물수보전에 대하여 공조요청이 있으므로, 물수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 분금지를 청구합니다.	
공조요청 한 국가명	
공조요청의 근거가 되는 조약의 조항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산 및 그 재산을 가진 자의 성명, 주소 및 채권의 물수를 위한 보전에 있어서는 채무자의 성명 및 주소	
공조 범죄 관련	공조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지, 적용법조, 물수·부대보전의 근거가 되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판을 받은 자의 성명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33조제1항,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규칙 제29조제3항 또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 조가 규정하는 사유	
첨 부 :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	발 신 ○○○검찰청
제 목 공조추정보전 청구	검 사 인
아래와 같이 추정보전에 관한 공조요청이 있으므로, 추정보전명령에 의한 재산처 분금지를 청구합니다.	
공 조 요 청 을 한 국 가 명	
공조요청의근거가되는조약의조항	
공조범죄 관련	공조범죄의 죄명, 범죄사실의 요 지, 적용법조, 추징의 근거가 되 는 법령의 조항과 대한민국에 있 어서 이에 해당하는 적용법조 및 법령의 조항
공조범죄의 피고인이나 피의자 또는 확정재 판을 받은 자의 성명	
공조요청과관련된추정보전액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65조제2 항, 범죄수익은닉의규제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공조요청에 있어서는 그 취지 및 당해 공조요청의 대상이 되는 재 산의 가액	
처분을 금지하는 재산	
마약류불법거래방지에관한특례법 제52조제1 항, 마약류범죄등과관련된보전절차등에관한 규칙 제29조제3항 또는 범죄수익은닉의규제 및처벌등에관한법률 제12조가 규정하는 사유	
첨 부 :	

[(별지295호)(심사,공조몰수보전,공조추징보전)청구취소] <신설 1998.7.3>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심 사

제 목 공조몰수보전 청구취소

검 사

(인)

공조추징보전

확정재판을 받은 자

피 의 자 의 성명

피 고 인

위 사람에 관련된 공조범죄에 대하여, 공조요청을 철회한다는 통지가 있으

심 사

므로, 년 월 일자 공조몰수보전 청구를 취소합니다.

공조추징보전

23231-86511일

210mm×297mm

98.6.25 승인

(일반용지 54g/m²)

[(별지296호)집행공조허가결정 취소청구] <신설 1998.7.3>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집행공조허가결정 취소청구	검 사 ㉠
아래 집행공조허가결정에 대하여 취소를 청구합니다.	
취소를구하는공조	년 월 일 지방법원(년 제 호)
허가결정의표시	
취소를구하는사유	
첨 부	

23231-86611일210mm×297mm

98.6.25 승인(일반용지 54g/m²)

[(별지297호)공조몰수·추정보전명령 취소청구] <신설 1998.7.3>

○○○○검찰청			
(전화번호)			
제 호	.	.	.
수 신	지방법원	발 신	지방검찰청
제 목	공조몰수·추정보전명령 취소청구	검 사	(인)
피 고 인	의 성명		
(피의자)			
위 사람에 관계된 공조범죄에 대하여, 공조요청을 철회하는 취지의 통지가			
있으므로, 지방법원 년 제 호 공조 몰수 보전명령의 취소를 청구			
추징			
합니다.			

23231-86711일 210mm×297mm

98.6.25 승인 (일반용지 54g/m²)

※ 사안에 따라 불필요한 부분을 삭제하거나 수정하여 사용

경찰공무원 징계 요구서

1.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한자)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요구사유			
3. 징계 요구권자의 의견			

위와 같이 징계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권자(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인

귀중

경찰공무원 직무배제 요구서

1. 인적사항	성명(한글)		생년월일
	(한자)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요구사유			
3. 직 무 배 제 요구권자의 의 견			

위와 같이 직무배제를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권자(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인

귀중

공무원 교체임용 요구서

1. 인적사항	성명(한글) (한자)		생년월일
	소속	직위(직급)	재직기간
	주소		
2. 요구사유			
3. 교 체 임 용 요구권자의 의 견			

위와 같이 교체임용을 요구합니다.

년 월 일

요구권자(검찰총장 또는 ○○○지방검찰청 검사장)

직인

귀중

○○○검찰청

우편번호/ 주소/ 전화/ /전송

등록번호

수 신: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발 신: ○○○검찰청검사장대리

검 사: 인

제 목: 고위공직자범죄 등 인지 사실 통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2조에 규정된 고위공직자범죄등을 인지하여 수리하였기에 동 법 제24조제2항에 따라 아래와 같이 통보합니다.

피 의 자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 거			
	소속 및 직급			
사 건 번 호	년	월	일	자
죄 명	신		병	
피 의 사 실 요 지				
비 고				

○○○검찰청
(00-0000-0000)

제 0000-0000 호 . . .

수 신 : ○○○법원 발 신 : ○○○검찰청

제 목 : 영상물 촬영 신청서 검 사 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1항에 따라 귀원
호 에 대한 피고사건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영상물 촬영을
신청합니다.

사 건 번 호			
죄 명			
피 의 자 (피 고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거		
증 인	성명	주민등록번호	
	직업		
	주 거	연락처	
영 상 물 촬 영 신 청 사 유			
증 명 할 사 실			
신 문 사 항			
증인신문청구(신청)의 요건이 되는 사실			
변 호 인			
기각하는 취지 및 이유	판 사		인

○○○검찰청
(00-0000-0000)

제 호

수신 ○○○법원

발신 ○○○검찰청

제목 영상녹화물 사본청구

검사 인

공익신고자 보호법」 제11조제1항, 「특정범죄신고자 등 보호법」 제10조제2항, 「형사소송법」 제201조의2제10항 및 같은 법 제56조의2제3항에 따라 귀원 호 피고사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영상녹화물 사본을 청구합니다.

청 구 대 상	영상녹화물 사본
청 구 부 분	☐ 전부 ☐ 일부()

7. 공조요청 필요성

8. 요청시한

9. 비밀의 유지

10. 보증사항

※ 각 국가별 및 공조유형별로 서식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공조요청서 작성에 앞서 법무부 국제형사과,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최신 서식을 문의하기 바랍니다.

서울고등검찰청		
인도 호		
수 신 : 서울고등법원		발 신 : 서울고등검찰청
제 목 : 인도심사청구		검 사 인
아래 범죄인에 대한 . . . ○○○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가 있으므로, 인도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심사를 청구합니다.		
범죄인	국적	
	주소	
	(국내주소)	
	등록기준지	
	직업	
	성명	
	주민등록번호	
	생년월일	
인도범죄명		예시 : 교통사고처리특례법위반,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청구국 죄명 : 일리노이주 법령 제720장 제5조(과실치사) 및 제625장 제5조(음주운전) 위반】
인도범죄사실		별지와 같음
적용조	대한민국	
	청구국	
인도청구의근거 (조약 또는 보증)		예시 : 대한민국과미합중국간의범죄인인도조약 제2조, 제15조
신병		예시 : 0000. 00. 00. 구속(0000. 00. 00. 인도구속영장 발부)
범죄인에 대하여 행해진 청구국의 형사절차		예시 : 범죄인에 대하여 체포영장 발부

인도범죄사실

210mm×297mm[백상지(80g/㎡)]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06호서식] <신설 2021.1.1.>

서울고등검찰청

· · ·

인도 호

수 신 : 서울고등법원

발 신 : 서울고등검찰청

제 목 : 인도구속영장청구

검 사 인

아래 범죄인에 대한 . . . ○○○국으로부터 범죄인인도청구와 관련하여 동인을 ○○○구치소에 구속하고자 . . . 까지 유효한 인도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범죄인	국	적	
	주	소	
	(국 내 주 소)		
	등 록 기 준 지		
	직		업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생		년 월 일
인 도 범 죄 명			
인 도 범 죄 사 실 및 소 명 자 료	별지와 같음		
적 용 조 법	대 한 민 국		
	청 구 국		
인 도 청 구 의 근 거 (조 약 또 는 보 증)			예시 :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수 통 의 인 도 구 속 영장이 필요한 사유 및 그 수			
범 죄 인 에 대 하 여 행 해 진 청 구 국 의 형 사 절 차			예시 : 범죄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210mm×297mm[백상지(80g/m²)]

【별지】

인도범죄사실 및 소명자료



210mm×297mm[백상지(80g/m²)]

■ 검찰사건사무규칙 [별지 제307호서식] <신설 2021.1.1.>

서 울 고 등 검 찰 청

. . .

인도 호

수 신 : 서울고등법원

발 신 : 서울고등검찰청

제 목 : 긴급인도구속영장청구

검 사 인

아래 범죄인에 대한 . . . ○○○국으로부터 긴급인도구속 청구가 있으므로, 이와 관련하여 동인을 ○○○구치소에 구속하고자 . . .까지 유효한 긴급인도구속영장의 발부를 청구합니다.

범죄인

국 적
주 소
(국 내 주 소)
등 록 기 준 지
직 업
성 명
주 민 등 록 번 호
생 년 월 일

인도범죄명

인도범죄사실 및
소명자료

별지와 같음

적용
법조

대한민국
청구국

인도청구의근거
(조 약 또는 보 증)

예시 : 대한민국과 호주간의 범죄인인도조약

수통의 긴급인도
구속영장이 필요한
사유 및 그 수

범죄인에 대하여
행해진 청구국의
형사절차

예시 : 범죄인에 대한 체포영장 발부

210mm×297mm[백상지(80g/㎡)]

【별지】

인도범죄사실 및 소명자료



210mm×297mm[백상지(80g / m²)]

확 인 서

대한민국 ○○지방검찰청 검사인 본인 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 정부 간의 범죄
인인도조약에 따라 범죄인 를 ○○○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인도받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확인자 자격

1.1.

2. 범죄인 ○○○에 관한 사항

2.1.

3. 범죄인 인도청구 범죄사실(사건 개요)

3.1.

4. 수사 착수

4.1.

5. 수사 경과

5.1.

6.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

6.1.

7.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령

7.1.

8. 공소시효

8.1.

9. 공소시효에 관한 법령

9.1.

10. 대한민국의 기소중지제도

10.1.

11. 대한민국의 체포영장제도

11.1.

본인은 위 기재한 사실이 모두 진실임을 확인하며,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본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찰청 검사

(서명)

※ 각 국가별 및 사건 유형별로 서식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건의서 작성에 앞서 법무부 국제형사과,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최신 서식을 문의하기 바랍니다.

확 인 서

대한민국 ○○지방검찰청 검사인 본인 은 대한민국 정부와 ○○○국 정부 간의
범죄인인도조약에 따라 범죄인 를 ○○○국으로부터 대한민국으로 인도받기
위하여 아래 사항을 확인합니다.

1. 확인자 자격

1.1.

2. 범죄인 ○○○에 관한 사항

2.1.

3. 범죄인 인도청구 범죄사실(사건 개요)

3.1.

4. 수사 착수

4.1.

5. 수사 경과

5.1.

6. 재판 경과

6.1.

7. 범죄사실을 증명하는 증거 자료

7.1.

8. 범죄사실에 대한 적용법령

8.1.

9. 형의 시효

9.1.

10. 형의 시효에 관한 법령

10.1.

11. 궐석재판으로 판결 확정

11.1.

12. 궐석재판에 관한 법령

12.1.

13. 궐석재판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재심

13.1.

14. 궐석재판으로 확정된 판결의 재심에 대한 명령

14.1.

15. 항소기간도과로 판결 확정

15.1.

16. 항소기간도과로 확정된 판결에 대한 상소권회복

16.1.

17. 상소권회복에 관한 법령

17.1.

18. 확정된 유죄판결에 집행

18.1.

19. 형 집행 절차에 관한 법령

19.1.

20. 공소시효

20.1.

21. 공소시효에 관한 법령

21.1.

22. 대한민국의 기소중지제도

22.1.

23. 대한민국의 체포영장제도

23.1.

본인은 위 기재한 사실이 모두 진실임을 확인하며, 고의로 허위 사실을 기재하였을 경우 대한민국 형법 제227조에 따라 허위공문서작성죄로 처벌받을 수 있다는 사실을 인식하면서 본 확인서를 작성하였습니다.

○○○검찰청 검사

(서명)

※ 각 국가별 및 사건 유형별로 서식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으므로 청구건의서 작성에 앞서 법무부 국제형사과, 대검찰청 국제협력담당관실에 최신 서식을 문의하기 바랍니다.